

건축행정평가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배선헤 Bae, Sunhye

유제연 Ryu, Jeyeon

홍예은 Hong, Yeeun

(auri

일반연구보고서 2024-3

건축행정평가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f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지은이	배선희, 유제연, 홍예은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4년 12월 26일, 발행: 2024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9-11-5659-487-1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

배선헌 부연구위원

| 연구진

유제연 연구원

홍예은 연구원

| 외부연구진

송준환 야마구치 국립대학 교수

이재혁 JAIA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이단비 한양대학교 박사

| 조사원

한혜영

| 연구자문위원

이운용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

정윤진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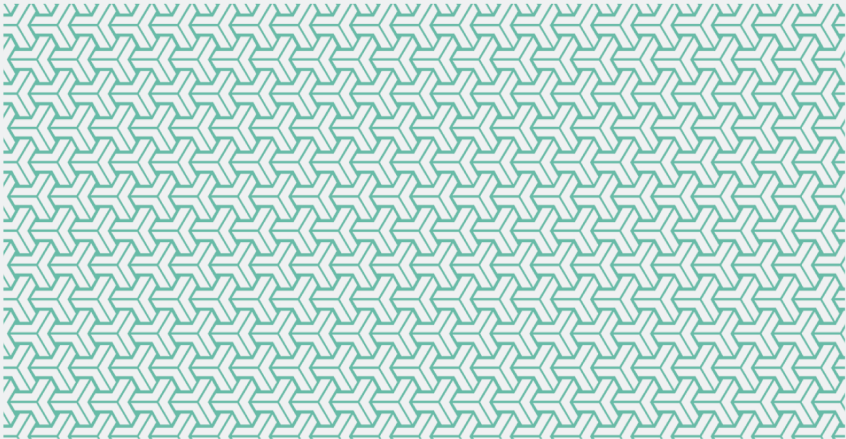
제도관리팀 팀장

최정윤 인천대학교 교수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

연구요약

Summary



제1장 서론

1999년부터 「건축법」에 근거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건축행정평가는 2016년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업무 부담이 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건축행정 개선 효과로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남아 있다. 평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체감 성과 중심 평가 운영, 평가결과 환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피평가 기관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건축행정평가는 전반적인 평가 체계에 대한 점진적 과정 없이 일부 지표 수정과 같이 소극적인 개선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가 전면 개편된 2016년 이후 건축행정평가 지표 및 제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건축행정 여건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제2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정부업무평가 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처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평가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개별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행정평가는 이러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별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업무평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개별평가를 지양하고 합동평가로의 적극적인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23개 중앙부처에서 62개 개별 평가를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평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우수기관 독려 및 실질적 정책개선 도모,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평가 결과공개 및 활용 강화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의 유사제도를 검토한 결과 운영체계, 평가 항목 및 지표 관련,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효율적 평가 주기 설정, 정기적 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평가 주체 및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가 항목 및 지표와 관련해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의 통합 검토와 기

본지표와 정책지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모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 포상, 하위기관 컨설팅 제도 운영 등 환류 체계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 건축행정평가 운영 실태

제3장에서는 건축행정평가 운영 실태를 진단하였다. 운영 실태는 평가 체계와 평가 결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축행정평가의 평가체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은 2015년까지는 광역지자체와 선별된 기초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초기 지표별로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기초지자체 충점을 광역지자체에 합산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였으나,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그룹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평가 부문을 일반과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평가 절차 또한 초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축행정평가의 평가지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건축행정평가에서는 건축 관련 민원 감축을 중심으로 12개 내외의 평가 지표를 운영하였으나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표를 구분하고 10개 내외의 지표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정평가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 분석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건축행정 담당자 면담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는 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그룹을 세분화하여 시상을 운영할 필요, ②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연계 평가하는 방식(지표 포함) 배제할 필요, ③ 예측 가능한 지표 운영 및 지표에 따른 사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기 및 지표공개 시기 등을 조정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① 실효성이 없는 지표 및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지표 등은 삭제하거나 또는 평가 산식을 개선할 필요, ② 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할 필요 등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제4장 건축행정평가 개선방안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건축행정평가 운영체계와 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건축행정평가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 분석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 목표 구체화와 목표와 연계한 지표 개발을 강조하였고,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는 기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행정평가 목표 구체화, 운영체계 효율화, 평가지표 체계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건축행정평가의 목표를 건축 정책의 일관된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하고 분야별로 지자체가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여 향후 발전시켜야 하는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점검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건축정책과 행정의 범위를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통계 구축, 건축물대장 관리 등의 노력과 같이 전반적인 행정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평가대상을 기존 광역 지자체에서 실제 건축행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운영체계평가 자료 수집방식 개선, 평가 결과 활용 강화, 환류 체계 개선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 지표 체계화에서는 타 평가와 중복되는 지표와 건축 현장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 삭제, 지속적인 정비 노력 지원하는 평가 지표로 정비, 가점 지표 개선, 지표별 산정 방식과 결과 공개 방식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분석의 전문성 및 타당성 제고, 평가 지표 개발 프로세스 정립, 평가 운영 매뉴얼 정립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축행정평가 체계 개선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① 건축행정평가 전문 조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② 평가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평가 지침 마련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행정평가 운영체계 및 지표개선 방안 종합

구분	세부 내용	주요 내용
평가 목표	건축행정평가 목표 구체화	- 건축행정평가의 목표와 위상 재설정 - 건축정책과 건축행정 범위 재검토 - 건축정책 이행력 강화와 지자체 자율적인 정책 발굴 노력 장려
운영 체계	운영체계 효율화	- 평가 대상 재검토 - 평가 자료 수집방식 개선
평가 지표	평가지표 체계화	- 지표 제외 - 평가 항목 개선 - 가점 지표 개선 - 지자체 특성별 적용 지표 운영 - 개선도 지표 추가 - 필수지표와 추가지표를 구분하여 운영
기타	전문성 강화	-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분석의 전문성 및 타당성 제고 - 평가 지표 개발 프로세스 정립 - 건축행정평가 운영 매뉴얼 마련

출처: 연구진 작성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변화된 평가 환경과 건축행정 여건에 따른 평가 운영체계와 지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 운영 실태를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 전면적인 개편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 지자체 대상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평가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초 지자체 차원의 건축행정평가 운영 실태 분석과 평가 지표별 구체적인 산식과 검토 기준을 포함한 매뉴얼 개발 등은 후속연구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건축행정평가, 실태 진단, 제도 개선, 건축법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행정평가의 정부업무평가상 위상	25
1) 정부업무평가 개요	25
2)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개요 및 운영현황	34
3.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 사례	45
1) 국내 유사제도	47
2) 해외 유사제도	62
4. 소결: 현행 평가 제도의 특성 및 시사점	79
1) 건축행정의 정의와 건축행정평가의 위상	79
2)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로서 건축행정평가 발전방향	79
3)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80

제3장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1. 분석 개요	86
1) 건축행정평가 운영 분석	86
2) 전문가 및 건축행정평가 관계자 의견 청취	87
2. 평가운영체계의 변천과 현황 분석	88
1) (~2015년) 건축행정평가(前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88
2) (2016년~2019년) 건축행정평가	89
3) (2020년~2023년) 건축행정평가	93
3. 평가지표의 변천과 현황 분석	97
1) (2016년 이전) 건축행정평가(前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97
2) (2016년~2020년) 건축행정평가	100
3) (2020년~2023년) 건축행정평가	107
4. 건축행정평가 결과 분석	113
1) 영향지표와 비영향지표 검토	113
5. 소결	119
1) 평가체계 분석 결과	119
2) 평가지표 분석 결과	123
3)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분석 결과	125

제4장 건축행정평가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설정	130
1) 평가체계 개선 과정	130
2) 개선 방향 도출	130
3)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원칙	133
2.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안	135
1) 건축행정 평가 목표 구체화	135

차례 CONTENTS

2) 운영체계 효율화	138
3) 평가지표 체계화	140
3. 제도 개선방안	147
1)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도출	147
2) 단계별 제도개선 실행방안	149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성과	15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0
참고문헌	166
Summary	168

[표 1-1]	정부업무평가 주요 평가방향과 건축행정평가 대응 노력	3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표 2-1]	행정의 유형 분류	12
[표 2-2]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조직 내 담당업무	14
[표 2-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내 부서별 담당업무	15
[표 2-4]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건축과 및 건축관리과 내 부서별 담당업무	16
[표 2-5]	「건축법」에서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규정한 조항	17
[표 2-6]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규정한 건축행정 관련 업무	19
[표 2-7]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의 시기별 평가목적 변천	21
[표 2-8]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2024년 평가 기준)	24
[표 2-9]	한국 정부업무평가 제도 발전과정	27
[표 2-10]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	29
[표 2-11]	한국 정부업무평가 유형별 체계도	29
[표 2-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 사항	31
[표 2-13]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구성 및 세부 업무	33
[표 2-14]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개요	35
[표 2-15]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운영 현황(2024년도)	37
[표 2-16]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근거법령 분포/통계	38
[표 2-17]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대상	39
[표 2-18]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 단위	40
[표 2-19]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 수행 주체	40
[표 2-20]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 방법1	41
[표 2-21]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 방법2	41
[표 2-22]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주기	42
[표 2-23]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결과 기준	42
[표 2-24]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결과 활용	43
[표 2-25]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결과 공개 여부	43
[표 2-26]	분석의 대상	45
[표 2-27]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사례 분석의 틀	46
[표 2-2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주체	48
[표 2-2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절차	49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2-3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정목표별 평가지표	49
[표 2-3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소관부처별 평가지표	49
[표 2-3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세부 평가별 방법	50
[표 2-3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국토교통부 관련 세부 평가지표 (2025년('24년 실적) 기준)	51
[표 2-34]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건축행정평가 지표	51
[표 2-35]	건축안전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건축행정평가 지표	52
[표 2-36]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절차	55
[표 2-37]	청백-e 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55
[표 2-3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방법	60
[표 2-39]	일본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입회검사의 처분사유 및 표준적인 징계내용	65
[표 2-40]	일본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입회검사 실제 사례 및 처분 내용	67
[표 2-41]	BCEGS 주요 평가 항목	75
[표 2-42]	BCEGS 평가 점수 범위 및 등급별 설명	76
[표 2-43]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 사례의 주요 시사점 종합표	82
[표 3-1]	분석의 틀	86
[표 3-2]	2013~2015년 평가체계	88
[표 3-3]	2016년 평가(점검)체계 개선 사항 종합	90
[표 3-4]	2018년 평가(점검)체계 개선 사항 종합	91
[표 3-5]	2020년 건축행정평가 세부일정 (표계속)	93
[표 3-6]	2021~2023년 평가일정	95
[표 3-7]	2021~2023년 평가체계	96
[표 3-8]	2013~2015년 평가지표 구성변화	97
[표 3-9]	2013~2015년 평가항목과 지표별 배점 및 평가방식 비교	99
[표 3-10]	2016년 평가지표 구성	100
[표 3-11]	2016년 평가그룹별 기초지자체 수	101
[표 3-12]	2016년 평가부문 및 대상별 수상 대상 수 (단위: 개)	101
[표 3-13]	2016년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	102
[표 3-14]	2018년 평가지표 변화	103
[표 3-15]	2018년 평가부문 및 대상별 수상 대상 수 (단위: 개)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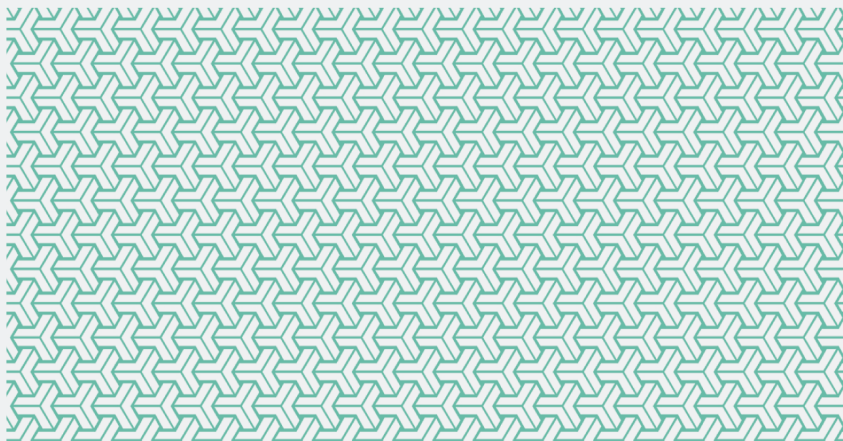
[표 3-16]	2018년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변화 비교	105
[표 3-17]	2019년 평가지표 변화 (신설)	105
[표 3-18]	2019년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	106
[표 3-19]	2020년 건축행정평가 지표 관련 변경(개선) 사항	107
[표 3-20]	2020년 건축행정평가 점검대상별 평가그룹	108
[표 3-21]	2020년 평가부문 및 대상별 수상 대상 수 (단위: 개)	108
[표 3-22]	2020년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	109
[표 3-23]	2020년 평가항목 중 '5-1. 건축정책 이행도' 세부지표	109
[표 3-24]	2021~2024년 평가지표 구성변화	110
[표 3-25]	2021년~2023년 평가부문 및 대상별 수상 대상 수 (단위: 개)	111
[표 3-26]	2021년~2023년 세부평가지표	112
[표 3-27]	2013~2023년 평가체계 변화 (표 계속)	121
[표 3-28]	2013~2021년 평가지표 변화	125
[표 4-1]	정부업무평가 주요 평가방향에 따른 건축행정평가 목표 재설정 검토안	131
[표 4-2]	전문가 및 광역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종합	132
[표 4-3]	건축행정평가 개선방안 종합(안)	134
[표 4-4]	건축 생애주기별 지자체 건축행정 업무 내용과의 정합성 검토(안)	136
[표 4-5]	평가 결과 공개 방식	139
[표 4-6]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유사·중복되는 건축행정평가 지표	140
[표 4-7]	평가지표 검토 종합	142
[표 4-8]	평가지표 개선안	145
[표 4-9]	건축행정평가 평가 매뉴얼 목차(안)	148
[표 4-10]	「건축법」 개정안	149
[표 4-1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150
[표 4-12]	「건축기본법」 개정안	151
[표 4-13]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52
[표 4-14]	「건축행정 평가 지침」 구성안	153
[표 5-1]	건축행정평가 운영체계 및 지표개선 방안 종합	159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2-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방향	58
[그림 2-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절차	59
[그림 2-3] 일본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감독처분 경중의 판단 흐름도	64
[그림 2-4] 영국 지방 건축허가당국 대상 저성과 당국 지정 기준표	71
[그림 2-5] 건축허가 기술조달기금(PSDF-Planning Skills Delivery Fund) 수혜 당국 리스트	72
[그림 2-6] 국가빌딩평가보고서의 2015년(좌) 및 2019년(우) 표지	77
[그림 2-7] 2019년판 국가빌딩평가보고서에서 1등급 관할구역 목록	77
[그림 2-8] 2019년판 국가빌딩평가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평가 결과지	78
[그림 4-1] 평가체계 개선 프로세스	130
[그림 4-2] 합동평가 결과 공개 현황	13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평가 환경 변화
 - 평가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와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 유형을 정부업무평가제도¹⁾ 하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평가, 합동평가, 자체평가 등과 같이 통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주기적으로 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평가도 인정해 주고 있으며(장효진 외, 2022),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행정평가는 개별평가로 분류되어 예외를 인정받아 시행 중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약칭: 정부업무평가법)상 통합실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마다의 유사한 평가가 중복적으로 실시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에는 개별평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였음(국무조정실, 2022)
 - 이후 정부업무평가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목표는 개별평가 남설 방지, 평가 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의 타당성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 등임(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 국무조정실 정기점검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행정평가는 2020년에는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지포 반영, 기초와 광역지자체간 업무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 지자체 취득 점수를 광역지자체 점수에 반영하였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건축행정평가의 한계
 - 1999년부터 「건축법」에 근거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건축행정평가는 2016년 전면 개편에도 불구하고 상위부처 주도의 점검 위주 평가 체계 내에서 담당자들의 의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의 질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축행정 개선 효과로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1) 1990년대 중반까지 예산의 적절한 투입 여부와 주어진 업무를 절차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에서, 2006년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추진

- 통합된 평가 관리 체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민체감 성과 중심 평가 운영, 평가결과 환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국민체감 성과 중심의 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주요정책 부분 목표 달성도 및 정책효과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의 비중을 축소 하는 것이 평가의 주요 방향이지만 현재 건축행정평가의 지표는 법에서 정한 기준 및 정비 계획 수립 여부, 절차 이행 여부들을 주로 확인하고 있음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에 기여하는 평가 체계인가) 현재 건축 행정평가 결과는 공문으로 각 지자체에만 통보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시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특히 하위 지자체에 대한 관리 대책은 부재하여 건축행정이 부실한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 결과가 건축행정 개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2022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담당자와의 면담 시에 건축행정평가의 잦은 지표 변경으로 인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2022년부터 일부 지표에 대한 평가 자료는 세움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는 엑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임

[표 1-1] 정부업무평가 주요 평가방향과 건축행정평가 대응 노력

주요 평가방향	세부내용	건축행정평가 개선 사항
1. 기관 간 협업을 중점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 노력 및 성과를 평가에 중점 반영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부 내 협업 확산 독려	- 합동평가와 연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항목 (2021년)
2. 정부업무평가의 타당성 및 수용성 제고	기관별 규모 등 상이한 특성을 고려, 보다 유연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타당성과 수용성 제고	- 광역, 기초 지자체 구분하여 특성 고려한 지표 설정 (2020년)
3. 국민체감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	실질적 체감성 성과를 중점 평가하기 위해 주요정책 부문 목표달성도 및 정책효과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 비중 축소	-
4.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기여 확대	특정평가는 기관종합 등급 없이 부문별 평가결과만 도출하여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방지 우수기관 독려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 내 사기 진작 및 실질적 정책개선 도모	-

주요 평가방향	세부내용	건축행정평가 개선 사항
5.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도를 합리적으로 설계·운영	피평가기관의 부담 각종 평가제도 간 유사·중복이 없도록 완화	개별평가 점검·관리 지속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기타) 이외에도 ① 평가목적과 평가지표 간의 정합성 부족 ② 건축행정 현안을 반영하지 못한 지표 설정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건축행정평가 목적은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평가대상의 범위는 건축심의 기준 적합 여부, 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심의 결과 준수율, 주요 계획 수립 및 실행 조사 시행 건수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체계를 고려한 평가 목적 구체화 및 평가 대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 (연구의 필요성) 건축행정평가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필요
 - 그간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변화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의 목표와 건축행정 여건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도가 전면 개편된 2016년 이후 건축행정평가 지표 및 제도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건축행정 여건에 따른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연구의 목적

- 건축행정평가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향 설정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 건축행정평가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구축
 -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2023년 건축행정평가 운영체계, 평가지표, 결과 분석
- 내용적 범위
 -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유사 사례의 평가 목표, 운영체계, 평가지표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건축행정평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건축행정평가 지표 분석
 - 2020년 이후 평가결과 분석

2) 연구의 방법

□ 문헌분석

-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 건축행정평가 관련 국내외 유사제도 조사 및 분석
- 국토교통부 내부 문서 분석

□ 건축행정평가 지표 및 결과 분석

- 평가 결과 분석
- 지표별 편차 및 차이 분석

□ 관계자 심층면담

- 지자체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 수렴

□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담당자 업무협의

- 건축 및 법학, 평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행

3) 연구 흐름도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출처 : 연구진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 건축행정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건축행정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와 정부업무평가 관련 연구, 지자체 행정업무 평가 관련 연구로 구분됨

□ 정부업무평가 관련 연구

- 정부업무평가 관련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의 통합운영 원칙에 따라 각종 평가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음
 - 윤수재 외(2016)는 효율적인 통합평가 제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통합평가제도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한 개별평가 실시여부 판단기준·절차 제시 필요성을 제안
 - 장효진 외(2022)는 개별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평가 사전협의의 절차와 평가 일몰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법 규정 마련을 제안하였음

□ 지자체 행정업무 평가 관련 연구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동평가제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합동평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음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합동평가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광희 외(2012)는 합동평가 운영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 수행과정,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개별평가 정비 방안을 도출
 - 주희진 외(2022)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합동평가지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신열(2023)은 실현가능한 평가지표의 설계, 평가 이해관계자간의 협업, 주민 체감적 성과측정 가능성을 강조하였음

□ 건축행정평가 관련 연구

- 건축행정 또는 건축행정서비스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유광흠 외(2015)와 이여경 외(2017)의 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재 건축행정평가가 운영되고 있음
 - 유광흠 외(2015)는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당해 평가운영 지원을 위한 지표개선안 도출에 집중
 - 건축행정평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여경 외(2017)가 유일하며 기존의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의 체계 및 지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제안

2) 본 연구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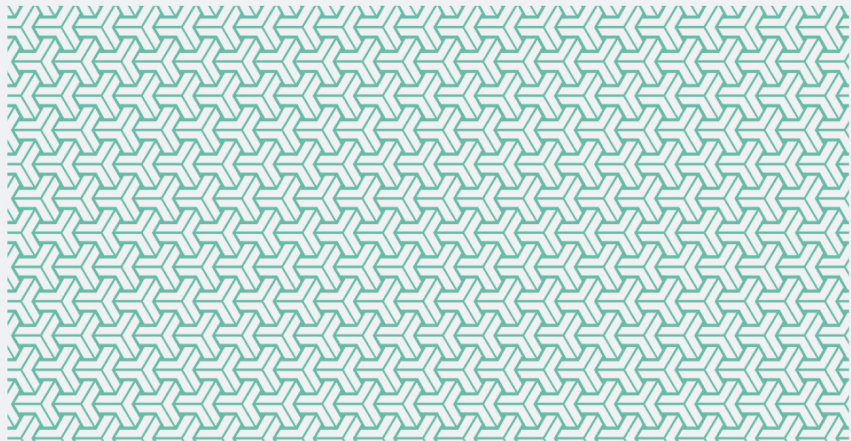
-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과 같은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며, 건축행정평가의 개선방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이여경 외(2017), 유광흠 외(2015) 2건뿐임
 -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당해 연도 평가운영 지원 및 지표개선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6년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이여경 외, 2017)를 끝으로 8년간 동일한(일부 변경) 지표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임
 - 평가지표 항목 및 배점의 적절성, 특히 세부 지표의 변별력을 검토한 연구 부재
 - 특히 정부업무평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별평가의 한 종류로 개편된 건축행정평가가 평가제도 발전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본 연구는 ❶ 평가환경 변화에 따라 건축행정평가가 요구받고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❷ 다년간의 평가지표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여부 및 제도의 운영성과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가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짐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건축 행정 평가 관련	- 과제명: 지자체 건축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연구 - 연구자(연도): 이여경 외(2017) - 연구목적: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2016년 건설화 평가에 적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제시	- 문헌연구 - 비교제도 연구 - 유사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개발	- 현행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체계 및 지표 분석 -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 2016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개선방안 및 매뉴얼 제안
		- 과제명: 규제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 행정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유광홍 외(2015) - 연구목적: 건축행정 개선방안 마련 중 세부목적으로 2015년 건축행정 건설화 세부점검계획 제시	- 문헌연구 - 모니터링 - 관련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	- 2014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과정 및 결과 검토 - 2015년 건축행정 건설화 세부점검계획 제시
	지자체 행정 업무 평가 제도 관련	-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의 논리 재설계 - 연구자(연도): 신열 (2023) -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설계 개선 제언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합동평가지표개발단,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 평가 및 합동평가의 이론적·제도적 논의 - 합동평가의 지향 가치 재설정 - 평가지표의 합리적 설계(유용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제안 - 평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중앙부처, 지자체, 지표개발단) 제안 - 주민체감적 성과측정 가능성 제안
		-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동평가지표 개발 - 연구자(연도): 주희진 외(2022) -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평가지표 개발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심층 인터뷰 - 시범평가	-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 체계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평가를 위한 지표안 개발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합동평가지표 도입 가능성 검토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정부 업무 평가 제도 관련	-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연구자(연도): 이광희 외(2012) -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실태 진단, 합동평가에 대한 수용성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개별평가에 대한 실태 조사, 개별평가 정비 방안 도출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개별평가 운영실태 내용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지방자치단체 평가 현황 (합동평가, 개별평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실태 분석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실태 분석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방안(합동평가, 개별평가)
	- 과제명: 개별평가 생애주기 관리방안 - 연구자(연도): 장효진 외(2022) - 연구목적: 사전협의제와 평가 일물관리제를 법제화하여 개별평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 문헌연구 - 심층인터뷰 - 기술통계 - 문헌연구 - 델파이조사 - 내용분석	- 개별평가제도와 운영실태 분석 - 국내 사전협의 및 일물관리 사례연구 - 개별평가 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조사 - 개별평가 관리 개선방안 제안
	- 과제명: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윤수재 (2016) - 연구목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통합평가 제도 구축·개선방안을 도출·제시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내용분석	- 통합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분석 - 통합평가제도 인식분석 - 개별, 통합평가 실태분석 - 효율적 통합평가 제도 구축 개선방안 제시
본 연구	- 건축행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목적: 건축행정평가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 제안	- 문헌연구 (선행연구, 관계법령, 정부문서 자료 등) - 평가 결과 분석 - 관계자 심층인터뷰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 평가제도 현황과 특성 -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분석 - 건축행정평가 운영 및 평가지표 개선사항 검토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2. 건축행정평가의 정부업무평가상 위상
3. 국내의 유사제도 운영 사례
4. 소결: 현행 평가 제도의 특성 및 시사점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 건축행정의 개념

□ 행정의 개념

- 행정의 정의²⁾
 - 행정이란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모든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것’(소극설)과 ‘국가가 법질서 아래에서 국가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용’, ‘공익상 필요한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적 사무의 전체’, ‘공익의 사실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 ‘법 아래에서 법의 기속(羈束)을 받으면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계속적 형성 활동’(적극설)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한편,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사람과 물건의 관리’(행정관리설), ‘공동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려는 협동적인 집단행동’, ‘의사결정의 과정’, ‘통치의 기능’(통치기능설), ‘사회를 보호하고 안전시키는 기능 외에 사회변동을 촉진하며 조정을 하고 사회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사회를 바람직한 발전목표로 유도하는 기능’(발전기능설)으로 정의하기도 함
- 행정의 유형
 - 행정은 목적, 주체, 수단, 국민에 대한 효과에 따라 이론적·법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표 2-1] 행정의 유형 분류

구분	세부 유형	내용
목적	국가목적적	재무행정
		군사행정
		외무행정
		사법행정
		국가 재력(財力)의 취득·관리
		병력의 취득·관리
		국가의 대외관계 형성·유지
		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의 취득·관리, 재판에 부수하여 사법적 질서 유지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839>
(검색일: 2024.6.17.)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구분	세부 유형	내용
	사회목적적 질서행정	소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위해방지(危害防止)
	복리행정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생활을 규제, 정서(整序), 유도
주체	국가행정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것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행하는 것
	위임행정	국가·공공단체가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것
수단	권력행정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명령, 강제
	비권력행정	관리행정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비권력적으로 공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경영
	국고행정	행정주체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사법상(私法上)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재산과 사업을 관리, 경영하고 사인과 거래
효과	침해행정 (간섭행정 또는 부과행정)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 박탈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수익행정(授益行政)	국민에게 권리·이익 부여
	복효적 행정(複效的行政)	하나의 행정작용이 어떤 국민에게는 침해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국민에게는 수익적인 효과 부여

출처: 김상호 외(2015, pp.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839>
(검색일: 2024. 6.17.)에서 재인용

□ 건축행정의 개념

- 건축행정의 정의
 - 건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기획·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규제의 실행과정을 의미함³⁾
- 행정의 유형에 따른 건축행정 분류⁴⁾
 - 건축행정은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사회 목적적 행정의 질서행정 및 복지행정에 해당하고,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에 모두 해당함
 - 수단에 따르면 명령이나 강제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행정이면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공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행정에 해당하기도 함
 - 국민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복효적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제공하는 행정임

3) 김상호 외(2015, p.11)

4) 김상호 외(2015, p.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839>(검색일: 2024.6.17.)에서 재인용

□ 행정주체의 실행에 따른 건축행정

- 중앙행정기관의 건축행정
 -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이며, 건축정책관 내에는 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안전과 등 4개 부서가 있으며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2-2]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조직 내 담당업무

조직 구분	담당업무
국토도시실 관	건축정책과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물관리법 등 건축관계법령 운영 및 관리
	건축공사 감리제도, 한국건축규정, 건축물 용도, 건축감리, 공사중단 방지건축물 정비, 국가상징공간, 스마트건축,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건축민원 대응
	녹색건축과
	녹색건축 및 에너지 관련법과 규칙, 기준의 운영 및 관리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등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공공건축물 및 민간그린리모델링,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국가건물에너지통합 관리시스템, 에너지평가사, 설비기준 운영 지원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경관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관계법령 운영 및 관리
	공공건축, 민간전문가제도, 국토대전, 건축 HUB, 인재육성 지원
	도시건축박물관 설치 및 운영 지원
	건축안전과
	건축물 화재안전 법령 등 건축관계법령 운영 및 관리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 구조안전,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지원
	재난대응 및 훈련, 교육기관 운영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직원안내-부서별직원안내.

https://www.molit.go.kr/USR/deptInfo/m_94/lst.jsp?DEPT_ID=1613032&DEPT_NM=%EA%B1%B4%EC%B6%95%EC%A0%95%EC%B1%85%EA%B4%80(검색일: 2024.6.18.), 김상호 외(2015, pp.12~13)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은 건축허가, 건축심의,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설계공모 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기계설비법,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으로 이루어짐
 - 대표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의 건축행정을 주관하는 부서인 주택정책실의 건축기획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부서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2-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내 부서별 담당업무

조직 구분			담당업무
주 택 정 책 실 과	건 축 정 책 기 획 과	건축정책팀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사법 등 운영, 건축 조례 및 건축 기본 조례 등 개정 및 운영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건축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건축 주요 업무계획 수립
			건축법령 질의회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 건축 관련 단체 교류·정책분야 지원
	건축계획팀		건축위원회 구성·심의기준 운용, 통합심의 운영
			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 활성화구역·건축물 디자인 향상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민간건축기술팀		민간건축물 건축기술 혁신계획·민간건축물 피난 및 안전 종합계획 수립
			구조안전 및 안전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운영, 구조안전 모니터링
	건축관리팀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및 운용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운영
	녹색건축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녹색건축 설계기준·조성 지원 조례 운영 및 정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실적 관리,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 및 목조 건축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건축설비팀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건축물 기계설비법 관련 기준 운영 및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시행, 위원회 및 실태점검단 운영, 건축물 기계설비 업무
	도시건축교류팀		서울건축문화제 및 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운영
	건축문화시설운영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및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서울 도시공간 기록화 사업 관리
지 역 건 축 안 전 센 터	안전제도팀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운영·지원
			건축안전 관련 대책 및 수명 업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항,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건축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민간공사장 품질점검 및 매뉴얼 마련
			민간공사장 품질관리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 민간건설현장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축물안전관리팀		민간공사장 품질관리 및 민간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관리
	공사장안전관리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운영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스마트 기술 활용 업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안전취약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계획 및 시행, 소규모 노후건축물 시·구/안전취약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현장점검 추진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부서안내-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https://org.seoul.go.kr/org/orgChartView.do>(검색일: 2024.6.19.)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종합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도농복합지역이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보유한 기초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의 건축행정 관련 부서별 담당업무를 조사함

[표 2-4]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건축과 및 건축관리과 내 부서별 담당업무

조직 구분		담당업무
도 시 국	주 택 과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주택행정건실화 평가,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운영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운영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건 축 과	주거복지팀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 추천, 수선유지급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기초주거급여 지급,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부과 및 관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주택사업1팀, 2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공동협의체 구서·운영 및 자체품질검수, 감리업무 관리
	건축행정팀	조례 제·개정 및 운영, 건축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건축사 간담회 운영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수수료 지급
	건축허가 1팀, 2팀, 3팀, 4팀	담당지역 건축인허가
		담당지역 민원 처리
	개발제한구역허가 1팀, 2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 사업
		담당지역 민원(진정·질의) 처리
건 축 관 리 과	건축관리팀	건축물관리 조례·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한옥지원조례 제·개정 및 운영, 건축물관리법 관련 업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 및 운영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 세움터 관리, 건축사사무소 개설(변경) 신고,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일제점검, 불법(무허가) 건축물 단속 총괄 관리
	집합건축물조사팀	공동주택 감사계획 수립, 감사단 운영, 감사수행 및 지도·점검, 감사결과 사후 조치
		집합건물관리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등 관련 업무
	공동주택관리팀	센터 민원관리, 사전컨설팅, 법정교육, 모범상생단지 선정, 자문단 운영 등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등
	지역건축안전센터팀	건축인허가(화재안전, 구조안전) 기술검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관련 업무
		소규모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남양주소개-시청안내-조직도-도시국-주택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2534>(검색일: 2024.10.14.)

□ 건축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건축행정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행정”
 - 「건축법」 제2조(정의)는 “건축행정”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이 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에서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을 통해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건축행정”의 정의를 추정할 수 있음

「건축법」에서 “건축행정” 근거 조문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건축법」 법률 제20194호(2024. 2. 6. 일부개정)

-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는 다음과 같음

[표 2-5] 「건축법」에서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규정한 조항

「건축법」 조문	조문명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	용도변경
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제20조	가설건축물
제21조	착공신고 등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	건축통계 등
제38조	건축물대장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제92조	조정등의 신청

출처: 「건축법」 법률 제20194호(2024. 2. 6. 타법개정)

- 위의 15개 조항 중 13개 조항은 허가권자의 허가, 신고 수리, 승인이 필요한 건축행정을 일컫음
- 이외에 이 법 제30조의 건축통계 등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사항과 제92조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등(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이 있음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건축행정”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의 목적은 제1조에 따라 「건축법」 제32조, 「주택법」 제88조⁵⁾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설치·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규정하는 “건축행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소개글을 통해 “건축행정” 의미를 파악 가능함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소개글에서 “건축행정” 의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은 관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사용승인), 철거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입니다.

출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이용안내-건축행정시스템 소개.
(<https://www.eais.go.kr/moct/awp/agd01/AWPAGD01V01>, 검색일:2024.6.10)

- 한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 내 용어사전에서는 “건축행정”을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⁶⁾로 정의하고 있음
- 건축 관계 법령 및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규정한 건축행정 관련 업무
 - 주로 건축허가와 착공, 준공(사용승인)에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일컬어 건축행정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5) 현행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369호(2021. 2. 18, 일부개정) 제1조에는 “「주택법」 제86조”로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협회의 설립인가 등’에 관련된 내용임. 이는 「주택법」 법률 제13805호(2016. 1. 19, 전부개정) 이후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항이 “「주택법」 제86조”에서 “제88조”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임의로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로 작성함
- 6)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정보-용어사전 ‘건축행정’ 검색. (<https://www.eais.go.kr/moct/awp/aeb03/AWPAEB03L01#none>, 검색일:2024.6.10.)

[표 2-6]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규정한 건축행정 관련 업무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 소개글	건축행정시스템 용어사전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인허가	건축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복수 용도의 인정		
가설건축물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착공신고 등	착공	착공
건축물의 사용승인	준공(사용승인)	사용승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통계 등		
건축물대장		
조정등의 신청		
	분양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에 이르는
	철거	주택행정업무

출처: 「건축법」 법률 제20194호(2024. 2. 6, 타법개정),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이용안내-건축행정시스템 소개 (<https://www.eais.go.kr/moct/awp/agd01/AWPAGD01V01>, 검색일:2024.6.10.),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정보-용어사전 '건축행정' 검색(<https://www.eais.go.kr/moct/awp/aeb03/AWPAEB03L01#none>, 검색일: 2024.6.1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 건축행정평가의 법적 근거

- 1999년 「건축법」 제68조(감독) 개정(시행 1999. 5. 9.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으로 건축행정의 건설한 운영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2008년 「건축법」 전부개정(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3.21.)에 따라 제78조(감독)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지속 중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

- 본 규정은 1999년에 신설된 후 현재까지 내용 측면에서 개정된 적이 없이 현재 내용을 유지 중임

「건축법」에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근거 조문

「건축법」 제78조(감독)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법」 법률 제20194호(2024. 2. 6.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2023. 12. 26. 일부개정)

□ 건축행정평가의 목적

- 최근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에서 밝힌 평가목적
 - “건축행정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 수행되고 있는 건축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⁷⁾
- 과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목적(2015)
 - “건축사업의 사업기간·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 지침과 불합리한 조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⁸⁾
- 건축행정평가 관련 선행연구(2015)에서 제안한 건축행정평가의 목적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준이나 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관행적 행정 처리를 근절하여 건축행정 절차의 신뢰성과 국민 만족도 향상,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운영과정을 평가하여 정책의

7) 국토교통부(2022, p.1), 국토교통부(2023c, p.1). 2022년 추진계획부터 평가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그전 추진계획 자료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음

8) 조현환(2015, p.106)

일관성 확보”⁹⁾

- 한편 또 다른 선행연구(2017)에서 파악한 건축행정평가의 취지
 - “향후 건축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에 대한 현황 파악, 건축행정서비스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 및 전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국민 불편 해소 및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¹⁰⁾

[표 2-7]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의 시기별 평가목적 변천

구분	2015	2017	2022~2023
평가 목적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 지침 및 불합리한 조례 등 숨은 건축규제 적극 발굴·개선하여 절차의 신뢰성과 국민 만족도 향상	지자체 건축행정 현황 파악 및 건축행정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전파하여 대국민 불편 해소 및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지자체 건축행정의 능률성·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및 자율적 행정 역량 강화

출처: 조현환(2015, p.106), 유광흠 외(2015, p.241), 이여경 외(2017, p.13), 국토교통부(2022, p. 1), 국토교통부(2023c, p.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추진경과

- (1999.02.08.)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법적 근거 신설
 - 「건축법」 제68조 제4항 신설(법률 제5895호)
- (1999.05.11.)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행
 -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 신설(건설교통부령 제189호)
- (2014) 2015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
 -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방안 연구”(유광흠 외, 2015) 수행 결과 반영
- (2016)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대상 전 지자체로 확대, 평가지표 일관성 확보, 특별부문 평가 신설¹¹⁾
 -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부터 평가 대상을 특정 지자체 51개(광역시, 17, 기초 34)에서 전 지자체 243개(광역시 17, 기초 226)로 확대
 - 일관된 평가와 성과관리 유도를 위해 평가지표를 건축물 생애주기와 건축행정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변경

9) 유광흠 외(2015, p.241)

10) 이여경 외(2017, p.13)

11) 국토교통부 (2016, p.2.)

-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특별 부문을 신설하여 공무원 외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성 평가 실시
-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수탁과제로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연구”(이여경 외, 2017) 수행 결과 반영
- (2018) 2018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¹²⁾
 -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때는 광역 지자체는 80점 만점, 기초 지자체는 100점 만점으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일원화
- (2019) 평가 명칭 변경: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지자체 건축행정 평가”¹³⁾
 - 본 평가의 주 내용이 “건축행정” 평가이므로 이에 따라 평가 명칭 변경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종결과 발표 전,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에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부여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차별화
- (2020) 상호 업무 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지자체 평가결과를 광역 지자체 평가에 반영¹⁴⁾
 - 이전에는 기초 지자체에 해당하는 지표는 광역 지자체 지표에서 제외했으나 기초와 광역 지자체간 업무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표 간 연계
 -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 등의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1-1-3. 건축행정 만족도 조사 신규 지표)
- (2021) 지자체 행정 부담 경감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¹⁵⁾
 - 2020년 6개 분야 35개 세부지표→ 2021년 6개 분야 26개 세부지표
 - 평가 통해 우수(30%), 보통(60%), 미흡(10%) 등급 부여
 - 평가그룹별 미흡 등급 지자체에 대하여 개선계획 제출토록 조치
- (2022) 특별부문 우수 지자체 사례 전국 공유 및 평가지표 일부 개편¹⁶⁾
 - 평가과정에서 제출된 우수 아이디어는 평가결과(순위) 알림과 함께 각 지

12) 국토교통부 (2018, p.1)

13) 국토교통부 (2019, p.2)

14) 국토교통부 (2020, p.1)

15) 국토교통부 (2021, p.1, 3)

16) 국토교통부 (2022, p.2, 6)

자체에 공유 추진

- 일반부분 평가지표를 내실화·객관화하고, 광역·기초간의 평가배점을 차별화하되 특정 지자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일부 평가지표 변경

※ 녹색건축 및 건축안전 등 중요성이 높은 지표 배점 증대,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표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행정시스템 활용 실적 삭제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와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로 구득 가능한 자료는 추가로 지자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2023) 평가기준 사전공표¹⁷⁾

- 평가지표를 사전 공표하여 지자체가 지표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추진계획 조정

※ 2024년 평가계획 전년도 8월 배포(대상 기간 '24.1.1.~'24.8.31.) → 지자체 평가준비('23.8.~'24.8.) → 기초평가('24.9.) → 차년도 평가계획 배포('24.9.) → 광역 평가('24.10.) → 시상('24.12.)

□ 건축행정평가에서 의미하는 건축행정

- 평가 운영 계획상의 건축행정 의미¹⁸⁾

- 2022~23년도에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은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함

- 건축물의 전생애주기는 ① 건축기획·설계 → ② 건축 시공 → ③ 건축물 유지관리 → ④ 건축물 해체로 이루어짐

- 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상의 건축행정 의미¹⁹⁾

- 평가 항목은 크게 1) 행정절차 합리성, 2) 안전 관리, 3) 유지관리 적절성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4) 건축행정 개선노력, 5) 가·감점으로 정책 관련 사항으로 구성됨

- 1) 행정절차 합리성 분야에는 건축심의와 건축인허가 관련 지표, 2) 안전 관리 분야에는 안전사고 및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관련 지표, 3)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에는 건축물 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 관련 지표, 4) 건축행정 개선노력 분야에는 건축정책 이행 및 지자체 자체 노력도 관련 지표 등을

17) 국토교통부 (2023c, p.4)

18) 국토교통부 (2023c, p.2)

19) 국토교통부 (2023c, p.2)

다루고 있음

- 세부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2-8]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2024년 평가 기준)

구분	지표명
I.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 (8)	
1-1. 건축심의 기준	1-1-1.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1-1-2.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1-1-3. 건축심의 결과 공개 준수율
1-2.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준수율	1-2-1.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1-2-2.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1-2-3.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율
1-3.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및 전문성	1-3-1. 건축행정 만족도 조사 실적
	1-3-2. 건축허가·신고 담당팀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
II. 건축안전 관리분야 (3)	
2-1. 시공 및 해체단계 안전사고	2-1-1. 안전사고 발생비율
2-2.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2-2-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고시) 실적
	2-2-2.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실적
III.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 (4)	
3-1. 건축물 점검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적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3-1-3.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충실도
3-2. 위반건축물 관리	3-2-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실적
IV. 건축행정 개선노력 분야 (6)	
4-1. 건축정책 이행도	4-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4-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4-1-4.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
	4-1-5.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운영 실적
4-2. 지자체 자체 노력도	4-2-1. 지자체 자체 노력사례 (정성)
V. 가·감점 (7)	
5-1. 가점	5-1-1.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철거 실적
	5-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자금 설치
	5-1-3.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노력
	5-1-4.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비대상 설치
5-2. 감점	5-2-1. 평가자료 제출 지연
	5-2-2. 평가자료 충실도 부족
	5-2-3. 정기점검 보고서 부실화

출처: 국토교통부(2024, pp.7-8)

2. 건축행정평가의 정부업무평가상 위상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는 1999년부터 개별법령인 「건축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 제정·시행에 따라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체계가 도입되어 국무조정실의 관리하에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에 포함
- 이에 따라 건축행정평가의 상위 체계인 정부업무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에 대해 파악 필요

1) 정부업무평가 개요

□ 정부업무평가 정의²⁰⁾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
 -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 정부업무평가 법적 근거

- 현행 정부업무평가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법률 제7928호, 2006. 3. 24.)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운영
 - 제정 이유로는 당시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함²¹⁾

20)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정부업무평가개요.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검색일: 2024.5.21.)

2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7928호(2006. 3.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부업무평가」 근거 법령

제1조(정의)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 정부업무평가 제도 발전과정²²⁾

- (1961~198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상황 및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교수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 * 평가교수단: 1965년에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이 구성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중간 평가 실시한 이래, 매년 평가 실시(90명의 평가교수가 전 공분야별로 정부 시책 및 사업영역을 담당하여 평가)
- (1981~1990)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 정부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예산사업 위주 평가 등 이전 제도의 틀은 유지)
 - 심사분석 결과 예산사항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예산편성 및 배정에 반영하고, 비예산 사항은 국무총리가 시정 요구
- (1990~1994)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 흐름을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 제시도 등장
 - 부처별 1~2개 특정정책을 대상으로 점검리스트를 통해 평가

22)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정부업무평가 개요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검색일: 2024.5.21.)

- (1994~1998)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를 일원화
 - 정기 심사평가와 수시 심사평가업무로 구분

* 정기 심사평가: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반기별 국무회의 보고

* 수시 심사평가: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
- (1998~2006)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기관평가
 - 각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외에 기관의 정책추진 역량과 국민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단순한 과제중심의 평가에서 기관 간 경쟁요인을 도입
 - 최초 입법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시행(2001.5)
- (2006~현재)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통합평가
 -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통합·실시하고,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계량적 성과지표 개발·적용
 - 기관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평가 결과의 개인성과 반영 강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전면개정·시행(2006.5)

[표 2-9] 한국 정부업무평가 제도 발전과정

구분	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	통합
주관 부처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시기	1961. 9. ~ 1981. 10.	1981. 11. ~ 1990. 4.	1990. 4. ~ 1994. 12.	1994. 12. ~ 1998. 2.	1998. 3. ~ 2006. 3.	2006. 4 ~ 현재
내용	심사분석제도 도입	심사분석업무 경제기획원 이관	정책평가 기능 신설	심사분석과 정책평가 통합	기관평가제도 도입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도입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 주요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총리령)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업무 등의 평가 에 관한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 법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정부업무평가 개요.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검색일: 2024.4.26.)

□ 정부업무평가 주요 평가 방향²³⁾

- 기관 간 협업을 중점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협업 노력 및 성과를 평가에 중점 반영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부 내 협업 확산 독려
- 정부업무평가의 타당성 및 수용성 제고
 - 기관별 규모 등 상이한 특성을 고려, 보다 유연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타당성과 수용성 제고
- 국민체감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
 - 정부 3년차 실질적 체감성과를 중점 평가하기 위해 주요정책 부문 목표달성도 및 정책효과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 비중 축소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기여 확대
 - 특정평가는 기관종합 등급 없이 부문별 평가결과만 도출하여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방지하고, 우수기관 독려 및 정책환류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 내 사기 진작 및 실질적 정책개선 도모
-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 피평가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운영하고, 각종 평가제도 간 유사·중복이 없도록 개별평가 점검·관리 지속

□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

- 중앙행정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 운영
-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합동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 운영
 - 건축행정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에 속함
- 공공기관은 각 개별법에 의해 평가

23)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정부업무평가 개요,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검색일: 2024.5.21.)

[표 2-10]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

평가대상	평가유형	평가내용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사업·현안시책 등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개별평가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하에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평가
지방 자치 단체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 등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
	개별평가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하에 국가위임사무 등 평가
공공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경제·인 문사회분야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개별법에 의한 평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경영성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성과 등 평가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검색일: 2024.4.26.)

□ 정부업무평가 유형별 체계도

[표 2-11] 한국 정부업무평가 유형별 체계도

평가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46개)	협업	정부업무평가법	국무조정실등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자체평가 (47개)	주요정책(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법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일반재정사업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R&D 평가	연구성과평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	재난안전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관리역량	조직	정부업무평가법	행정안전부
			인사		인사혁신처
			정보화		행정안전부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9개 기관, 106개 지표	정부업무평가법	행정안전부 등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정부업무평가법	지자체장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평가대상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공공기관	공기업(32개)		공공기관운영법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55개)				
	기금(준치평가 25개, 자산운용평가 24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49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23개)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연구관법 연구성과평가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18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하(3개)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2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산하(1개)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산하(2개)			우주항공청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정부출연기관법
	지방공기업(262개)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5(검색일: 2024.4.26.)

□ 정부업무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활용 관련하여 「정부업무평가법」 제26조~제30조에 규정
 - (평가 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²⁴⁾
 - (평가 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²⁵⁾
 - (평가 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 시 반영,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²⁶⁾
 - (평가 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²⁷⁾

24)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26조

25)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27조

26)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28조

27)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29조

-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 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② 정부는 정부 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²⁸⁾

□ 정부업무평가의 평가 권한 위임 및 위탁

-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²⁹⁾
-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가능³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목적
 -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³¹⁾
- 심의 및 의결 사항³²⁾

[표 2-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 사항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재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 제2항

28)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30조

29)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33조 제1항

30)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33조 제2항

31)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 제1항

32)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 제2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³³⁾
 -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정부업무평가법」 제10조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

- 추진 배경
 - 행정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평가제도도 양적으로 확대 중이며 평가 간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피평가 기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종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화 및 전문화 추진³⁴⁾
- 연혁³⁵⁾
 - (2020.6)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 간 간담회 이후 본격 추진
 - (2020.12) 정부예산 최종 편성(16.38억 원)
 - (2021.1) 사업기관 공모(한국행정연구원 선정, 민간위탁)
 - (2021.3) 신규인력 선발 완료
 - (2021.4)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

33)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 제3항

3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1, 4월 6일 보도자료)

35)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82(검색일: 2024.5.23.)

- 역할 및 기능³⁶⁾
 - 정부 내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총괄 및 조정
 -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전문성 보강
 - 각종 평가 간 중복 여부 및 존속·개선 필요성 등 관련 전문 분석 업무 지원
 -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모델 개발·개선
 - 전문가 평가단 및 피평가기관 교육·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관리
-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구성 및 세부 업무
 - 센터 내 제도관리팀 및 평가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 및 운영
 - 각 팀별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2-13]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구성 및 세부 업무

팀명	세부 업무
제도관리팀	- 개별평가 타당성 검토(실효성, 중복성, 연계성 분석 등) 보고서 작성 - 중앙행정기관 개별평가 운영실태 점검 - 개별평가 지표·방법·절차 등 평가내용 적절성 분석 - 각종 평가제도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등 사전 검토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및 정부업무평가포럼 개최
평가지원팀	- 평가단 인력 pool 구축·관리, 부처 실적설명회 운영 및 지원 - 정부업무평가 평가단 구성, (신규) 평가위원 교육 지원 및 관리 - 성과지표 분석 및 개발, 중앙행정기관 평가교육 및 컨설팅 - 특정평가 결과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지원 - 국정 주요 이슈 발굴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82
(검색일: 2024.5.23.)

3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1, 4월 6일 보도자료)

2)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개요 및 운영현황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정의 및 법적 근거

- (정의)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 및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
 - 「정부업무평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평가하는 “합동평가”가 기본 평가 방향
 - 합동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합동평가의 예외로서 개별평가가 이루어짐
- (법적 근거) 2006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부업무평가법」상 “개별평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법 제21조 제5항에 법적 근거를 둬
 -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한 종류로 “개별평가”라는 용어 등장³⁷⁾

「정부업무평가법」에서 개별평가 근거 법령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37) 국무조정실(2007, p.35)

[표 2-14]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개요

구분	내용
평가 방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합동평가에 통합 및 간소화 (업무특성·평가시기 등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 실시) - 개별평가 남설 방지, 평가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의 타당성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 기반 관리 체계화
평가 주체	-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평가 대상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국가의 주요시책* 등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평가 방법	-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계획 수립,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시행,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 개별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관리
평가결과 활용	- 평가주관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우수사례 성과 공유, 컨설팅 지원 등 환류 조치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개별평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6(검색일: 2024.4.26.)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추진 과정

- (2006) 「정부업무평가법」(법률 제7928호, 2006. 3. 24. 제정) 제21조에 개별평가 법적근거 신설
- (2016) 2016년도 말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 전수조사³⁸⁾
 -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평가 현황 파악한 결과, 21개 기관에서 89건의 개별평가 시행 중임을 확인
- (2017)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별평가 정비 추진³⁹⁾
 - 총 89건 중 10건은 통합평가 대상으로 검토 제외, 31건은 통·폐합 등으로 정비, 38건은 지표 간소화 등 평가효율화 추진, 최종 48건의 개별평가 유지 확정
- (2018) 전년도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실시⁴⁰⁾
 - 개별평가 1건을 특정평가로 통합하고(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 1건 신설(지방혁신평가)하여 총 48건 개별평가 유지

38) 국무조정실 (2022, p.156)

39) 국무조정실 (2022, p.156)

40) 국무조정실 (2022, p.157)

- (2019) 전년도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평가 40건으로 축소⁴¹⁾
 - 개별평가 1건이 격년 주기로 변경(식생활 안전영향수준 평가), 1건은 합동 평가로 통합(식생활 안전영향수준 평가)
 - 점검 결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4건을 1건으로 통합, 농산시책추진 우수기관 평가는 지자체 합동평가로 통합,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 합동점검 및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은 점검으로 전환
- (2020) 별도 점검 없이 개별평가 관련 연구용역 실시⁴²⁾
 - 중앙행정기관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평가 운영계획 수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수, 유사평가 중복 실시로 인해 지자체 등 피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 전반적인 개별평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연구용역 실시⁴³⁾
- (2021) 전년도 실시한 연구 결과 바탕으로 총 87개의 개별평가 발굴⁴⁴⁾
 - 총 231개 개별평가 후보군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28개 중앙행정기관의 87개 개별평가 발굴
 - 행정안전부 15개, 국토교통부 12개, 보건복지부 9개 순으로 운영
 - 개별평가의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의 타당성 제고 위해 심층 분석 진행
- (2022) 국무조정실이 정부 내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중복 평가를 통·폐합하는 등 제도개선(안) 마련⁴⁵⁾
 - 87개 제도 중 12개 제도는 통·폐합, 54개 제도는 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 부담 완화 예정 발표⁴⁶⁾
 - 유사 개별평가 신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신설 전에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사전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⁴⁷⁾
- (2024) 9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가이드 라인 배포⁴⁸⁾

41) 국무조정실 (2022, p.158)

42) 국무조정실 (2022, p.160)

43) 이 연구용역 과제명은 “개별평가 개선방안 연구”이며 국무조정실 수탁과제로 한국 행정연구원이 약 6개월간 수행함,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비공개 상태임.

44) 국무조정실 (2022, p.161)

4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2, 4월 12일 보도자료)

4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2, 4월 12일 보도자료)

47)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2, 4월 12일 보도자료)

48)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한국행정연구원) 자문회의(2024.5.31.)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운영 현황

- 2024년도 5월 기준 23개 중앙부처에서 62개 개별평가 운영 중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11개의 개별평가를 운영하여 가장 많은 개별평가 보유
 - 보건복지부는 6개, 환경부는 5개,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의 개별평가 운영
 - 그 외 부처들은 1~2개 개별평가 운영

[표 2-15]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운영 현황(2024년도)

주관부처	개별평가 목록		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	11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평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록관리 평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권익위 공동),	-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추진실적 평가	1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대중교통 시책평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점검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	
	도로정비평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 평가	6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 평가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결과 평가	지자체 빗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5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사업성과 평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이용합리화 시행결과 평가	3
	지역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평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교육실적 점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시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	2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평가(농업인대학)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2

주관부처	개별평가 목록	계
산림청	나눔숲 조성 관리 사후관리 우수기관 녹색자금사업 우수기관	2
소방청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식생활안전·영양수준 평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	2
여성가족부	성희롱방지조치 및 폭력 예방교육 점검 청소년정책분석평가	2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
교육부	시·도교육청평가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공공기관 등 공문서 평가	2
법무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 평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1
질병청	감염병관리사업평가	1
합계		62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검색일: 2024.4.26.)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특성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는 각기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
 - 법률에 근거한 개별평가는 87.1%로 대다수이고 그 외 대통령령에 근거한 개별평가는 9.7%, 기타 행정규칙 및 방침에 근거한 경우는 3.2%에 불과
- ※ 건축행정평가는 법률(「건축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

[표 2-16]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근거법령 분포/통계

개별평가 근거법령	계	비율
법률	54	87.1%
대통령령	6	9.7%
기타(행정규칙, 방침)	2	3.2%
합계	62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의 평가대상은 「정부업무평가법」 제21조(국가위임 사무등에 대한 평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

「정부업무평가법」에서 개별평가의 평가대상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출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25호(2022. 6.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대상은 “국가위임사무등”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임
- 평가 대상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광역), 지방자치단체(기초) 등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광역, 기초)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평가가 전체의 절반에 해당

※ 건축행정평가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해당

[표 2-17]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대상

개별평가 평가대상	계	비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3	4.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13	21.0%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17	27.4%
지방자치단체(광역)	8	13.0%
지방자치단체(기초)	6	9.7%
기타	11	17.7%
알 수 없음	4	6.5%
합계	62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단위(중복 계수)
 - 한편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의 평가 대상을 평가 단위로 구분하면, 기관, 사업, 제도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기관과 사업 단위로 평가
- ※ 건축행정평가는 기관·제도 평가에 해당

[표 2-18]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 단위

개별평가 평가 단위	계
기관	33
사업	22
제도	3
시책	4
기타	6
합계	68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수행 주체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를 평가하는 평가 주체는 “평가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
 - 한편 「정부업무평가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항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가능
 - 이에 따라 지자체 개별평가의 평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단독, 중앙행정기관+외부전문가(전문 평가단, 연구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 국민평가, 중앙행정기관 + 외부전문가 + 국민평가로 구분
 - 약 30%의 개별평가가 중앙행정기관 단독으로 평가 수행
 - 51.6%의 개별평가가 중앙행정기관에 더불어 외부전문가의 평가 동반으로 수행
 - ※ 건축행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외부전문가 평가에 해당
 - 11개의 개별평가는 국민 평가 활용

[표 2-19]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 수행 주체

개별평가 평가 수행 주체	계	비율
중앙행정기관 단독	19	30.6%
중앙행정기관 + 외부전문가	32	51.6%
중앙행정기관 + 국민평가	4	6.5%
중앙행정기관 + 외부전문가 + 국민평가	7	11.3%
합계	62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의 평가 방법으로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활용 중
 - 모든 지자체 개별평가가 기본적으로 서면평가를 하되, 평가 특성에 따라서 현장평가, 발표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추가로 활용
- ※ 건축행정평가는 서면 평가만 활용

[표 2-20]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 방법1

개별평가 평가 방법	계	비율
서면평가	27	43.5%
서면평가 + 현장평가	14	22.6%
서면평가 + 발표평가	8	12.9%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	2	3.2%
서면평가 + 만족도 조사	8	12.9%
서면평가 + 만족도 조사 + 현장평가	3	4.8%
합계	62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세부 평가 방법으로서 각 평가항목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활용 중
 - 대부분의 지자체 개별평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활용
- ※ 건축행정평가는 정량평가+정성평가 활용

[표 2-21]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 방법2

개별평가 평가 방법	계	비율
정량평가	5	8.1%
정량평가 + 정성평가	57	91.9%
합계	62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주기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가 연 1회 평가 시행
- ※ 건축행정평가는 연 1회 평가 시행
- 지자체 개별평가 특성에 따라 2년에 1회, 3년에 1회 실시하는 평가도 존재

[표 2-22]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평가주기

개별평가 평가주기	계	비율
연 1회	59	95.2%
2년에 1회	1	1.6%
3년에 1회	2	3.2%
합계	62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결과 기준
 - 평가 이후 평가 대상을 일정한 비율로 구분하여 우수, 보통, 미흡 기관 선정 및 발표하거나 상위 평가 대상만을 선정
 - 과반수이상의 지자체 개별평가가 상위 평가 대상만을 선정하고 발표
- ※ 건축행정평가는 상위 점수를 받은 지자체만 선정 및 발표

[표 2-23]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결과 기준

개별평가 결과 기준	계	비율
비율로 구분	10	16.1%
상위 평가대상 선정	46	74.2%
기타	6	9.7%
합계	62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결과 활용(중복 계수)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는 다양한 평가결과 활용 방안 보유
 - 인센티브(포상금) 수여, 특별교부세 지급, 하위(미흡)기관을 필수적으로 컨설팅하거나 요청 시 컨설팅, 하위(미흡)기관의 개선계획 수립 및 관리, 해당 평가 결과를 타 평가에 반영, 상장 시상 등
- ※ 건축행정평가는 상위 지자체에 상장 수여

[표 2-24]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결과 활용

개별평가 결과 활용	계
인센티브(포상금) 수여	7
특별교부세 지급	4
하위(미흡)기관 컨설팅(필수)	32
하위(미흡)기관 컨설팅(요청시)	3
하위(미흡)기관 개선계획 수립 및 관리	8
해당 평가 결과를 타 평가에 반영	23
상장 시상	23
합계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결과 공개 여부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후 평가 결과 공개 필수
 -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는 22.6%에 불과하고 부분 공개하는 경우가 69.4%, 비공개하는 경우는 8%
- ※ 건축행정평가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통해 상위 지자체 일부 공개

[표 2-25]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결과 공개 여부

개별평가 결과 공개 여부	계	비율
모두 공개	14	22.6%
부분 공개	43	69.4%
비공개	5	8.0%
합계	62	100%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
(검색일: 2024.4.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발전방향⁴⁹⁾

- 중앙행정기관 대상 개별평가와 함께 관리 필요
 - 2017년도 및 2021년도 개별평가 정비 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를 구분 없이 함께 정비함

49) 국무조정실(2022, pp.216-217)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향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평가 DB 등을 통해 이력관리 및 정비 등 동일하게 관리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적극적인 통합 필요
 - 합동평가에서 개별평가의 지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수 확대하고,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 합동평가 순기 단축이 필요함
 -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필요함
- 유사 개별평가 신설 사전 방지
 - 평가 신설 전 반드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 업무특성 등으로 개별평가가 불가피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지표 간소화 등 개별평가 효율화 추진하여야 함

3.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 사례

□ 분석의 개요

- 분석의 대상
 - 국내 평가 사례는 국무조정실의 평가 발전 방향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행정에 대한 평가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를 대상으로 함
 - 해외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일본, 영국, 미국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이에 일본의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입회검사, 영국의 건축허가 통계자료 발간, 미국 보험서비스국의 국가빌딩코드평가보고서를 대상으로 선정

[표 2-26] 분석의 대상

구분	평가명
국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안전부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해외	일본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입회검사
	영국 건축허가 통계자료(PS1, PS2) 발간
	미국 보험서비스국(ISO)의 국가빌딩코드평가보고서(BCEGS) 발간

출처: 연구진 작성

- 분석의 틀
 - 분석의 틀은 평가 목적, 운영 체계, 평가 지표로 구분하여 세부 분석항목을 설정하였음
 - 평가 목적에서는 추진배경 및 연혁, 근거법령, 평가목적 및 대상을 분석

- 운영체계에서는 평가주체, 평가 절차와 방법, 결과 활용 방식, 결과 공개 여부와 방식에 대하여 분석
- 평가지표에서는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타로 건축행정평가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추가로 검토하였음

[표 2-27]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사례 분석의 틀

구분	세부 분석 항목
평가 목적	- 추진배경 및 연혁 - 근거법령 - 평가목적 및 평가방향 - 평가대상
운영 체계	- 운영체계 및 평가주체(평가위원회) - 평가 절차 및 방법 - 결과 공개 여부 및 방식 - 평가 결과 활용 방식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기타	- 시사점

출처: 연구진 작성

1) 국내 유사제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추진 배경⁵⁰⁾
 - (1995)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통합적인 국가사무 관리 필요성 측면에서 합동평가 도입 논의 시작
 - (1999) 2개 분야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시범평가 실시
 - (2000) 10개 부처 50개 시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매년 본격적 실시
 - (2009) 중앙부처별 실시했던 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통합·실시
- 근거 법령: 「정부업무평가법」 제21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등,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정부업무평가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근거 법령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50) 한국정책홍보연구원(2015, pp.19-20)

- 평가 목적: 국정 주요 시책 등의 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⁵¹⁾
- 평가 대상: 17개 광역시(시·군·구 실적 포함)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
- 운영체계 및 평가주체: 「정부업무평가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 지표개발추진단과 합동평가단 운영

[표 2-2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주체

구분	근거 법령	기능	구성 및 임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 등 평가 관련 사항 심의· 의결	20명 임기 2년, 1회 연임
지표개발추진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 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3	평가지표 개발 심의	50명 내외 임기 1년, 연임제한 X
합동평가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 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정량평가 최종검증, 정성 평가(집합검증) 수행 등	100명 내외 임기 1년, 2회 연임

※ 국민평가단: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

출처: 행정안전부(2023a, p.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방향⁵²⁾
 - 정부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주요시책 중심으로 평가 항목 구성: 안전 관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 별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평가항목 선정
 -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소관부처-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체감도 제고: 합동평가 각 단계별 소관부처·지자체 참여 확대 및 환류 강화, 국민평가단 구성 및 국민평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추진

51)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합동평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9(검색일: 2024.5.13.)

52)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합동평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9(검색일: 2024.5.13.)

- 평가 절차

[표 2-2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절차

시기	내용	주체
전전년 10월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확정	행정안전부
전년 9~10월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당년 1월경	지표별 실적 입력	부처·시도
당년 2~3월경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합동평가단)
당년 4월경	평가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당년 10~11월경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행정안전부
익년 1~2월경	정책환류실적 점검(3년 주기로 지표 개발)	행정안전부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합동평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9(검색일: 2024.5.13.)

- 평가 항목: 2024년(2023년도 실적) 총 106개 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
 - (국정목표) 6대 국정목표, 20대 국민약속, 46개 국정과제 관련 106개 지표

[표 2-3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정목표별 평가지표

구분	국정목표별 평가지표	총 지표수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3 (12.3%)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4 (13.2%)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58 (54.7%)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8 (7.5%)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5.7%)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 (6.6%)

출처: 행정안전부(2023a, p.2)

- (신규/계속) 신규지표 14개, 계속지표 92개
- (정량/정성)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 (부처별) 행정안전부 18개, 보건복지부 14개, 농림축산식품부 12개 등 총 29개 부처 지표 평가

[표 2-3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소관부처별 평가지표

총	행안부	복지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림청	여가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18	14	12	6	6	5	5	4	4
106	질병청	중기부	국정원	통일부	병무청	보훈부	식약처	산업부	기타*
	4	3	3	2	2	2	2	1	13

* 부처 공동지표(4), 문화재청·법제처·통계청·농진청·해경청·개인정보위·경찰청·교육부·공정위(각 건)

출처: 행정안전부(2023a, p.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방법: 정량·정성·국민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정량평가)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 평가(1~4월)
 - (정성평가) 정성지표별 우수사례 시·도부 구분 각 2건 선정(76건)
 - (국민평가)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총 34건(각 시·도별로 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 2건을 선정하여 제출) 중 10건 선정

[표 2-3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세부 평가별 방법

정량 평가	실적 입력(1월)	실적 검증(2월)	최종 검증(3~4월)	결과 공개(5월)
	·지표별 실적입력 ·입력된 실적 확인 및 조정(부처)	·부처 조정사항 확인 및 검증(시도 → 부처)	·최종 검증(3월) ·합평위, 정평위 결과보고(4월)	·평가 결과 공개 (언론·부처·지자체)
정성 평가	실적 입력(1월)	실적 검증(1~3월)	정성평가(3~4월)	결과 공개(5월)
	·지표별 성과 요약서 등록(시도)	·평가단·중앙부처·지자체 실적검증(이의 신청)	·우수사례 선정(3월) ·합평위, 정평위 결과보고(4월)	·평가 결과 공개 (언론·부처·지자체)
국민 평가	국민평가단 구성(~1월)	평가대상 제출(1월)	국민 평가(2~3월)	결과 공개(5월)
	·지역·연령·성별 종합 고려하여 구성	·시도별로 우수사례 2건 선정·제출	·국민평가단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공개 (언론·부처·지자체)

출처: 행정안전부(2023a, p.2)

- 평가 결과 활용 방식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결과 우수 광역지자체 공개
 -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및 정책환류 실태 점검
 -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분석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및 유공자 포상
- 결과 공개 여부 및 방식
 -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에 모두 공개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중 건축행정평가 평가지표와 관련성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국토교통부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임

[표 2-3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국토교통부 관련 세부 평가지표(2025년('24년 실적) 기준)

구분	국정목표	지표명	세부지표(측정산식)	평가대상	소관부처
1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㉞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근 2년간 시도별 장기공 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시·도 (시·군·구 실적 포함)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2		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 선정 실적 등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3	2. 민간이 끌고 정 부가 미는 역동 적 경제	㉞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수 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률	광역·기초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4		㉞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지적재조사 추진 실적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5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㉞ 건축안전 수준 평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 영 수준, 사망자 수준 및 건 축물 안전 점검 실시 수준, 해체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준	시·도 (시·군·구 실적 포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출처: 행정안전부(2023b, p.11, 13-15, 17-18, 56-58, 75-77, 211-21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이 중에서 건축행정평가의 세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지표와 건축안전 수준 평가 관련임
-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지표에서 건축행정평가의 평가 대상인 전년도 지자체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 대상에 포함됨

[표 2-34]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건축행정평가 지표

구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2024)	건축행정평가 지표(2023)
지표명	㉞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평가대상	광역·기초지자체의 의무대상 건물 중 평가년도 연말까지 ZEB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한 등급별 건물수	전년도 1년 동안 각 지자체 관할구역 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
평가 기준	①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율 수준(80%) - $[(\Sigma \text{등급별 인증 건물수} \times \text{등급별 가중치}) / \text{ZEB 의무대상 건물수}] + \text{자발적 ZEB 인증 가점}$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율(20%)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 건수 - 광역지자체: 1건당 2점(기초지자체 실적 포함) - 기초지자체: 1건 4점, 2건 6점, 3건 이상 10점
증빙자료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구득 방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BEMS 설치 확인 실적자료, 건축물대장(세움터) 통계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담당)	(파악 불가)

출처: 행정안전부 내과장알리미-합동평가-평가지표-“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https://www.laiis.go.kr/lips/uev/are/actualResultList.do?currentTabNum=1>(검색일:2024.06.14.), 행정안전부(2023,p.56), 국토교통부(2023b, pp.5-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다음으로 건축안전 관련 지표에서 지자체 합동평가와 건축행정평가가 유사한 평가대상을 갖고 있지만 건축행정평가의 평가대상은 “건설공사대장 통보현장(원도급금액 1억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 현장수는 '20년 말 미준공 현장 + '21년 중 착공현장 포함”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편입

[표 2-35] 건축안전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건축행정평가 지표

구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2024)	건축행정평가 지표(2023)
지표명	㉔ 건축안전 수준 평가	2-1-1. 안전사고 발생 비율
평가대상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 중 전년도에 건설공사 사고, 건축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전년도 1년 동안 각 지자체 관할구역 내 시공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한 건축현장* * 건설공사대장 통보현장(원도급금액 1억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 현장수는 '20년 말 미준공 현장 + '21년 중 착공현장 포함
평가기준	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40%) ② 사망자 수준 및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수준(40%) - (당해 연도 건설공사* 사고 및 건축물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당해 연도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추진(실시) 횟수***) 환산배점 점수 *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으로 한정 ** 사망자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건축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 반영 *** 점검 횟수의 경우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 ③ 해체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준(20%)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낮은 순으로 상, 중, 하 상대평가 (광역시지자체는 관할 기초지자체 건축현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로 평가) - 건축현장 사고발생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30%: 배점점수의 100% - 건축현장 사고발생율이 낮은 순으로 중위 40%: 배점점수의 70% - 건축현장 사고발생율이 낮은 순으로 하위 30%: 배점점수의 40%
증빙자료 구득 방식	별도 증빙자료 필요 (VPS(Virtual Policy Studio)시스템에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담당자가 입력)	별도 증빙자료 필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건설안전과 협조 자료 토대로 평가)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합동평가-평가지표-“건축안전 수준 평가” <https://www.laiis.go.kr/lips/uev/are/actualResultList.do?currentTabNum=1>(검색일:2024.06.14.), 행정안전부(2023, p.211). 국토교통부(2023b, p.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시사점
 - 환류체계 운영: 행정건설팀 체계 운영
 - 3년의 정기적인 지표 개선 체계 구축
 - 평가결과로 인센티브 수여
 - 국민평가단 운영
 - 합동평가 지표 중 건축행정평가 지표와 유사·중복하는 지표(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건축 안전사고 발생) 통·폐합 가능성 검토 필요

□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 추진 배경

- 과거 행정정보시스템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 업무 운영, 비리 및 오류 등의 잦은 발생, 2-3년 단위의 감사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의 사각 지대 발생과 감사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 감사 시행⁵³⁾

- 안전행정부(現 행정안전부)가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구축 및 보급⁵⁴⁾

- 2012년 최초로 청백-e 시스템 구축해 경기도(본청,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광주시, 가평군)에서 시범운영⁵⁵⁾

※ 누락된 25억여 원의 세금 발굴 등 비리 예방 및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 청백-e 시스템 : 재정·건축·인사·복지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예방 행정 시나리오'에 넣어 비리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 관련 공무원에게 알려주어 스스로 이를 바로잡게끔 지원하는 시스템⁵⁶⁾

- 2013년 인천광역시(본청, 서구, 부평구, 옹진군, 연수구) 시범운영⁵⁷⁾

-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운영하여 지방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큰 성과⁵⁸⁾

※ '사망 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 환급금 부당지급' 등 110,895건 사전 포착 및 비리 예방, 부과 누락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723억 원 추징, 사용 불가 업소에서 결제한 323,438건에 대해 36억 원 환수(2016년 기준)⁵⁹⁾

• 근거 법령

- 각 지자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 제19조(평가) 또는 제21조(평가)에 근거하여 운영

53) 정운섭 외(2017, p.18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54) 안전행정부(2013a, 6월 24일 보도자료)

55) 안전행정부(2013a, 6월 24일 보도자료)

56) 행정안전부(2017, 4월 3일 보도자료)

57) 안전행정부(2013b, 정책실명제 자료)

58) 행정안전부(2017, 4월 3일 보도자료)

59) 행정안전부(2017, 4월 3일 보도자료)

-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평가)를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의 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평가)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활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 등
 3. 자기진단 제도 : 자기진단 대상 업무량, 비리예방 효과 등
 4. 청렴자율준수제 : 계획수립의 적정성, 부패 위험요소의 발굴·모니터링·관리, 전담조직·인력·예산 현황 등
-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각 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를 관리·운영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③ 시장은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461호(2022. 1. 13. 타법개정)

- 평가 목적 및 방향
 -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담보⁶⁰⁾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를 기준으로 우수 자치단체 포상
- 평가대상
 - 지자체 241곳⁶¹⁾
- 운영체계 및 평가주체⁶²⁾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실
 - 수행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 평가주체: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자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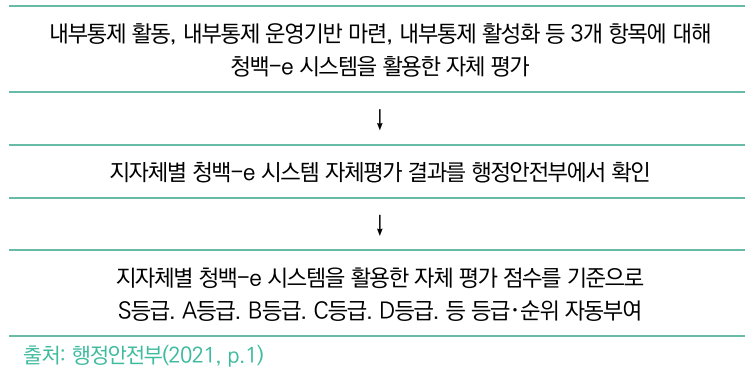
60) 안전행정부(2013a, 6월 24일 보도자료)

61) 국가법령정보센터-“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검색 결과 바탕으로 대상 지자체 추정하여 작성 (<https://law.go.kr/lisAdmRulAstSc.do?menuId=391&subMenuId=399&tabMenuId=453&query=%EC%9E%90%EC%9C%A8%EC%A0%81%20%EB%82%B4%EB%B6%80%ED%86%B5%EC%A0%9C#>, 검색일: 2024.6.13.)

62) 행정안전부(2021, pp.1-2)

- 평가 절차

[표 2-36]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절차



[표 2-37] 청백-e 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 내용	담당 주체
행정정보시스템의 기초자료	중앙부처/자치단체/카드사 등
↓	
기초자료 검증	청백-e 시스템
↓	
행정 오류 처리	담당자
↓	
행정 오류 검토	관리자
↓	
행정 오류 확인	감사자

출처: 행정안전부, (2017, 4월 3일 보도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항목

- 내부통제 활동(75점), 내부통제 운영기반 마련(25점), 내부통제 활성화(가점)⁶³⁾

- 평가 방법

-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항목별 평가 지표에 대한 자동 평가(평가를 위한 별도의 업무 불필요)

63) 행정안전부(2021, p.1)

- 평가 기간
 - 상시 평가 및 연 1회
- 평가결과 활용⁶⁴⁾
 - 해당 지자체장이 자체 평가 및 포상(우수공무원 표창,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상 가점 부여 등)
 - 행정안전부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시·도, 시군구) 포상
- 결과 공개 여부 및 방식⁶⁵⁾
 - 평가 결과는 비공개하여 외부에 보고·공표하지 않음
 - 청백-e 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 등급 및 시·도 내 순위 확인 가능하나 타 지자체의 등급과 순위는 확인 불가함
- 시사점
 -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평가 체계 운영하여 피평가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 일상적인 업무인 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점검'으로 전환⁶⁶⁾

64) 행정안전부(2021, p.2)

65) 행정안전부(2021, p.1)

66)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한국행정연구원) 자문회의(2024.5.31.)

□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추진 배경

- (2000년)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특성화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시상⁶⁷⁾

※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지자체의 도시정책 전 분야에 걸쳐서 매년 도시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도시 시상

- (2007년)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과 연계 추진하여 ‘살고 싶은 도시 대상’ 시상⁶⁸⁾

- (2011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의 예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참여 독려 및 도시기본계획 부문 평가 도입⁶⁹⁾

- (2014년) 법정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대한민국 도시대상’으로 명칭 개편,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정책 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⁷⁰⁾

※ (중앙정부) 도시평가를 통한 선진적 도시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지자체) 도시의 특성화 발전 및 도시 경쟁력 자가진단, 도시정책 수준 제고 (시민)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 및 삶의 질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도시정책 참여

-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용·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계획,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명제이므로 도시계획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⁷¹⁾

•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 근거하여 평가

67) 국토교통부·(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교연구원(2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 연구-지자체 설명회 자료. p.5.

68)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정기행사-대한민국 도시대상-연혁.
<https://kpa1959.or.kr/?menuno=279#none>(검색일: 2024.7.11.)

69)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정기행사-대한민국 도시대상-연혁.
<https://kpa1959.or.kr/?menuno=279#none>(검색일: 2024.7.11.)

70) 국토교통부·(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교연구원. (2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 연구-지자체 설명회 자료. p.5.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23호(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참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에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은 2014년에 제정되어 평가 목적, 대상 및 절차, 일반원칙, 평가방법 및 주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호(2023. 8. 8. 타법개정)

• 평가 목적 및 방향

- (목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⁷²⁾
- (방향) 균형발전·생활 SOC 등 변화된 정책여건에 부합하는 지표 개편, 지자체 응모부담 감소와 응모율 제고를 위한 우수한 정책사업 사례 발굴, 평가결과를 지자체의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에 연계·반영하도록 지원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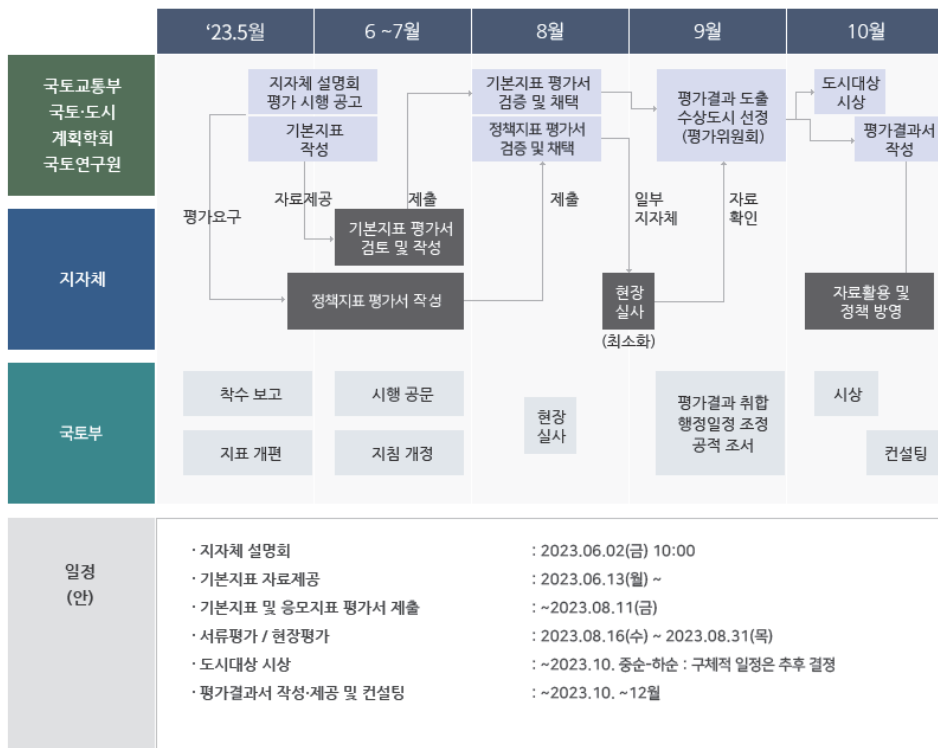
[그림 2-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방향

출처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정기행사-대한민국 도시대상-개요.
<https://kpa1959.or.kr/?menuno=279#none>(검색일: 2024.7.11)

7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645호(2023. 8.7. 일부개정) 제2조(평가의 목적)

73)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정기행사-대한민국 도시대상-개요.
<https://kpa1959.or.kr/?menuno=279#none>(검색일: 2024.7.11.)

- 평가 대상
 -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⁷⁴⁾
 - ※ 시(행정시 포함) 77개, 군 83개, 구(자치구) 69개
- 운영체계 및 평가주체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및 도시정책과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기본지표 평가),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응모지표 평가), 평가위원회(우수 정책 평가)
 - ※ 평가위원회 : 각 부문 평가위원장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시행하여 종합하여 선정
- 평가 절차



[그림 2-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절차

출처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정기행사-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방법.
<https://kpa1959.or.kr/?menuuno=279#none>(검색일: 2024.7.11.)

74) 국토교통부·(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연구원. (2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 연구-지자체 설명회 자료. p.8.

-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 기본지표와 정책지표(총 75개 지표), 우수정책평가는 각각 4개 부문으로 구성
- 기본지표, 정책지표, 우수정책 평가마다 평가방법 및 평가주체 상이

[표 2-3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항목 구분		기본지표(30%)	정책지표(70%)	구분	우수정책
도시 사회	방재안전			도시재생	약식서류(PT) 제출방식으로 지자체 응모 촉진
	사회복지				
	문화·체육				
도시 경제	인구	- 모든 지자체 대상	- 수상을 원하는 지자체 응모	인구 (감소 대응)	
	경제	- 정량지표 중심	- 정량+정성지표		
도시 환경	정주	- 국토교통부에서 대부분의 평가지표	- 지자체에서 평가자료 작성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환경	작성 및 제공	- 지자체의 노력 및 우수정책에 대한 평가 및 유도		
	교통	- 모든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			
자원 체계	토지이용관리			스마트 도시	
	조직역량 및 계획 집행				
	주민참여 활성화				

출처: 국토교통부·(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연구원. (2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 연구-지자체 설명회 자료. pp.15-16.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645호(2023. 8. 7. 일부개정) [별표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기간

- 연 1회(평가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표별로 평가의 주기를 다양화 할 수 있음)(「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3조)

- 평가결과 활용⁷⁵⁾

-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여(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국토교통부장관상 10, 특별상 6 내외, 우수정책 2개 내외. 상장과 트로피 수여)
- 우수 지자체에 국토교통부 관련 재정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75) 국토교통부·(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연구원. (2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 연구-지자체 설명회 자료. p.19.

- 담당 공무원에 해외시찰 기회 부여(코로나 시기 잠정 중지 후 다시 재도입 예정⁷⁶⁾)
- 결과 공개 여부 및 방식⁷⁷⁾
 - 평가 결과는 부분공개하고 도시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 개최
- 시사점
 - 법정 평가로 전환된 2014년에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이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제정되어 평가의 목적, 대상, 주체, 일반원칙, 방법 및 주기 등 평가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별표1에 평가지표와 별표2에 평가자료 수집 및 구축 방법 규정)
 -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이 다양함
 - 모든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서 기본지표를 운영하고, 수상을 원하는 지자체는 별도로 정책지표 관련 자료 제출 및 우수정책 관련 PT제출 등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평가를 위한 행정적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 고려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 내에 평가지원시스템 운영 통해 설명자료 제공, 평가자료 제출, Q&A 코너 운영 등 평가의 전반적 지원 업무 수행⁷⁸⁾

76) 전문가 자문회의(2024.11.08.)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77) 행정안전부(2021, p.1)

78) 국토교통부·(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연구원(2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 연구-지자체 설명회 자료. p.39.

2) 해외 유사제도

□ 일본 - 민간 지정확인심사기관 대상 입회검사

- 추진 배경⁷⁹⁾
 - 건축확인 업무를 공공 대신 민간이 수행하는 지정확인검사기관이 도도부현별로 132개 존재(2019년 기준)
 - ※ 건축확인 업무의 90%는 지정확인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이외 10%(공공건축물 등)는 특정행정청의 건축주사 담당

일본 지정확인검사기관

건축기준법 규정에 기초하여 건축확인·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국토교통성 장관(업무실시구역이 하나의 지방정비국 소관 내인 경우는 해당 지방정비국장) 또는 도도부현지사(업무실시구역이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 내인 경우)가 지정한 자

출처: 조재용(2021, p.3)

- 건축확인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되어 각종 법령에 의해 구속되기 때문에 위탁 업무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여 추진
- 근거 법령: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 제1항에 기초한 감독명령⁸⁰⁾ 및 동법 제77조의31에 근거한 보고·검사

일본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감독명령)

1. 국토교통대신 등은, 확인검사의 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그 지정에 관한 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해 확인검사의 업무에 관해 감시상 필요한 명령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국토교통대신 등은 정한의 규정에 의해 명령을 실시한 시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그 내용을 공지해야한다.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2019, p.1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80) 조재용(2021, p.2)

일본 「건축기준법」

제77조의31(보고·검사 등)

1. 국토교통대신 등은 확인검사의 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지정에 관한 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해 확인검사의 업무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확인검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특정행정청은, 그 지휘 감독 아래 건축주사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신청 및 확인(건축기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권한을 지닌 건축물의 확인검사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직원이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확인검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특정행정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의 결과, 해당 지정확인검사기관이, 확인검사업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또는 확인검사의 업무에 관해 엄중한 부적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그 사항을 국토교통대신 등에 보고해야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국토교통대신 등은 필요에 따라 제77조35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검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비명령 기타 장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평가 목적

- 국토교통성에서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에 의한 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입회 검사 실시

- 평가 대상: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모든 지정확인심사기관

※ 도쿄도의 경우 도쿄도 내 총 지정확인검사기관은 39개이고, 이 중 1년에 7개 기관에 대해 입회검사 실시함(2020년 기준)

※ 지방정비국이 지정한 지정확인검사기관은 해당 지방정비국이 관할함

- 운영체계 및 평가주체: 도도부현 관계공무원(건축주사)

-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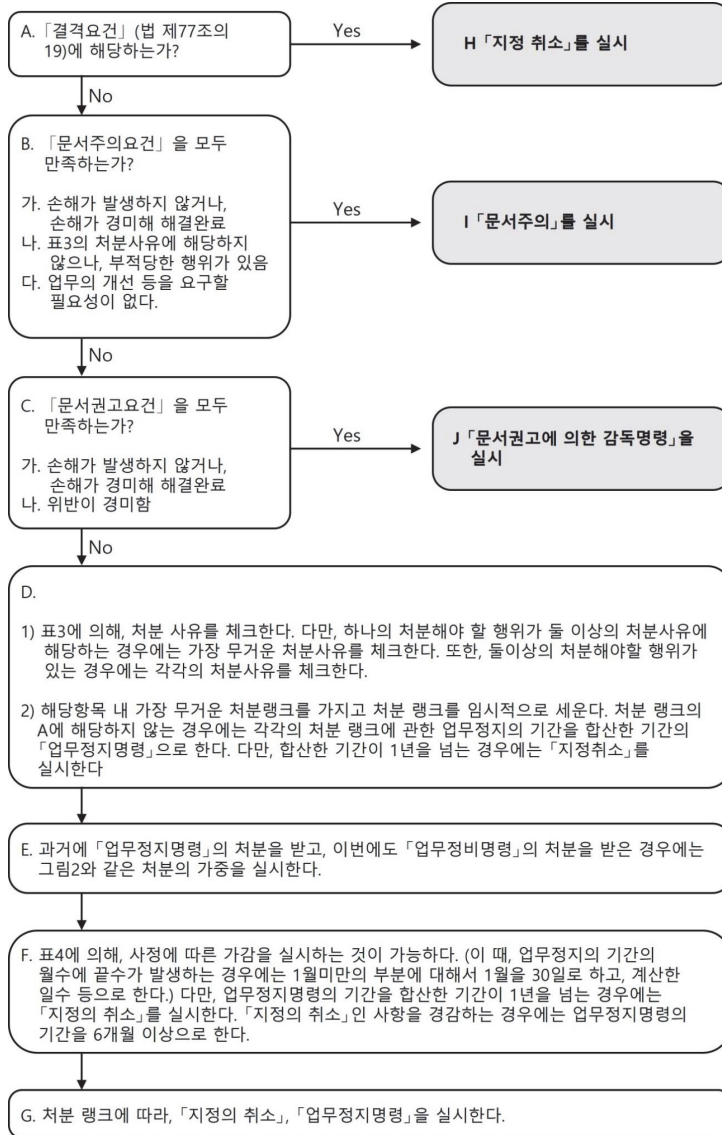
- 4~5명의 도도부현 관계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직접 검사 수행
- 확인검사원에 대한 인터뷰와 서면검사, 장부정비상황, 확인검사의 실시 방법, 심사한 건축계획의 법적합성, 「건축확인절차 등의 운용개선」의 내용에 따라 심사의 실시상황 등에 대해서 검사 실시
- 건축 구조에 관한 심사의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처분을 받은 건물 중 샘플을 추출하여 학식경험자 등에 의한 검정체계를 지닌 자가 설계도서에 근거한 재계산 등을 통해 구조계산의 타당성 검증

8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2019, p.1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검증 결과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특정행정청에 건축물의 안정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함

• 평가 항목

- 감독처분의 경중은 다음과 같은 순서도에 따라 판단함



[그림 2-3] 일본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감독처분 경중의 판단 흐름도

출처: 미야기현의 지정확인검사기관 검사 및 감시요령,

<https://www.pref.miyagi.jp/documents/14463/647128.pdf>(검색일: 2024.8.30.)

[표 2-39] 일본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입회검사의 처분사유 및 표준적인 징계내용

	처분사유	처분 랭크	표준적인 처분 내용
	6의2④ 적합하지 않는 사항의 통지서 등의 교부의무위반(※1)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6의2⑤ 특정행정청에의 보고의무위반(※1)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의2③ 완료검사 거래수령증의 교부 등 의무위반(※2)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의2④ 완료검사의 기한 내 이행의무위반(※2)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의2⑤ 검사수료증서의 교부의무 위반(※2)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의2⑥ 완료검사결과와 보고의무 위반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의4② 중간검사 거래수령증의 교부 등 의무위반(※3)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의4③ 중간검사 합격증의 교부 의무위반(※3)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의4⑥ 중간검사결과와 보고의무 위반(※3)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의6③ 임시 사용인정의 보고의무 위반(※2)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7의35 ②하나	18의3③ 확인심사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확인심사 (「77의 35② 5 기타③」에 관한 것은 제외)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7의21② 각 명칭 등의 변경의 신고의무 위반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7의22① 무인허가에 의한 업무구역의 증가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22② 업무구역의 감소의 신고의무 위반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7의24① 확인검사원이외의 자에 의한 확인검사의 실시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24② 확인검사원의 건축기준 적합판정자격자로부터의 선임의무 위반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24③ 확인검사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의무 위반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7의26 확인검사의무위반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28 지정구분 등의 게시의무 위반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7의29 장부의 견비 및 서류 보존의무위반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77의29의2 업무실적 등의 서류의 견비, 관람의무위반, 허위기입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①비밀유지의무 위반	B	업무정비명령 6개월
77의35 ②둘	77의27① ②법 제93조 제1항의 소방장 등의 동의 없는 건축확인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③법 제93조 제4항의 소방장 등에의 통지의무 위반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④법 제93조 제5항의 보건소장에게의 통지의무 위반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⑤기타 확인검사업무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확인심사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35 ②셋	77의24④ 임원 등 구성의 기준부적합에 따른 확인검사원 해임명령 위반	A	“지정” 취소
	77의27③ 확인검사업무규정의 변경명령 위반	A	“지정” 취소
	77의30① 감독명령위반	A	“지정” 취소
77의35 ②하나	77의20 확인검사원의 필요인원수 기준에의 부적합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35 ②넷	77의20 둘 확인검사업무의 실시계획에 관한 기준에의 부적합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20 셋 보유 재산의 평가액의 경리적 기조에 관한 기준에의 부적합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처분사유		처분 랭크	표준적인 처분 내용	
77의20 넷	기타 경리적 기초에 관한 기준에의 부적합	B	업무정비명령 6개월	
77의20 다섯	①제한업종을 검입하는 확인검사원의 선임	B	업무정비명령 6개월	
	②대표자 및 담당관계임원이 관계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설계, 공사감리, 시공 등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관한 확인검사의 실시	B	업무정비명령 6개월	
	③확인검사원 또는 보조원에 의한, 그 자가 관계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설계, 공사감리, 시공 등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관한 확인 검사에의 종사	B	업무정비명령 6개월	
	④업무의 공정한 실시에 지정을 줄 우려가 있는 주주 등의 구성	B	업무정비명령 6개월	
77의20 여섯	지정기관으로서의 제한업종의 실시 등	A	“지정” 취소	
77의20 일곱	확인검사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확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35 ②다섯	77의31①	①확인검사의 업무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②확인검사의 업무의 상황을 검사를 응하지 않거나, 방해 또는 기피했을 경우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③확인검사의 업무의 상황 등의 질문에 대해 회답하지 않거나, 허위로 회답했을 경우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31②	①확인검사의 업무의 상황 등의 검사를 응하지 않거나, 방해 또는 기피했을 경우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②확인검사의 업무의 상황 등의 질문에 대해 회답하지 않거나, 허위로 회답했을 경우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35②본문	업무정지명령 위반	A	“지정” 취소
	기타	①법 제6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한 확인수수료증의 효력상실 또는 법 제7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한 임시사용인정 효력상실	A ~ D	업무정비명령 또는 “지정” 취소
		②법 제6조의 2, 법 제7조의 6의 규정에 근거한 특정행정청에의 보고 또는 법 제7조의 2 또는 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한 특정 행정청에의 보고 또는 통지 내용의 오기	D	업무정비명령 1개월
		③법 제6조의 2 제1항의 확인 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또는 7조의 4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절한 판단	A ~ D	업무정비명령 또는 “지정” 취소
		④기타 확인검사의 업무에 관한 현저히 부적당한 행위	C	업무정비명령 3개월
77의35 ②여섯	77의19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지정”을 받은 경우	A	“지정” 취소

출처: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처분 등의 기준, <https://www.mlit.go.jp/common/001323818.pdf>(검색일: 2024.8.30.)

(주석 1) 「근거조항」 및 「확인조항」란에 대해서, 예를 들면, 「77의35②하나」는 「제77조의 35 제2항 제1호」를 의미한다.

(주석 2) 「처분등 사항의 내용」란의 (※1, ※2, ※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 제1항, 제87조의 2 또는 제8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2): 법 제87조의 2 또는 제8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3): 법 제87조의 2 또는 제88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평가결과 활용

- 해당 지정확인검사기관 또는 확인검사에 업무과실 정도에 따라 상이한 기간의 업무정지, 업무금지 처분
- 적합하지 않은 업무 확인시 이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및 국토교통성 장관에 추진 상황 분기별 보고 요구⁸²⁾
- 감독명령 처분을 받은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업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성에 보고하도록 하고, 명령일로부터 1년간 개선계획 실시 상황에 대해 분기별 보고 및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표 2-40] 일본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입회검사 실제 사례 및 처분 내용

대상	지정확인검사기관명 (연도)	검사 내용	처분 내용
지정 확인 인 검 사 기 관	주식회사 이하우스 건축센터(관동지방 정비 국장 지정) (2010)	확인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확인검사원 이 건축기준법 제58조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계획을 간과하여 확인완료증 교부	감독명령
	규슈(九州)주택보증 주식회사(규슈지방정 비국장 지정) (2011)	확인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확인검사원 이 건축기준법 제48조 제3항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계획을 간과하여 확인완료증 교부	감독명령
확 인 검 사 원	동일본주택평가센터 (국토교통성장관 지정 제8호) (2022)	도쿄도 내 1건의 건축물 계획이 확인심사 업무 담당 확인검사원의 과실로 건축기준법 제40조에 기초한 도쿄도 건축안전 조례 제7조의3 제2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간과하고 확인증 교부	- 해당 확인검사원 업무금지 1개월 처분 - 해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 개선 및 심사 체제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계획서 제출 - 이후 1년 동안 해당 기관 내 감시위원회 설치, 진행상황 확인, 분기마다 국토교통성장관에 보고
	하우스플러스확인검사주식회사 (국토교통성장관 지정 제9호) (2023)	사이타마 현 내 3건의 건축물 계획 확인 과정에서 확인검사원의 과실에 의해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간과하고 확인증 교부	- 해당 확인검사원 쿠시하라 씨(등록번호 제 3000007호)에게 업무금지 10일 처분 부여 - 해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 개선 및 심사 체제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계획서 제출 - 이후 1년 동안 해당 기관 내 감시위원회 설치, 진행상황 확인, 분기마다 국토교통성장관에 보고

출처: 조재용(2022, p.3), 조재용(2023, p.4), 조재용(2024, pp.2-3), 전문가 원고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82) 조재용(2021, p.3)

- 결과 공개 여부 및 방식
 - 국토교통성 보도자료에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이름, 업무과실 내용, 확인 검사원 이름, 처분 내용 등 공개
- 시사점
 - 정해진 시기 없이 불시에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 방문하여 입회검사 실시 하여 피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한 업무 불필요
 - 감독에 따른 처분 내용이 지정확인검사기관 및 해당 업무 처리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업무금지 등으로 강력함
 - 업무과실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개선계획서 제출 및 감시위원회에 추진상황 심의, 분기별로 국토교통성 장관에 보고하는 등 환류체계 설정

□ 영국 - 건축허가 통계자료 PS1 and PS2 온라인 게시

• 추진 배경

- 영국 중앙정부는 지방 건축허가당국이 세운 목표에 따라 성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시스템의 개혁과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 결정의 예측,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마련
-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의 건축행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축허가당국 모니터링 보고서(Authorities Monitoring Reports, AMRs) 발간이고 두 번째는 건축허가 통계자료(PS1 and PS2) 온라인 게시임⁸³⁾
- 건축허가당국 모니터링 보고서(AMRs)는 장기적인 계획 효과성과 정책 결과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 제공, 건축허가 통계자료(PS1 및 PS2)는 운영 관련 데이터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 또는 개입에 활용
- 건축허가 통계자료(PS1 및 PS2)이 우리나라 건축행정평가와 유사성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주된 내용으로 다룸

• 근거 법령

- 성장 및 인프라법 2013(Growth and Infrastructure Act 2013): 영국 정부가 불화에서 회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기업투자, 새로운 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2013년 만든 법⁸⁴⁾으로서 건축허가당국의 건축행정의 속도와 품질과 같은 성과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⁸⁵⁾으로, 건축허가 통계자료 PS1 and PS2 활용

• 평가 목적 및 방향⁸⁶⁾

8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istrict-planning-matters-return-ps1-and-ps2/ps1-and-ps2-district-planning-matters-return-guidance-notes> (검색일: 2024.7.17.)

84) https://www.designingbuildings.co.uk/wiki/Growth_and_Infrastructure_Act_2013#:~:text=The%20Growth%20and%20Infrastructure%20Act,new%20infrastructure%20and%20job%20creation (검색일: 2024.7.17.)

85) Growth and Infrastructure Act 2013, 1 Option to make planning application directly to Secretary of State, p.1.

8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34fc248d3bf7f6181ac943a/Improving_planning_performance_2022_WEB.pdf(검색일:2024.7.17), Improving planning performance, Criteria for designation (updated 2022), 7.-14. p.5-6.

- 건축허가 행정의 속도 측정 : 각 건축허가당국이 법정 건축허가 처리기간 또는 동의된 건축허가 연장기간 안에 처리한 허가결정 비율 파악
- 건축허가 품질 측정 : 각 건축허가당국이 반려한 건축허가건이 항소로 반려 기간된 비율 파악
- 건축허가당국 징계 : 건축허가 통계자료 PS1 and PS2를 바탕으로 지방 건축허가당국의 허가권을 회수하는 등 징계의 근거
- 평가대상 : 지방 건축허가당국(Local Planning Authorities, LPAs)
 - 도시계획법 1990(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과 도시계획(개발관리절차)(영국) 명령 2015(Town and Country Planning (Development Management Procedure) (England) Order 2015)을 통해 영국 중앙정부로부터 건축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건축허가 신청 관리 및 건축허가 결정⁸⁷⁾
- 평가주체: 중앙정부-레벨업, 주택 및 커뮤니티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DLUHC)
 - 2021년 주택,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MHCLG)를 개각과 함께 바꾼 이름으로 영국 중앙정부로서 건축행정 주관⁸⁸⁾
-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 PS1는 건축허가 접수 통계로서, 특정기간 동안 접수, 결정, 승인 또는 거부된 신청서의 수에 대한 데이터를 분기별로 수집 및 온라인 게시
 - PS2는 건축허가 결정 통계로서, 건축허가 관련 승인 및 거부 데이터를 분기별로 수집 및 온라인 게시
- 평가 항목
 - 건축허가 결정속도와 품질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 건축허가당국은 저성과 당국으로 지정되어 관리대상에 포함
 - 건축허가 결정속도 기준은 각 지방 건축허가당국이 법정 건축허가 처리기

87)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58 Granting of planning permission: general, p.28.

Town and Country Planning (Development Management Procedure) (England) Order 2015, Part 3-6, p.7-27.

88) https://www.designingbuildings.co.uk/wiki/Department_for_Levelling_Up,_Housing_and_Communities(검색일: 2024.7.17)

간 또는 동의된 건축허가 연장기간 안에 처리한 허가결정 비율로 대형개발계획의 경우 60%, 일반개발계획은 70% 이하

- 건축허가 품질 기준은 각 지방 건축허가당국이 반려한 건축허가건이 항소로 반려 기각된 비율로 모든 개발계획의 10% 이상

Table 1 – Designation thresholds and assessment period overview

Measure and type of Application	Threshold and assessment period October 2020 to September 2022	Threshold and assessment period October 2021 to September 2023	Live Table
Speed of major Development (District and County)	60%	60%	District - P151a County - P151b
Speed of non-major Development	70%	70%	P153

Measure and type of Application	Threshold and assessment period April 2020 to March 2022	Threshold and assessment period April 2021 to March 2023	Live Table
Quality of major Development (District and County)	10%	10%	District - P152a County - P152b
Quality of non-major Development	10%	10%	P154

[그림 2-4] 영국 지방 건축허가당국 대상 저성과 당국 지정 기준표

출처: Improving planning performance, Criteria for designation (updated 2022),
Table 1 – Designation thresholds and assessment period overview, p.6.

- 평가결과 활용
 - 징계 사례 : 콜리와 페어함 (Chorley and Fareham) 건축허가당국이 건축 허가 결정 항의 신청 관련하여 저조한 성적을 보여 섹션 62A⁸⁹⁾ 당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에서 대형 개발계획 관련 건축허가를 직접 접수하고 향후 건축행정 성과지표 개선 제출 요청, 그러지 못할 경우 추가 징계⁹⁰⁾
 - 인센티브 사례: 증가하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로 인해 지방 건축허가당국은 자체 모니터링과 분명한 품질 개선 증거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기술조달기금(Planning Skills Delivery Fund, PSDF)에 신청하여 £100,000까지 받을 수 있으나⁹¹⁾, 행정성과가 저조할 시 삭감

89)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62A When application may be made directly to Secretary of State, p.62-63.

90) <https://lichfields.uk/blog/2023/december/21/all-stick-and-no-carrot-new-planning-performance-measures-and-a-crackdown-on-the-extension-of-time>(검색일:2024.7.17)

Planning Skills Delivery Fund - local authority awards				
Authority name	Award amount backlog 2023/24	Award amount skills 2023/24	Award amount skills 2024/25	Total award amount
Amber Valley Borough Council	£100,000			£100,000
Ashford Borough Council (joint with Thanet District Council; Dover District Council; Canterbury City Council; Folkestone & Hythe District Council)		£250,000		£250,000
Babergh District Council (joint with Mid Suffolk District Council)	£50,000			£50,000
Bassetlaw District Council	£75,000			£75,000
Bedford Borough Council	£80,000		£20,000	£100,000
Blackburn with Darwen Borough Council		£100,000		£100,000
Bolton Council	£73,526			£73,526
Bournemouth Christchurch Poole Council	£100,000			£100,000
Braintree District Council			£65,000	£65,000
Brighton & Hove City Council		£93,391		£93,391
Bristol City Council	£100,000			£100,000
Bromsgrove District Council (joint with Redditch Borough Council)	£100,000	£80,000		£180,000
Calderdale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75,000		£25,000	£100,000
Castle Point Borough Council	£30,000		£70,000	£100,000
Central Bedfordshire Council			£100,000	£100,000
Charnwood Borough Council	£67,500			£67,500
Chelmsford City Council	£100,000			£100,000
Cherwell District Council	£50,000			£50,000
Cheshire East Council	£100,000			£100,000
Cheshire West and Chester Council	£99,349			£99,349
Chichester District Council	£58,333			£58,333
City of Doncaster Council	£100,000			£100,000
City of Wolverhampton Council	£44,309			£44,309
Colchester City Council			£100,000	£100,000
Cornwall Council	£98,000			£98,000
Council of the Isles of Scilly	£35,000	£50,000		£85,000
Coventry City Council	£70,000			£70,000
Crawley Borough Council	£58,333			£58,333
Dacorum Borough Council (joint with Three Rivers District Council for skills)	£34,912	£28,500		£63,412
Derby City Council	£75,000			£75,000
Derbyshire County Council	£100,000			£100,000
Durham County Council	£100,000			£100,000
East Devon District Council	£91,248			£91,248
East Hampshire District Council			£25,000	£25,000
East Herts District Council			£100,000	£100,000
Epping Forest District Council	£36,000			£36,000

[그림 2-5] 건축허가 기술조달기금(PSDF-Planning Skills Delivery Fund) 수혜 당국 리스트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lanning-skills-delivery-fund-year-1-successful-local-authorities>(검색일:2024.7.17)

- 결과 공개 여부 및 방식: PS1 and PS2 자료는 상시 온라인 게시
- 시사점
 - 건축행정 중 특히 건축허가 관련 통계를 통해 지방 건축허가당국 평가
 - 건축허가 관련 성과에 따른 징계로서 지방 건축허가당국의 대형 개발계획 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담당
 - 건축허가 관련 예산에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도 보유

91) <https://www.gov.uk/guidance/planning-skills-delivery-fund-year-1-guidance-for-applicants>(검색일: 2024.07.17)

□ 미국 - 보험서비스국(ISO)의 국가빌딩코드평가보고서(National Building Code Assessment Report) 발간

• 추진 배경

- 지속적인 자연재해(폭풍우, 지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해왔는데,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의 인구 밀집도는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빌딩코드가 엄격하게 시행되었다면 자연재해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⁹²⁾

※ 일례로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Hurricane Andrew)로 인해 230억 달러 이상의 재해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55억 달러 이상의 보험 손실이 발생⁹³⁾

- 이에, Insurance Institute for Property Loss Reduction (IIPLR, 현 Insurance Institute for Business & Home Safety, 이하 IBH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 (이하 ICBO), Southern Building Code Congress International (이하 SBCCI), Building Officials and Code Administrators International (이하 BOCA), 그리고 1,500명 이상의 빌딩코드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빌딩코드 효율성등급표(Building Code Effectiveness Grading Schedule, BCEGS) 프로그램을 개발함⁹⁴⁾

• 근거 법령

-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민간기준/빌딩코드(model building code)를 만드는 세 기관(ICBO, SBCCI, BOCA, 1994년 이후 ICC로 통합)의 전문 지식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⁹⁵⁾

92) Verisk Homepage-BCEGS-What? Why? And What Do I Do? "2. Why is BCEGS needed?". <https://www.isomitigation.com/bcegs/what-why-when-and-what-do-i-do/> (검색일: 2024.6.20.)

93) Verisk Homepage-BCEGS-What? Why? And What Do I Do? "2. Why is BCEGS needed?", <https://www.isomitigation.com/bcegs/what-why-when-and-what-do-i-do/> (검색일: 2024.6.20.), ISO(2019, p.8.)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94) ISO(2015, p.6.), ISO(2019, p.10.). BCEGS 개발의 협력 대상이었던 ICBO, SBCCI, BOCA는 1994년 국제코드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이하 ICC)를 설립한다. ICC는 국제 빌딩코드(international building codes) 또는 I-Codes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다음을 참조: ISO(2019, p.34)

95) ISO(2015, p.6.), ISO Mitigation (now Verisk) Homepage-bcegs-What? Why? And What Do I Do? "3. Who developed BCEGS? Where did it come from?". <https://www.isomitigation.com/BCEGS/what-why-when-and-what-do-i-do/> (검색일: 2024.9.6.)

- 평가 목적 및 방향
 - 빌딩코드효율성등급표(BCEGS) 프로그램의 목적은 빌딩코드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더 안전한 건물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함⁹⁶⁾
 - 지진, 홍수, 허리케인, 폭풍우 등 보다 광범위한 자연재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
- 평가 대상
 - 미국 내 25,000개 이상의 건축 부서에서 빌딩코드효율성등급표(BCEG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의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건축물)⁹⁷⁾
- 운영체계 및 평가주체
 - 보험서비스국(ISO)의 빌딩코드효율성등급표(BCEGS) 팀이 각 평가 대상이 시행 중인 빌딩코드를 평가하고 커뮤니티에 등급을 책정⁹⁸⁾
- 평가 절차
 - 일반적인 평가 주기는 전국적으로 4~5년마다 또는 부서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재평가 시행(플로리다주의 경우 3년마다 재평가)⁹⁹⁾
 - 주(state) 내 지자체 건축 공무원들이 BCEGS 설문조사 작성(BCEGS 질문지 및 직원기록지) 및 제출하면 현장 담당자가 평가 대상지 커뮤니티 현장에 방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 공무원에 설명 및 증빙 서류 요구¹⁰⁰⁾

96) ISO Mitigation (now Verisk) Homepage-bcegs-What? Why? And What Do I Do? "2. Why is BCEGS needed?". <https://www.isomitigation.com/BCEGS/what-why-when-and-what-do-i-do/> (검색일: 2024.9.6.)

97) ISO(2019, p.2); Verisk Homepage-Newsroom "ISO Releases National Building Code Assessment Report". <https://www.verisk.com/company/newsroom/iso-releases-national-building-code-assessment-report/> (검색일: 2024.9.6.)

98) Verisk Homepage-Newsroom "ISO Releases National Building Code Assessment Report". <https://www.verisk.com/company/newsroom/iso-releases-national-building-code-assessment-report/> (검색일: 2024.9.6.)

99) ISO(2019, p.44.). 플로리다주가 타 주에 비해 짧은 주기로 평가받는 이유로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지역이고 플로리다주의 빌딩코드가 3년 주기로 개정되기 때문으로 추정함

100) ISO Mitigation (now Verisk) Homepage-BCEGS-BCEGS Classifications and Survey Process "What is the evaluation process?". <https://www.isomitigation.com/bcegs/bcegs-classifications-and-survey-process/> (검색일: 2024.9.6.)

- 평가 항목
 - 관할권(jurisdiction) 차원에서 빌딩코드의 집행 노력을 코드 행정/집행(code administration), 계획 검토(plan review), 현장 점검(field inspection)으로 구분¹⁰¹⁾

[표 2-41] BCEGS 주요 평가 항목

빌딩코드 행정/집행 (Administration of Building Codes)	빌딩코드의 채택(Adopted Building Code), 하위코드의 채택(Adopted Sub-Codes), 주 및 지역 코드의 개정(State and Local Code Amendments), 코드 채택의 방법(Method of Code Adoption), 관할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Natural Hazards Impacting the Jurisdiction), 직원 훈련 및 교육(Staff Training and Education), 직원의 자격증/인증(Certification of Staff), 건축 공무원의 자격(Qualification of the Building Official), 설계 전문가의 활용(Utilization of Design Professionals), 조닝과 토지 이용 조항(Zoning and Land-Use Provisions), 도급업자 라이선싱 프로그램(Contractor Licensing Programs), 대중 인식 프로그램(Public Awareness Programs), 이의 제기 절차(Appeals Process), 관리 정책 및 절차(Administrative Policies and Procedures), 품질 보증 프로그램(Quality Assurance Programs)
계획 검토 (Plan Review)	계획 검토 인력(Plan Review Staffing), 계획 검토 직원의 경력(Experience of Plan Review Personnel), 계획 검토의 세부 사항(Detail of Plan Review), 계획 검토 활동의 관리(Management of Plan Review Activity), 관할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Natural Hazards Impacting the Jurisdiction), 직원 훈련 및 점검(Staff Training and Education), 직원의 자격증/인증(Certification of Staff), 건축 공무원의 자격(Qualification of the Building Official), 설계 전문가의 활용(Utilization of Design Professionals)
현장 점검 (Field Inspection)	점검 인력(Inspection Staffing), 점검 직원의 경력(Experience of Inspection Personnel), 점검 활동 관리(Management of Inspection Activity), 점검 체크리스트(Inspection Checklists), 특별 점검(Special Inspections), 자연재해 완화를 위한 점검(Inspections for Natural Hazard Mitigation), 최종 점검(Final Inspections), 점유 증명서(Certificates of Occupancy)

출처: ISO(2019, p.45)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 평가 병행
 - 코드 관리(code administration), 계획 검토(plan review), 현장 점검(field inspection) 각 세부 항목에 대해 상업용 건물 및 1-2가구 주거용 주택 모두에 대해 0~100점 척도로 점수 계산한 후 각 커뮤니티(communitiy/jurisdiction)의 점수를 1~10등급으로 변환¹⁰²⁾

101) ISO(2019, p.44)

[표 2-42] BCEGS 평가 점수 범위 및 등급별 설명

등급 (Classification)	점수 범위 (Score Point Range)	등급별 설명
1	93.00-100.00	평가대상 중 약 18%만이 1~3등급으로 분류됨. 이 등급을 부여받은 빌딩코드 집행 부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빌딩코드의 기능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신 민간기준/빌딩코드를 시행함. 채택된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계획 검토 및 현장 평가에 넉넉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인증된 충분한 인원의 직원을 보유함.
2	85.00-92.99	대부분의 커뮤니티(67%)는 4~6등급으로 분류됨. 이 등급에 해당하는 빌딩코드 집행 부서는 현장평가 인력 배치, 계획 검토 인력 배치, 훈련, 빌딩코드의 채택, 빌딩코드의 개정 등과 같은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했을 수 있음.
3	77.00-84.99	평가 대상 중 약 15%는 7~10등급으로 분류됨. 이 등급을 부여받은 빌딩코드 집행 부서는 여러 평가 기준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했거나 주요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큼.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서는 7년 이상 된 빌딩코드를 지역 관할구역에서 개정된 버전을 시행하고 있음.
4	65.00-76.99	
5	56.00-64.99	
6	48.00-55.99	
7	39.00-47.99	
8	25.00-38.99	
9	10.00-24.99	
10	0.00-9.99	

출처: ISO(2019, p.46), ISO(2008, p.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결과 활용
 - 커뮤니티(communitiy/jurisdiction) 차원에서의 분류에 집중함으로써 상
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분된 분석 제시¹⁰³⁾
 - 상위 등급을 부여받는 커뮤니티는 보험 선택 범위, 보험료 할인 혜택과 같
은 타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
 - 좋은 등급을 부여받은 커뮤니티는 FEMA로부터 재해완화보조금(Hazard
Mitigation Grants)을 받을 자격이 상대적으로 더 주어짐¹⁰⁴⁾
 - FEMA가 3,000만 달러의 완화보조금 배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간 우선순위를 정할 때 BCEGS 등급을 주요 선정 기준 중 하나로 고려¹⁰⁵⁾
 - 사회적·대중적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인식 확산 도모¹⁰⁶⁾
- 결과 공개 여부 및 방식
 - 온라인으로 보고서 발간(2015, 2019년도 자료 확인)

102) ISO(2019,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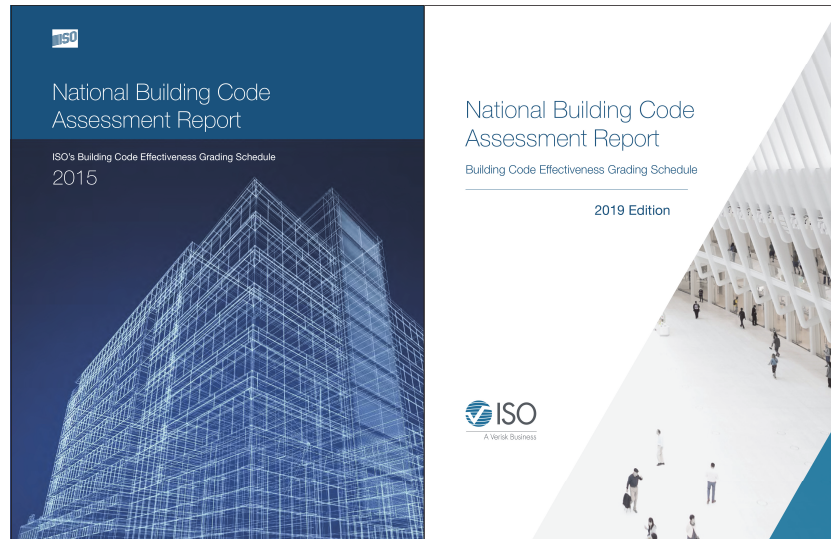
103) ISO(2019, p.45)

104) ISO(2019, p.46)

105) ISO(2015, p.8). 또한, 재해완화보조금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의 일환으로서, 연방재난지역(federal disaster areas)으로 선포된 커뮤니티는 각 커뮤니티에 부여된 지원금의 최대 5%를 (BCEGS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완화활동비용(costs of mitigation activities)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106) ISO(2019, p.45)

- 시사점
 - 민간기관이 관할권 및 주 단위로 빌딩코드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 확인하는 조사 및 평가 사례
 - 민간기관과 정부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평가 방식 설립, 정부기관(FEMA)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 평가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



[그림 2-6] 국가빌딩평가보고서의 2015년(좌) 및 2019년(우) 표지

출처: ISO(2015, Cover page); ISO(2019, Cover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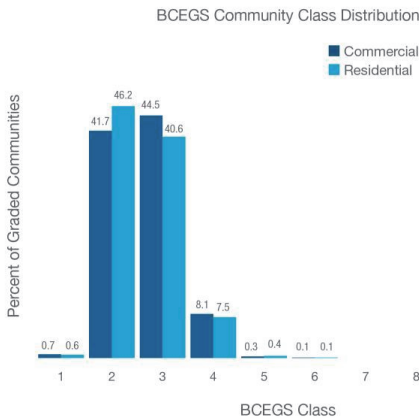
BCEGS Class 1 Jurisdiction: Exemplary Performance					
Commercial				Residential	
Jurisdiction	State	Jurisdiction	State	Jurisdiction	State
Charlotte Mecklenburg County	NC	St. Louis County	MO	Beverly Hills	CA
Beverly Hills	CA	Centre Region Code Administration	PA	Newport Beach	CA
Newport Beach	CA	Palo Alto	CA	Milpitas	CA
Milpitas	CA	Orange County	CA	Palo Alto	CA
Clark County	NV	San Antonio	TX		
Roanoke	VA	Fairfax County	VA		

[그림 2-7] 2019년판 국가빌딩평가보고서에서 1등급 관할구역 목록

출처: ISO(2019, p.47)

- 보고서에 각 주(state)별 1쪽 분량으로 실리는 BCEGS 평가 결과는 주별 종합평가 등급, 주 내 커뮤니티 평가 등급의 분포도, 그리고 주(state)별 가장 취약한 자연재해 등의 정보 기록

California



BCEGS State Averages

	Score	Class
Commercial	80	3
Residential	81	3

The BCEGS 1-10 classification is based on a 1-to-100-point score. For complete details on the scoring process, see pages 44-47, "Aiding the Resilience Revolution: ISO's BCEGS® Program and How It Works."

By the Numbers*

119,673 (national average: 31,618)	Average population served by building code enforcement departments in the state
\$45.90 (national average: \$22.62)	Average department expenditure per capita of population served
\$0.22 (national average: \$0.44)	Average department employee training expenditure per capita of population served
0.95% (national average: 2.48%)	Average training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overall department expenditure

*Community data from BCEGS database

Top Three Modeled Natural Hazards**

Most Likely	Most Costly in a Typical Year	Most Extreme

**Source: AIR Worldwide modeled loss cost data

Building Code Adoption History (as of 10/1/18)

ICC Code Release	Commercial Date Adopted	Residential Date Adopted
2009	1/1/11	1/1/11
2012	1/1/14	1/1/14
2015	1/1/17	1/1/17
2018	Not adopted	Not adopted

[그림 2-8] 2019년판 국가빌딩평가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평가 결과지

출처: ISO(2019, p.56)

4. 소결: 현행 평가 제도의 특성 및 시사점

1) 건축행정의 정의와 건축행정평가의 위상

□ “건축행정” 정의 불명확

-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행정”에 대한 정의 부재
 - 다만, 법령에 규정된 절차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관련 업무는 추정할 수 있으며 주로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축행정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인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에는 “건축허가 등의 건축민원 처리실태”,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행정평가의 평가항목이 설정됨

□ 건축행정평가의 위상

- 정부업무평가 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건축행정평가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별도평가로 운영 중

2)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로서 건축행정평가 발전방향

□ 개별평가의 발전방향 검토 결과

- 개별평가 운영 현황
 - 정부업무평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개별평가를 지양하고 합동평가로의 적극적인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23개 중앙부처에서 62개 개별평가를 운영 중
- 국무조정실에서 설정한 개별평가 발전 방향
 - 국민체감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 필요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우수기관 독려 및 실질적 정책개선 도모 필요

-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필요
- 평가 이후 결과의 공개 및 보고, 예산·인사 등에 연계·반영,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결과에 따른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시사점

- 개별평가를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적극적으로 통합이 필요함
- 개별평가의 지표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동평가 지표수를 확대 중
- 정부업무평가 중 상호간 유사·중복 평가가 있을 시에 통·폐합하도록 권고 중임

3)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 운영체계

- (효율적 평가 주기) 미국 사례의 경우, 매년 평가를 하기보다 3~5년 주기로 지자체별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재평가를 시행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 (정기적 지표 개발)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정기적으로(3년 주기)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평가 주체 및 평가위원회

- (전문 평가단 운영)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에 지표개발추진단 및 합동평가단 등 전문 평가단을 운영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경우, 국토연구원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전문 평가기관으로 두어 평가의 전문성을 높임
- (민간-공공의 평가) 일본 사례의 경우, 건축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국토교통성이 평가하고, 미국 사례의 경우, 민간기관인 보험 서비스국이 미국 각 주에 대한 평가를 함

□ 평가 항목 및 지표

- (기본지표와 정책지표 구분 운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경우, 분야별로 기본지표와 정책지표가 각각 있어 기본적인 실적과 추가적인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유사·중복 지표)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건축행정평가와 유사·중복되는 지표가 있어 통·폐합 가능성이 있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 안전 관련)
- (단순한 평가항목) 일본 및 영국 사례의 경우, 건축행정 중 단순히 건축 허가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여 평가함

□ 평가 방법

- (자체·상시 평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평가로 (피)평가기관의 평가 업무를 줄임
- (정량·정성·현장평가) 대부분의 평가는 정량·정성 평가를 하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및 일본·미국의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제출한 서류와의 대조를 시행함

□ 평가 결과 활용

- (우수 지자체 포상) 모든 국내 사례의 경우, 우수 지자체에 대해 표창, 인사 상 가점 부여, 재정인센티브 지급 등 적극적인 포상 제도 운영함. 특히 영국의 경우, 건축허가 관련 업무 증가 시 건축허가기술조달기금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 수여가 가능함. 미국의 상위 등급 커뮤니티는 보험 선택 범위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타 평가에서 우위 차지 가능함
- (하위기관 컨설팅)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행정컨설팅을 실시함
- (환류체계 운영) 일본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업무수행자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업무과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선계획서 제출 요청·검토 등의 환류체계를 운영함
- (건축허가 업무 자격 정지) 일본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업무수행자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업무정지·금지, 감독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영국의 경우도, 건축허가 관련 업무 수행이 미진한 지방건축허가당국 대신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 건축허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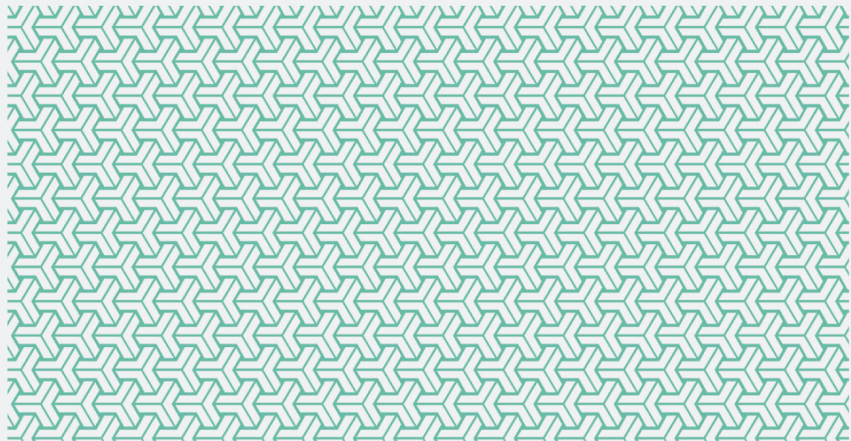
[표 2-43]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 사례의 주요 시사점 종합표

구분	평가명	건축행정평가에 대한 시사점	
국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체계	- 3년 주기로 지표 개발(지표개발추진단 운영)
		평가 주체	-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에 지표개발추진단 및 합동평가단 등 전문 평가단 운영 - 시도별 우수사례에 대해 국민평가단의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 합동평가위원회 :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 등 평가 관련 사항 심의·의결 - 지표개발추진단 : 평가지표 개발 심의 - 합동평가단 : 정량평가 최종 검증, 정성평가(집합검증) 수행
		평가지표	- 건축행정평가와 유사·중복 지표 운영(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율 수준, 사망사고 수준 및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수준)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및 환류체계 운영 -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유공자 포상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평가 방법	- 자체 시스템을 통한 상시 평가로 (피)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부재 - 평가 성격에 따라 지자체 개별평가에서 점검 체계로 전환
		평가 결과 활용	- 해당 지자체장이 자체 평가·포상(우수공무원 표창,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상 가점 부여) - 행정안전부에서 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포상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근거 법령	- 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
		평가 항목	- 평가 항목을 기본지표와 정책(응모)지표로(수상을 원하는 경우)로 구분·운영하여 지자체의 평가를 위한 행정적 부담 축소 - 분야별로 기본지표와 정책(응모)지표가 각각 있어, 실적과 이행노력을 구분하여 파악 가능
		평가 주체	- 전문 평가기관 운영(국토연구원-기본지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정책(응모)지표)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 내 평가지원시스템 이용한 전반적 평가 지원 업무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 각 부문별 평가위원장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우수 정책 평가(서면, 발표, 현장 평가)
		평가 결과 활용	- 우수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포상, 해외시찰 기회 부여(코로나 이전)
해외	일본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입회검사	평가 주체	- 건축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의 평가
		평가 결과 활용	- 입회검사 결과를 국토교통성 보도자료에 지정확인검사기관명, 업무과실 내용, 확인검사원 이름, 처분 내용 등으로 공개 - 적합하지 않은 업무수행자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업무정지 및 업무금지, 감독명령 등 강력한 처분 시행 - 업무과실 재발 방지 위해 업무개선계획서 제출 등 환류체계 운영

구분	평가명	건축행정평가에 대한 시사점	
	영국 건축허가 통계자료(PS1· PS2) 발간	평가 항목	- 건축행정 관련 업무 중 특히 건축허가 관련 통계만으로 평가
		평가 결과 활용	- 건축허가 관련 업무 수행이 미진한 지방 건축허가당국 대신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 허가 업무 직접 수행 - 건축허가 관련 업무 증가시 건축허가기술조달기금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 수여 가능
	미국 민간기관(ISO)의 국가빌딩코드평가 보고서 (BCEGS) 발간	운영체계	- 3~5년 주기로 지자체별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재평가 시행
		평가 주체	- 민간기관인 보험서비스국(ISO)의 빌딩코드효율성등급표 (BCEGS) 팀
		평가 방법	- 각 주(state)별로 빌딩코드집행, 계획 검토 등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평가 결과 활용	- 상위 등급 커뮤니티는 보험 선택 범위, 보험료 할인 혜택 등 타 평가에서 우위 차지 - 정부기관(연방재난관리청, FEMA)에서 재해완화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출처: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검색일: 2024.6.10.),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원고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제3장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1. 분석 개요
2. 평가운영체계의 변천과 현황 분석
3. 평가지표의 변천과 현황 분석
4. 건축행정평가 결과 분석
5. 소결

1. 분석 개요

□ 개요

- (목적)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및 결과 분석 등을 통한 제도의 한계 도출
- (방법) ① 건축행정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변화 분석
② 건축행정평가 결과 분석
③ 전문가 및 건축행정평가 관계자 의견 청취
- (결과 활용) 건축행정평가 개선사항 발굴

1) 건축행정평가 운영 분석

□ 분석 대상

- 건축행정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 (~2015년)
 - 건축행정평가(前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운영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관련 선행연구 내 관련 자료 분석
- 건축행정평가 운영체계 및 평가지표 등 분석 (2016년 이후)
 - ※ 평가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득 가능한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함
- 건축행정평가 결과 분석 (2020년 이후)
 - ※ 평가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득·확인 가능한 평가 결과자료 (raw)를 기준으로 함

[표 3-1] 분석의 틀

분석대상(명)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건축행정 건설화 점검	건축행정평가
해당 년도	2013년 ~ 2015년	2016년 ~ 2019년	2020년 ~ 2023년
분석 방법	선행연구 분석	국토교통부 협조 자료 (시행계획) 분석	국토교통부 협조 자료 (시행계획, 평가결과) 분석
분석 내용	평가체계 (대상, 방식 등) 평가지표 (지표구성, 지표산식) 연구 성과(개선방안)	평가체계 (대상, 방식 등) 평가지표 (지표구성, 지표산식) 평가결과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			
전문가 및 건축행정평가 관계자 의견(2022년 이후)			
▼			
결과 활용	건축행정평가 개선사항 발굴		

출처: 연구진 작성

□ 분석 방법

- 각 연도별 건축행정평가 시행계획 분석
 - (체계) 건축행정평가 시행계획 내 평가기간 및 대상, 평가절차 등 분석
 - (지표) 건축행정평가 평가목적 및 평가지표 등 분석
- 각 연도별 건축행정평가 결과 분석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분석
 - 지표별 변별력 및 적합성 등 분석
- 선행연구 건축행정평가 개선방안 등 검토
 - 건축행정평가 문제점 및 한계 관련 사항 검토
 - 연구 성과(건축행정평가 개선방안 등) 검토
 -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개선효과 및 한계 등 비교 검토

2) 전문가 및 건축행정평가 관계자 의견 청취

□ 조사 대상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건축행정평가 담당자 등
 - 건축행정평가의 각 세부항목별 자료 작성자 및 취합자
 - 건축행정평가 관련 의견조회 시 답변 작성자(※개선의견, 이의제기 등)
- 정책평가 및 통계 관련 전문가 등

□ 조사 방법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건축행정평가 담당자 대상 간담회 개최
 - 건축행정평가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운영체계 개선의견 청취
 - 건축행정평가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청취
 - 기타 건축행정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청취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건축행정평가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청취

2. 평가운영체계의 변천과 현황 분석

1) (~2015년) 건축행정평가(前건축행정 건설화 평가)¹⁰⁷⁾

□ 평가대상

- 2013년은 34개 지자체, 이후 2014년·2015년은 5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2013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광역 당 관할 기초지자체 각 1개, 총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2014년 및 2015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광역 당 관할 기초지자체 각 2개, 총 5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방식

- 지표별 상대평가, 기초지자체 총점은 광역지자체에 합산하여 평가
 - 2013년에는 각 평가지표별로 지자체를 상대평가 하여 그 순위에 따라 감하고, 지자체별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 산정
 - 2014년에는 각 평가지표별로 상대평가 하여 그 순위 및 등급(상중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자체별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 산정
 - 2015년에는 각 평가지표별로 상대평가 하여 그 순위 및 등급(상중하)에 따라 점수를 부여(배분)하고, 지자체별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 산정

[표 3-2] 2013~2015년 평가체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가대상	총 34개 지자체 (광역17개 + 기초 17개)		총 51개 지자체 (광역17개 + 기초 34개)
평가방식	각 지자체 평가 결과 총점으로 순위 산정 (기초는 광역에 합산)		
	상대평가		상대평가 + 절대평가
	지표별 지자체 순위에 따른 감점	순위에 따른 감점 또는 등급별 점수 부여 (+ 가감점)	순위에 따른 감점, 균등배분 또는 등급별 점수 부여 (+ 감점)

출처: 이여경 외(2017).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연구. pp.14~18.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07) 이여경 외(2017).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연구. pp.14~18.

2) (2016년~2019년) 건축행정평가

① 2016년 건축행정 건설화 점검¹⁰⁸⁾

□ 평가대상 (2016년 실적)

- 2016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점검) 확대
 - 2013년은 34개 지자체(광역시 17개, 기초 17개), 이후 2014년·2015년은 51개 지자체(광역시 17개, 기초 34개)를 선별하여 평가
 - 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이 부재하는 등 선별적 평가 시행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대두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는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17개 광역 및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시행

□ 평가일정

- 점검 자료 작성 및 제출 : 2015.11.07. ~ 2016.01.30. (※ 약 3개월)
- 평가 및 평가 결과 종합 : ~ 2016.12월 말
- 결과 발표 : 2017.01월

□ 평가방식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그룹 구분, 평가방식 보완, 평가절차 세분화, 평가 부문 구분 등을 추진
 - (기초 광역 구분) 기존 기초의 점수가 광역의 점수에 합산되어 평가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기초와 광역을 구분하여 각기 평가
 - (평가 그룹 구분) 모든 기초를 같이 평가하지 않고 인구수에 따른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구분 평가
 - (평가 주체 보완) 기존 공무원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포함하여 공정성 보완
 - (평가절차 보완) ①서면평가 ⇒ ②평가위원회 평가 ⇒ ③종합평가 순으로 외부전문가 평가(평가위원회) 절차 포함

108) 국토교통부(2016). 2016 건축행정 건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 ※ (①서면평가) 평가지표 중 정량부분 평가
- (②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 전문가로 평가위원 회(3~5명,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중 호선)를 구성한 후 평가지표 중 정성 부분 평가
- (③종합평가) 정량부분과 정성부분의 합산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평가부분 구분) 일반부분과 특별부분으로 나누어 평가 실시
- 그룹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자체는 장관상을 수여 (총 20개)
- 일반부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16개, 특별부분 평가에서 4개의 장관상을 수여

[표 3-3] 2016년 평가(점검)체계 개선 사항 종합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비고
평가대상	특정지자체 총 51개 (광역 17, 기초 34)	모든 지자체 총 243개(광역 17, 기초 226)	평가대상 확대
평가그룹	-	광역 1개 그룹 기초 3개 그룹 1그룹: 인구 50만 명 이상 2그룹: 인구10만 이상~50만 명 미만 3그룹: 인구 10만미만	지자체 특성 반영 평가 객관성 확보
평가지표	지표 일관성 없음 민원처리, 정책이행도 등	지표 일관성 확보 생애주기, 행정전문성 등	일관된 평가 및 성과관리 유도
평가방식	공무원 중심	공무원 + 외부전문가	공정성 강화
평가절차	서면평가	서면평가 및 위원회 평가 정량 부문 서면 평가 → 정성 부문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종합평가 및 우수 선정	절차 세분화 및 공정성 강화
시상	일반	일반+특별	특별부분 추가

출처: 국토교통부(2016). 2016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¹⁰⁹⁾

□ 평가대상 (2017년 실적)

- 2016년과 동일하게, 광역지자체 17개 및 기초지자체 226개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2016년부터 확대된 평가대상을 유지하여 운영하되 중앙은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광역은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

109) 국토교통부. (2018). 2018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 평가일정

- 점검계획 지자체 통보 : 2018.04월 말
- 점검 자료 작성 및 제출 : ~ 2018.06월 초 (※ 1개월 내외)
- 평가 및 평가결과 종합 : ~ 2018.06월 말
- 결과 발표 : 2018.07월 초

□ 평가방식

-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시·도에서 별도 평가 시행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17개소 평가, (광역시·도) 관할 기초지자체 226개소 평가
 - (평가절차) 2016년과 동일하게 ①서면평가, ②평가위원회 평가, ③종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우수지자체 선정
- ※ 광역지자체는 평가결과 최우수 관할 기초지자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
- 평가 부문별로 우수한 지자체는 장관상 수여 (총 20개)
 - 일반부문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18개의 장관상을, 특별부문 평가에서는 2개의 장관상을 수여

[표 3-4] 2018년 평가(점검)체계 개선 사항 종합

구분	2016년	2018년	비고
평가대상	모든 지자체 총 243개(광역 17, 기초 226)	-	평가대상 확대
평가그룹	광역 1개 그룹 기초 3개 그룹	그룹 폐지	평가방식 변경
평가지표	지표 일관성 확보 생애주기, 행정전문성 등	일부 지표 변경 현안 반영	지표변경 최소화
평가방식	공무원 + 외부전문가	(광역) 국토교통부 + 외부전문가 (기초) 광역지자체 평가	위임행정 취지 반영
평가절차	서면평가 및 위원회 평가 정량 부문 서면 평가 → 정성 부문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종합평가 및 우수 선정	(광역) 서면평가 및 위원회 평가 (기초) 광역지자체 평가 광역지자체가 기초 평가 후 평가최우수 지자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	
시상	일반+특별	-	특별부문 추가

출처: 국토교통부(2018). 2018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① 2019년 건축행정 평가¹¹⁰⁾

※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목적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19.4.17)를 반영

□ 평가대상 (2018년 실적)

- 2016년과 동일하게, 광역지자체 17개 및 기초지자체 226개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2016년부터 확대된 평가대상을 유지하여 운영하되 중앙은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광역은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

□ 평가일정

- 점검계획 지자체 통보 : 2019.05월 초
- 점검 자료 작성 및 제출 : ~2019.06월 말 (※ 약 1개월)
- 평가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7월 중
- 최종 평가결과 발표: 2019.07월 말

□ 평가방식

- 2018년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도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
- (이의신청기간)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종결과 발표 전에 개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부여
- 평가 부문별로 우수한 지자체는 장관상 수여 (총 20개)
 - 일반부문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18개의 장관상을, 특별부문 평가에서는 2개의 장관상을 수여

110)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3) (2020년~2023년) 건축행정평가

① 2020년 건축행정 평가¹¹¹⁾

□ 평가대상(2019년 실적)

- 2016년과 동일하게, 광역지자체 17개 및 기초지자체 226개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2016년부터 확대된 평가대상을 유지하여 운영하되 중앙은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광역은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

□ 평가일정

- 2019년까지는 ①계획 통보, ②자료 작성 및 제출, ③평가 및 결과 종합, ④결과 발표 일정만을 계획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구체화된 세부 계획 수립 및 통보

[표 3-5] 2020년 건축행정평가 세부일정 (표계속)

추진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일 정
평가계획 통보	■ 평가계획(지침) 의견수렴 (평가대상기관) ■ 2020 건축행정평가계획 및 평가지표 통보 (국토교통부 → 평가대상기관)	국토교통부	'20.4.9.~4.17. '20.4월말 예정
기초지자체 실적·증빙자료 작성 제출	■ 일반부문 지표별 증빙자료 작성 * 자체평가 점수집계 작성 ■ 특별부문 우수시책 자료 작성 ■ 평가자료 제출 (시·군·구 → 시·도)	평가 대상기관 (시·군·구)	'20.5.1.~5.29. '20.5.29. 限
광역평가단 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 기초지자체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일반부문(정량) ■ 서면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 기초지자체 실적에 대한 위원회 평가 실시 * 일반부문(정성), 특별부문 ■ 평가결과 확정 및 제출 (순위, 특별부문선정 등) (시·도 → 국토교통부)	광역평가단 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회	'20.6.1.~6.26. (4주) '20.6.26. 限
광역지자체 실적·증빙자료 작성 제출	■ 일반부문 지표별 증빙자료 작성 * 자체평가 점수집계 작성 ■ 특별부문 우수시책 자료 작성 ■ 평가자료 제출 (시·도 → 국토교통부)	평가 대상기관 (시·도)	'20.5.1.~6.26. '20.6.26. 限

111) 국토교통부(2020).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참고하여 작성

추진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일 정
중앙평가단 평가 실시	■ 광역지자체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일반부문(정량) ■ 기초지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평가	중앙평가단	'20.6.29.~7.17. (3주)
	■ 서면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평가대상기관	'20.7.20.~7.24.
	■ 광역지자체 실적에 대한 위원회 평가 실시 * 일반부문(정성), 특별부문	평가위원회	'20.7.20.~7.29.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국토교통부	추후통지
평가결과 통보 등	■ 건축행정평가 결과공개 · 통보 (국토교통부 → 시·도 평가기관)		
시상 추진	■ 우수기관 시상 추진 (국토교통부 → 우수기관)		
우수기관 등 지원	■ 우수기관 현장견학 별도 추진 ■ 미흡기관 대책 별도 통보		

출처: 국토교통부(2020).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p.7.

□ 평가방식 및 후속조치

- (2018년 동일)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도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
 - 기초와 광역지자체간 업무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취득 점수를 광역지자체 점수에 반영
 - (평가절차) ①자체평가, ②종합평가(서면·위원), ③이의신청, ④결과 확정
- ※ 광역지자체는 평가등급별 지자체(순위 및 최종 평가점수 포함) 및 최우수 지자체 관련자료(선정결과, 지표별 평가점수, 점검준비자료)를 우리 부에 통보
- (설문조사 실시) 기존 허가 처리건수, 처리기간 준수지표와 함께 실제 건축주 등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지표에 반영
- (이의신청기간)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종결과 발표 전에 개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부여
 - 중앙평가단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이의신청 접수
- 평가 부문별로 우수한 지자체는 장관상 수여 (총 20개)
 - 일반부문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18개의 장관상을, 특별부문 평가에서는 2개의 장관상을 수여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현장견학 추진 및 미흡기관 조치 절차 신설

① 2021년~2023년 건축행정 평가

□ 평가대상

- 2016년과 동일하게, 광역지자체 17개 및 기초지자체 226개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2016년부터 확대된 평가대상을 유지하여 운영하되 중앙은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광역은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
- ※ 2022년은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8개 총 245개

□ 평가일정

- 2020년부터 계획 시 수립된 평가 세부일정에 따라 시행
 - (5월) 평가계획 및 지표를 지자체에 통보
 - (6월~9월)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평가 시행 및 이의신청 기간
 - (9월~10월) 최종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표 3-6] 2021~2023년 평가일정

추진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평가계획 통보	'20. 5월	'22. 5월	'23. 5월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20. 6월 (광역 7월)	'22. 6월 (광역 7월)	'23. 6월 (광역 7월)
평가 시행 및 이의신청	'20. 7~8월 (광역 8~9월)	'22. 7~8월 (광역 8~9월)	'23. 7~8월 (광역 8~9월)
차년도 평가지표 공표	-	-	'23. 8월 (2024년도 평가지표)
최종 평가결과 발표(시상)	'20. 10월	'22. 9월	'23. 10월초

출처: 국토교통부의 2021년~2023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 평가방식

- (2018년 동일)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도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
 - (평가절차) ①(국토교통부) 지표 마련 및 배포, ②(광역) 기초지자체 평가, ③(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평가, ④ 이의신청, ⑤ 결과확정

- 평가 부문별로 우수한 지자체는 장관상 수여
 - 2021년에는 21개 지자체에 장관상 수여하였으나, 2022년부터 19개 지자체로 축소
- 2021년에는 전년도와 같이 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기관 후속조치(개선 계획 제출)가 이루어 졌으나, 2022년부터 이를 폐지

[표 3-7] 2021~2023년 평가체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가대상	광역시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자체		광역시 17개 기초 228개 등 전국 245개 지자체		광역시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방식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수립된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평가등급 부여 (우수/보통/미흡)	위원회의 (건축정책과장, 중앙건축위원회 제도분과 위원 등) 정성평가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수립된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평가절차	① (국토교통부) 지표 마련 및 배포 ② (광역시) 기초지자체 평가 ③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평가 ④ 이의신청 ⑤ 결과확정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운영실적 (우수)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 (2020년 대비 지표 간소화)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	통상적인 건축행정에 대한 평가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	(전년도와 동일)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사례
	광역시(4): 광역시 1개 도 1개 등 기초(15)	광역시(1) 기초(1)	광역시(2): 광역시 1개 도 1개 기초(15)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총 21개 지자체에 장관상 시상		총 19개 지자체에 장관상 시상		(전년도와 동일)	
기타	미흡 등급 지자체에 한해 건축행정 업무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제출		-		-	

출처: 국토교통부의 2021년~2023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평가지표의 변천과 현황 분석

1) (2016년 이전) 건축행정평가(前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 평가지표 구성

- 2013년 평가지표는 3개 항목 12개 지표, 2014년은 4개 항목 11개 지표, 2015년은 5개 항목 13개 지표로 구성
 - 2013년 평가항목은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을 주제로 인허가 처리건 대비 민원발생 비율, 민원감축률, 관원질의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본 평가에 대한 정성평가 등으로 구성
 - 2014년은 건축 임의규제 정비 및 창조적 건축행정을 주제로, 규제(임의지침, 불합리한 조례) 정비율, 민원발생 및 감축률(인허가 처리 대비),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와 본 평가에 대한 정성평가로 평가항목을 구성
 - 2015년은 건축정책 이행 및 창의적 건축행정을 주제로 건축정책 이행 충실도, 임의규제 정비 노력도, 적극 민원처리 노력도와 점검자료 충실도로 평가항목을 구성

[표 3-8] 2013~2015년 평가지표 구성변화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지표 주요내용	민원중심 지역별 민원처리 건수 민원감축율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규제폐지+정책이행도 지역건축규제 정비실적 건축협정 준비 건축민원위원회 준비	규제폐지+정책이행도 지역건축규제 정비실적 심의모니터링 평가 우수 행정사례
민원감축	적극적 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억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민원발생 및 감축률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 (건축민원위원회)	적극 민원처리 노력도
규제정비	-	규제 정비율	임의규제 정비 노력도
정책이행	기타 (우수사례)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	창의적 건축행정
	-	-	건축정책 이행 충실도
기타	기타 (평가충실도)	가감점 등 정성평가	감점사항
합	3개 항목 12개 지표	4개 항목 11개 지표	5개 항목 13개 지표

출처: 이여경 외(2017).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연구. pp.14~18.;
국토교통부(2016). 2016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산정방식

- 2013년은 순위별 감점 방식, 2014년 및 2015년은 순위 및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 모두 상대평가 방식이며, 가감점 등 일부만 절대평가
 - 2013년은 각 지표별로 지자체의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기준하여 지표별 배점에서 감점 적용. 감점은 배점이 높은 지표의 경우 1점씩 감점, 배점이 낮은 지표는 0.2점씩 감점 (단일지표 최대 30점에서 0점까지 득점 가능)
 - 2014년은 등급별 배점으로 전년 대비 지표별 차등 폭을 키움. 다만 일부 항목은 2013년과 같은 순위에 따른 감점 방식. 가감점 운영이 특징
 - 2015년은 등급별 배점, 실적에 따른 균등배분, 순위에 따른 감점 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 가감점은 감점만 적용하고 2014년 대비 배점 축소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평가지표 총 36개 중 31개가 정량지표
 - 2013년은 민원 처리건수, 정부처리 민원 중 해당 지자체 민원 비율, 민원 감축률, 언론 보도 실적 등 12개 지표 중 11개가 정량지표
 - 2014년 또한 민원 건수 및 민원 감축도 등과 규제 발굴 및 개선율, 폐지율 등 11개 지표 중 9개가 정량지표
 - 2015년은 창의적 건축행정, 점검자료 충실도 등이 정성지표에 해당하여 총 13개 지표 중 11개가 정량지표

□ 평가지표 배점

- 2013년은 총 배점이 105점, 2014년은 110점, 2015년은 100점
 - 2013년은 5점에 해당하는 일반민원 처리건수, 민원만족도 향상률 등부터 30점의 국토교통부 처리민원 중 지역별 민원건수 등으로 구성. 총점은 105점이나 평가 제출 자료의 충실도 등 정성평가 5점을 제외하면 총 100점
 - 2014년은 5점에 해당하는 민원처리 및 감축도 등부터 25점의 임의규제 폐지율 등으로 구성. 총점은 110점이며, 이와 별도로 정성평가 가감점 항목(± 10) 운영
 - 2015년은 5점에 해당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 안전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20점의 건축 임의규제 정비율 등으로 구성. 총점은 100점이며, 이와 별도로 점검자료 충실도 감점(-5) 운영

[표 3-9] 2013~2015년 평가항목과 지표별 배점 및 평가방식 비교

연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식		
				상대	절대	
				순위	등급	
2013	적극적 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억제	인허가 처리	1) 일반민원 처리건수	5	●	
		건 대비 민원 발생 비율	2) 국토교통부 처리 민원 중 지역별 민원건수	30	●	
			3) 집단민원(5인이상)+반복민원(3회이상)건수	5	●	
			민원감축률	4) 지역별 전년대비 민원감축률	10	●
		관련 질의응	5) 민원처리건 대비 관련 질의건수	10	●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책추진	6) FAQ등재율(민원처리건수 대비)	5	●		
		7) 편람발간+조례개정 및 개선(지침등)실적	5	●		
		8) 민원감축 및 만족도 제고 수립·시행실적	10	●		
		9)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인센티브 등	5	●		
		10) 민원만족도 향상률(전년대비) :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만족률	5	●		
	기타	11) 우수사례 지역 언론 등 보도 실적	10		●	
		12) 정성 평가 : 자료충실도(2), 제출기간준수(1.5), 점검준비(1.5)	(+5)		●	
2014	규제 정비율	1) 자체 발굴·개선율	15		●	
		2) 규제 폐지율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 기준)	25		●	
	민원발생 및 감축률	3) 건축 허가·신고 처리 및 일반민원 처리 현황	5	●		
		4) 국토교통부 민원 중 지역별 민원건수	10	●		
		5) 민원 감축도	5	●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	6) 건축협정제 준비	15		●	
		7) 건축민원위원회 준비사항	15		●	
		8) 주택유지관리 지원사항	10		●	
		9) 지자체 자체 창의적 건축행정 우수사례	10		●	
	가감점 등 정성평가	10) 가점 (점검자료 충실도, 점검 준비상태, 창의행정 건축 초과노력 등)	(±10)		●	
		11) 감점 :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자료제출기간 준수 여부 등				
2015	임의규제 정비노력도	1) 규제정비율 : 규제 폐지율 (폐지건수/발굴건수*100)	20	●		
		건축정책이행충실도	2)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여부	5	●	
			3)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완화기준 마련 여부	5	●	
			4)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조례 개정여부	5	●	
			5) 경관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체계 구성 여부	5	●	
	지방건축위 원회 운영	6) 시·도별 건축심의모니터링 점검결과	15	●		
		7) 심의기준 개정 실적	5	●		
			8)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 실적 (결과보고건수/점검대상건수)	5	●	
			9)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정요구 시 기간 내 조치완료 및 결과보고한 실적)	5	●	
	적극 민원처리노력도	10) 민원 감축률	5	● ¹⁾		
		11)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현황	10	● ¹⁾		
	창의적 건축행정	12) 상가지표 외 건축행정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 행정사례 정성 평가	15	●		
	감점사항	13) 현장 점검 시 자료 준비상태 등, 자료제출 지연 시	(-5)		●	

주1: 실적별로 지표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

출처: 이여경 외(2017).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연구. pp.15-20., 유광홍 외 (2015).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방안 연구. p.231.;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2015 건축행정 건실화 세부 점검계획. p.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2016년~2020년) 건축행정평가

①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지표¹¹²⁾

□ 평가지표 구성

-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목표로 지자체 성격을 반영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 지표 차등하여 구성
 -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노력 개선도
 - (광역지자체) 5개 항목 9개 지표로 구성,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치건축물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
 - (기초지자체) 5개 항목 11개 지표로 구성,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 등과 유지관리의 적절성 등을 포함

[표 3-10] 2016년 평가지표 구성

부문	항목	평가지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일반부문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심의기준 적합여부 건축심의결과 공개	건축심의결과 공개 허가처리기간 준수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방치건축물 관리 실적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적	안전사고 발생 착공·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
	유지관리 적절성	-	유지관리 점검이행실적 위반건축물 관리 실적
	건축행정 전문성	전문인력 비율 건축민원 감축률	전문인력 비율 1인당 업무 부담률 건축민원 감축률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도 관할 기초 지자체 관리 노력도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관리 노력도
	총합	5개 항목 9개 지표	5개 항목 11개 지표
특별부문	지자체가 수행한 현장밀착형 건축행정 사례(최근 3년)		

출처: 국토교통부(2016). 2016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12) 국토교통부. (2016). 2016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 산정방식(그룹평가)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
 - (광역지자체)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기초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평가
- ※ 평가그룹은 인구 50만,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구분

[표 3-11] 2016년 평가그룹별 기초지자체 수

구분	평가그룹1	평가그룹2	평가그룹3
인구규모	인구 50만 이상	인구 50만~10만	인구 10만 이하
대상 지자체 수	23개	109개	94개
총합	총 226개		

출처: 국토교통부(2016). 2016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부문은 일반과 특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각 장관상 수여
 - (일반부문)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 ※ 광역은 5개 항목 9개 지표에 대해 80점 만점(감점 5점, 가점 4점), 기초는 5개 항목 11개 지표에 대해 평가그룹(3개)별로 100점 만점(감점 5점)
 - ※ 방치건축물 정비실적,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실시
 - ※ 허가처리, 위반건축물 관리실적 등이 상이하므로 실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정계수(1→0.9→0.8)를 적용하여 평가점수 차등 적용
 - (특별부문) 최근 3년간 지자체가 수행한 현장밀착형 건축행정 사례에 대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평가그룹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실시
 - 광역은 총 4개, 기초는 총 16개로 총 20개의 장관상을 수여

[표 3-12] 2016년 평가부문 및 대상별 수상 대상 수 (단위: 개)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인구 50만~10만	인구 10만 이하
일반부문	16	3	3	5	5
특별부문	4	1	1	1	1
총합	20	4	4	6	6

출처: 국토교통부(2016). 2016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5.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지표 배점

- 2016년 평가지표의 총 배점은 125점, 광역 대상 평가지표의 배점은 80점이며 기초는 100점
- 5개의 항목은 각각 별로 20점에서 40점까지 배점되어 있음.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등은 20점 배점.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는 40점 배점 (가감점 별도)

[표 3-13] 2016년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

연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대상	
				광역	기초
2016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20)	1-1. 건축심의기준의 적합 여부	5	●	
		1-2. 건축심의 결과 공개	5	●	●
		1-3.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 여부	10		●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25)	2-1.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발생	10		●
		2-2. 착공 및 사 용승인 처리기간 준수 여부	1. 착공승인 처리기간 준수율	5	●
			2.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율	5	●
		2-3. 방치건축물 관리 실적	10(+2)	●	
		2-4.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	5	●	
	유지관리 적절성 (20)	3-1.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행실적	10		●
		3-2. 위반건축물 관리 실적	1.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실적	5	●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5	●
	건축행정 전문성 (20)	4-1.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내 전문인력 비율	1.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	4	● ●
			2.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3	● ●
			3. 건축행정 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	3	● ●
		4-2. 1인당 업무부담률	5		●
		4-3. 건축 관련 민원 감축률	5	●	●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40)	5-1. 건축정책 이행도	1. 건축규제모니터링 협조 실적	8	● ●
			2.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관련 조례 개정 실적	2	● ●
		5-2. 지자체 자체 노력도	15	●	●
		5-3. 관할 기초지자체 관리노력도	15	●	
	가감점	감점	제출기간 준수	(-2)	● ●
			자료 충실도	(-3)	● ●
		가점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및 철거 실적	(+2)	●

출처: 국토교통부(2016). 광역지자체 16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관련 세부 평가 지표. 내부자료.; 기초지자체 16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관련 세부 평가 지표. 내부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①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지표¹¹³⁾

□ 평가지표 구성

- 2016년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수정을 최소화하여 평가지표의 정착 도모
 - 평가지표 중 지자체 자체 노력도 및 건축정책 이행도 세부내용 변경
 - ※ 건축심의모니터링 관련 평가지표를 대신하여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지역건축안전센터, 위반건축물 및 공사 중단 건축물 관련 지표 포함
- 지자체 성격을 반영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표 차별화

[표 3-14] 2018년 평가지표 변화

평가항목	평가지표	
	2016년	2018년
5-1.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건축심의모니터링 협조실적 -	(지표삭제) [광역]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 실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시행실적 [기초]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 실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실적

출처: 국토교통부(2018). 2018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산정방식

- 2018년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 평가
 - 2016년 광역지자체(1)과 기초지자체(3)를 총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다시 기초지자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
 - 광역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 광역지자체는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
 - ※ 국토교통부 : 광역지자체 17개소
 - ※ 시 · 도 : 관할 기초지자체 226개소

113) 국토교통부(2018). 2018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 평가부문은 일반과 특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각 장관상 수여
 - (일반부문)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 ※ 광역은 5개 항목 8개 지표에 대해 100점 만점, 기초는 5개 항목 11개 지표에 대해 100점 만점 평가
 - ※ 허가처리, 위반건축물 관리실적 등이 상이하므로 실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정계수(1→0.9→0.8)를 적용하여 평가점수 차등 적용
 - (특별부문) 2017년 지자체가 수행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행정 사례'에 대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실시
 - 광역은 총 4개, 기초는 총 16개로 총 20개의 장관상을 수여

[표 3-15] 2018년 평가부문 및 대상별 수상 대상 수 (단위: 개)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일반부문	18	3	15
특별부문	2	1	1
총합	20	4	16

출처: 국토교통부(2018). 2018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지표 배점

- 2018년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고, 일부 평가지표의 배점 변경
- 동일 지표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배점을 달리하는 등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
 - 평가지표 중 건축허가·신고담당부서 내 전문 인력 비율에 대하여 기존 2016년에는 광역·기초 구분 없이 10점이었으나, 2018년 평가지표에서는 광역은 15점으로 배점 상향조정, 기초는 10점 배점 유지
 - 지자체 자체 노력도에서 2016년에는 광역·기초 구분 없이 15점이었으나, 2018년 평가지표에서는 광역은 15점을 유지, 기초는 5점으로 하향조정
-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구분하여 신설
 - (광역 신설지표)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 실적,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시행실적 신설
 - (기초 신설지표)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 실적,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실적

[표 3-16] 2018년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변화 비교

평가항목	평가지표	2016년		2018년	
		광역(9)	기초(11)	광역(8)	기초(11)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여부	5	-	5	-
	건축심의결과 공개	5	5	10	10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	10	-	10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발생	-	10	-	10
	착공 및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 여부	-	10	-	10
	방치건축물 관리 실적	10	-	10	-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	5	-	15	-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행실적	-	10	-	15
	위반건축물 관리 실적	-	10	-	10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내 전문인력 비율	10	10	15	10
	1인당 업무부담률	-	5	-	5
	건축 관련 민원 감축률	5	5	10	5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건축정책 이행도	10	10	20	10
	지자체 자체 노력도	15	15	15	5
	관할 기초지자체 관리 노력도	15	-	-	-
합계	15개	80	100	100	100

출처: 국토교통부(2018). 2018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p.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2019년 건축행정 평가¹¹⁴⁾

□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수정을 최소화하여 평가지표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유지
- 다만 주요사업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필요한 사업은 건축정책 이행도 평가항목에 반영
 - ※ 건축심의모니터링 관련 평가지표를 대신하여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지역건축안전센터, 위반건축물 및 공사 중단 건축물 관련 지표 포함
- 지자체 성격을 반영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표 차별화

[표 3-17] 2019년 평가지표 변화 (신설)

평가항목	평가지표
5-1.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광역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실적
	기초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실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p.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14)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 산정방식

- 2019년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 평가(2018년 동일)
 - 광역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 광역지자체는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
- 평가부문은 일반과 특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각 장관상 수여(2018년 동일)
 - (일반부문)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 (특별부문) 2018년 지자체가 수행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 사례'에 대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실시
 - 광역은 총 4개, 기초는 총 16개로 총 20개의 장관상을 수여

□ 평가지표 배점

- 지자체 성격을 반영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 평가지표 및 배점 차별화

[표 3-18] 2019년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2019년	
		광역(8)	기초(11)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여부	5	-
	건축심의결과 공개	10	10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	10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발생	-	10
	착공 및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 여부	-	10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실적	10	-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	15	-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행실적	-	15
	위반건축물 관리 실적	-	5
	시정조치 미이행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	-	5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총 인원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	5	4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5	3
	건축행정 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	5	3
	1인당 건축허가·신고 건수	-	5
	건축 관련 민원 감축률	10	5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건축정책 이행도	20	10
	지자체 자체 노력도	15	5
합계	17개	100	100

출처: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p.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2020년~2023년) 건축행정평가

① 2020년 건축행정 평가

□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수정을 최소화하여 평가지표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유지
- 다만 주요사업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필요한 사업은 건축정책 이행도 평가항목에 반영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지표점수에 반영
 - 기초와 광역지자체간 업무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취득 점수를 광역지자체 점수에 반영

[표 3-19] 2020년 건축행정평가 지표 관련 변경(개선) 사항

구분	2019년	2020년(개선)
광역-기초 업무연계	기초에만 해당하는 지표는 광역 지표에서 제외	상호 업무 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평가결과를 광역에 반영
지표확대	광역 16지표 / 기초 21지표	광역 35지표(+19) / 기초 32지표(+11)
만족도조사	(신규)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 등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
신규지표	(신규)	9개 지표 신규 발굴 (민원발생률, 건축정책 지표 등)
점수산정	100점 만점 (신규지표 반영 곤란)	다양한 지표반영을 위해 배점별로 취득한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출처: 국토교통부(2020).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p.1.

□ 산정방식

- 2019년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 평가 (2018년 동일)
 - 광역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 광역지자체는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
 - 평가부문은 일반과 특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각 장관상 수여
 - (일반부문)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 ※ (평가결과) 평가등급(우수 : 보통 : 미흡 = 30 : 60 : 10) 대국민 공개 실시

[표 3-20] 2020년 건축행정평가 점검대상별 평가그룹

광역시·도	계	우수	보통	미흡	비고
합계	17	5	11	1	

자치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74	25	16	8	10	5	5	5
우수	24	8	5	2	3	2	2	2
보통	44	15	9	5	6	3	3	3
미흡	10	3	2	1	1	1	1	1

시군구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152	31	18	11	15	14	22	23	18
우수	45	9	5	3	5	4	7	7	5
보통	91	19	10	7	9	9	13	14	10
미흡	15	3	2	1	2	1	2	2	2

출처: 국토교통부(2020).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p.9.

- (특별부문) 2019년 지자체가 수행한 ‘건축행정 혁신 및 현장밀착 서비스 개선사례’로 선정에 대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실시
- ※ (평가기준) 아이디어 참신성(40점) + 추진의지 및 노력도(25점) + 개선효과(25점) + 증빙자료 충실성(10점)을 종합하여 평가
- 광역은 총 4개, 기초는 총 16개로 총 20개의 장관상을 수여
- ※ (일반우수) 평가그룹별로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고 평가그룹별 우수등급 중 상위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 수여(18개)
- ※ (특별우수) 광역 및 기초에서 각 1개의 지자체 선정하여 장관상 수여(2개)

[표 3-21] 2020년 평가부문 및 대상별 수상 대상 수 (단위: 개)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일반부문	18	3 (상위 1~3위)
특별부문	2	1
총합	20	4

출처: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pp.4~5.

- (미흡기관) 평가그룹별 미흡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건축행정 업무향상을 위해 지자체 현장방문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지속관리

□ 평가지표 배점

- (광역지자체) 시·도를 대상으로 6개 분야(35개 세부지표)에 대한 채점 점수(가·감점 포함 총 194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평가
- (기초지자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6개 분야(32개 세부지표)에 대한 채점 점수(가·감점 포함 총 181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평가

[표 3-22] 2020년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신규 9)	광역(35)	기초(32)
I.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8)	1-1. 건축심의 기준 (3) ※ 신규(1)	15	10
	1-2. 건축인가 처리기간 준수 (4) ※ 신규(1)	18	15
	1-3. 건축행정 만족도조사(1) ※ 신규(1)	15	15
II. 공사 안전관리 및 효율성 (4)	2-1.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1)	10	10
	2-2.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2)	10	5
	2-3. 건축안전 모니터링 (1)	5	5
III. 유지관리 적절성 (5)	3-1.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1)	10	10
	3-2. 위반건축물 관리 (4) ※ 신규(1)	25	25
IV. 건축행정 전문성 (6)	4-1. 건축인가 담당부서 전문성 (3)	15	15
	4-2. 업무부담 경감노력 (1)	5	5
	4-3. 건축 관련 민원 감축 (2) ※ 신규(1)	15	15
V.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9)	5-1. 건축정책 이행도 (7) ※ 신규(4)	36	36
	5-2. 지자체 자체 노력도 (2)	20	20
VI. 가·감점(3)	6-1. 가점 (1)	3	3
	6-2. 감점 (2)	-8	-8
합계	6개 분야 (35개 세부지표)	194	181

출처: 국토교통부(2020).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p.3.

[표 3-23] 2020년 평가항목 중 '5-1. 건축정책 이행도' 세부지표

세부지표	광역	기초
5-1-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10	10
5-1-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실적	5	5
5-1-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5	5
5-1-4.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신규)	5	5
5-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적 (신규)	5	5
5-1-6.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실적 (신규)	3	3
5-1-7. 한옥건축 사업 추진실적 (신규)	3	3

출처: 국토교통부(2020).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p.4.

① 2021년~2023년 건축행정 평가

□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수정을 최소화하여 평가지표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유지
- 다만 주요사업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필요한 사업은 건축정책 이행도 평가항목에 반영
- 2021년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지자체 행정력 소모를 감안하여 서면 비중이 큰 일반부문 평가는 평가지표 등을 대대적으로 간소화
 - 법령 개정 반영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지표는 수정·추가하고,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여 업무부담 경감*

※ 광역기준 지표 감축(9개) : (2020년) 6개 분야 35개 세부지표
 → (2021년) 5개 분야 25개 세부지표
 → (2022년) 5개 분야 26개 세부지표

[표 3-24] 2021~2024년 평가지표 구성변화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항목 수		5개	
지표 수	총 25개		총 26개
평가부문 (지표수)		건축행정절차 합리성(8)	
		건축 관련 안전관리(3)	
		유지관리 적절성(4)	
		건축행정 개선 노력(5)	건축행정 개선 노력(6)
		가감점(5)	
총 배점 (광역)	165점		200점
점수산출	지표별 3개 등급(비율) 선정 → 등급별 점수 차등 부여	지표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및 합산	
		가감점 제외 점수 합산 후 100점 환산	
변경사항	코로나19를 감안하여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면자료 제출 등 노력 대비 효용성이 부족한 평가 지표 삭제	일부 지표 (건축심의기준 등)	지표의 공개시점(n+1년)을 고려하여 지표변경 지양 단기적 정책목표 이행 (필요시 특별부문을 통해 운영)

출처: 국토교통부의 2021년~2023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산정방식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 평가 (2018년 동일)
 - 광역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 광역지자체는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
 - 평가부문은 일반과 특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각 장관상 수여
 - (일반부문)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 ※ (평가결과) 2021년은 평가등급(우수 : 보통 : 미흡 = 30 : 60 : 10) 대국민 공개 실시, 이후 2022년부터 등급 폐지
- (특별부문) 2021년에는 2020년 지자체가 수행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에 대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정성평가 실시
 - 2022년에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 이슈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평가
 - 2023년에는 이태원 사고 당시 위반건축물이 사고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사례'를 평가

[표 3-25] 2021년~2023년 평가부문 및 대상별 수상 대상 수 (단위: 개)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2021년	일반부문	19	4 (광역시 1위, 도 1위, 광역시·도 2, 3위)	15 (광역시별 1위)
	특별부문	2	1	1
	총합	21	5	16
2022년	일반부문	17	2 (광역시 1위, 도1위)	15 (광역시별 1위)
	특별부문	2	1	1
	총합	19	3	16
2023년	일반부문	17	2 (광역시 1위, 도1위)	15 (광역시별 1위)
	특별부문	2	1	1
	총합	19	3	16

출처: 국토교통부의 2021년~2023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평가지표 배점

- 2021년에는 5개 분야에 대하여 22개(기초) 및 25개(광역) 세부지표 운영
 - (광역지자체) 시·도를 대상으로 5개 분야(25개 세부지표)에 대한 채점 점수(가·감점 미포함 총 165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평가

- (기초지자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세부지표)에 대한 채점 점수(가·감점 미포함 총 13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평가
- 2022년에는 5개 분야에 대하여 22개(기초) 및 26개(광역) 세부지표 운영
 - (광역지자체) 시·도를 대상으로 5개 분야(26개 세부지표)에 대한 채점 점수(가·감점 미포함 총 20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평가
 - (기초지자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세부지표)에 대한 채점 점수(가·감점 미포함 총 17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평가

[표 3-26] 2021년~2023년 세부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광역 (25)	기초 (22)	광역 (26)	기초 (22)	광역 (25)	기초 (22)
1.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1-1. 건축심의 기준	15(3)	15(3)	20(3)	10(2)	20(3)	10(2)
	1-2.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30(3)	30(3)	30(3)	50(3)	30(3)	50(3)
	1-3. 건축행정 만족도 및 전문성	20(2)	5(1)	25(2)	5(1)	25(2)	5(1)
2. 건축관련 안전관리	2-1.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10(1)	10(1)	20(1)	10(1)	20(1)	10(1)
	2-2. 공사중단 건축물	10(2)	5(1)	15(2)	10(1)	15(2)	10(1)
3. 유지관리 적절성	3-1. 건축물 정기점검	15(2)	15(2)	20(3)	25(3)	20(3)	25(3)
	3-2. 위반건축물 관리	25(2)	10(1)	10(1)	10(1)	10(1)	10(1)
4. 건축행정 개선 노력	5-1. 건축정책 이행도	25(4)	25(4)	40(5)	30(4)	40(5)	30(4)
	5-2. 지자체 자체 노력도	15(1)	15(1)	20(1)	20(1)	20(1)	20(1)
5. 가감점	6-1. 가점	6	6	11	11	11	11
	6-2. 감점	-13	-13	-8	-8	-8	-8
합계		165	130	200	170	200	170

출처: 국토교통부(2021). 2021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P.2.; 국토교통부(2022). 2022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p.5.; 국토교통부(2023). 2023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p.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 건축행정평가 결과 분석¹¹⁵⁾

1) 영향지표와 비영향지표 검토

□ 2020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 2020년도 건축행정평가 광역지자체 평가결과(순위) 분석
 - (영향 지표) 2020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평가 지표)은,
 - ① (1위)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의 '지자체 자체노력 사례(정성)',
 - ② (2위)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 ③ (3위)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의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설문)' 순으로 나타남(※ 모두 고 배점(10점~15점) 지표에 해당)
 - 앞서 분석한 2021년도, 2022년도의 경우 평가지표가 20개 내외였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평가지표가 35개로 세부평가지표가 매우 많고,
 - 세부평가지표 별 배점 또한 5~10점(1개 지표 및 가감점 지표만 3점에 해당)이 부여되어 있어 지표 간 배점 격차는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임
 - (비영향 지표) 2020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평가지표)은,
 - ① (32위) 건축행정 전문성 분야 중 '건축직 공무원 비율', ② (31위)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 중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평균 처리일수' ③ (30위)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 중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위반건축물 조치실적' 순으로 나타남(※ 모두 저 배점(3~5점) 지표에 해당)
 - 가감점 지표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35위) 가감점 항목 중 '평가자료 충실도 부족', (34위) 건축행정 전문성 분야 중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33위)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 중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평균 처리일수', (32위)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 중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위반건축물 조치실적', (31위) 공사안전관리 및 효율성 분야 중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 순으로 나타남(※ 이들 대부분이 3~5점, 가감점 지표 중 평가자료 충실도 부족은 -3점)

115) 이어경 외(2023). 2023년 건축행정평가 지원 성과보고서.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020년도 건축행정평가 평가결과 차이(그룹) 분석¹¹⁶⁾

- ※ 차이 분석을 위한 집단 구분 방법 결정 필요 (상중하 등급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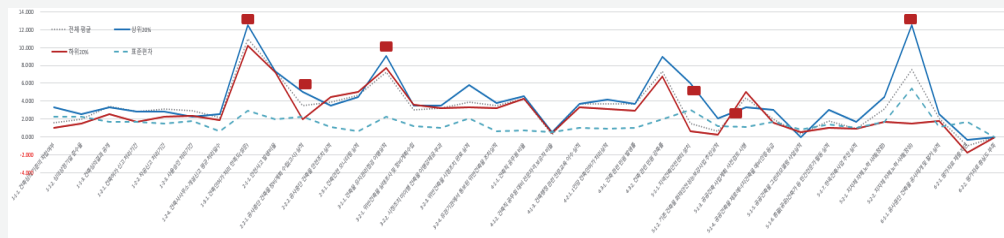
- ☞ 평가지표가 집단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 위 및 하위 20%¹¹⁷⁾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

-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는 지표(가감점 포함)는 ‘지 자체 자체노력 사례(정성)(5.396점 차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3.051 점 차이)’, ‘건축인허가 처리만족도(설문)(2.900점 차이)’, ‘건축물 유지관 리점검 이행실적(2.288점 차이)’로 나타남

[20년 건축행정평가 차이분석 결과(표)]

※ 상하위 20% 그룹간 분석

- 푸른선은 상위 20%그룹 평균, 붉은선은 하위 20%그룹 평균, 회색 점선은 전체 평균, 하늘색 점선은 표준편차임



출처: 이여경 외(2023). 2023년 건축행정평가 지원 성과보고서. p.5.

□ 2021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 2021년도 건축행정평가 광역지자체 평가결과(순위) 분석

- (영향 지표) 2021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평가 지표)은,

- ①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의 지자체 자체노력도 중 ‘지자체 자체노력 사례(정성)’,
- ②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의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3개 지표(건축허가 신고 처리기간, 착공신고 처리기간, 사용승인 처리기간),
- ③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의 위반건축물 관리 중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활용실적’ 순으로 나타남

116) 차이분석을 위한 등급별 그룹화 방법은 지표의 변별력 유무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지표의 실효성을 의미하진 않음

117) 검토를 위해 상위 및 하위 25%(4분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평가 지표가 집단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이에 상위 및 하위 20%로 조정하여 검토

- (비영향 지표) 2021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평가지표)은,

- ① 건축행정 개선노력 분야의 건축정책 이행도 3개 지표(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실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 ②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의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및 전문성 중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 ③ 건축 관련 안전관리 분야의 공사 중단 건축물 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고시) 실적' 순으로 나타남

• 2021년도 건축행정평가 평가결과 차이(그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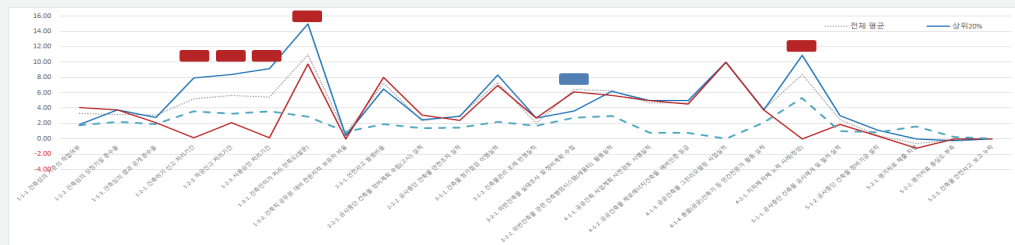
※ 차이 분석을 위한 집단 구분 방법 결정 필요 (2020년 동일)

- 표준편차 분석 결과처럼, 지자체 자체 노력 사례(정성) 지표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점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 건축허가 신고 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남
- 반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평균의 표준편차가 0으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점수(10점)를 받고 있어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등의 지표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평가지표로 나타남

[21년 건축행정평가 차이분석 결과(표)]

※ 상하위 20% 그룹간 분석

- 푸른선은 상위 20%그룹 평균, 붉은선은 하위 20%그룹 평균, 회색 점선은 전체 평균, 하늘색 점선은 표준편차임



출처: 이여경 외(2023). 2023년 건축행정평가 지원 성과보고서. p.7.

□ 2022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 2022년도 건축행정평가 광역지자체 평가결과(순위) 분석

- (영향 지표) 2022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평가

지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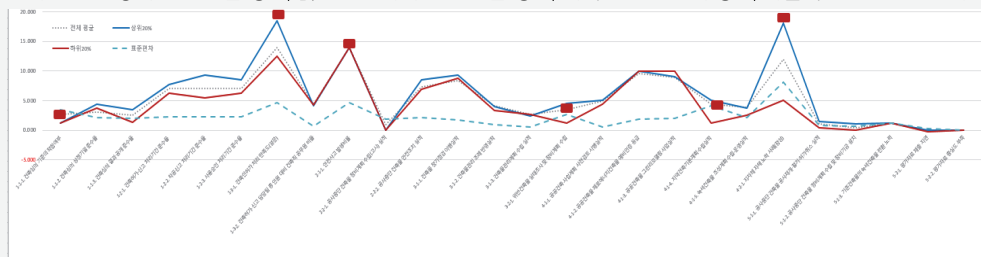
- ① (1위)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의 '지자체 자체노력 사례(정성)',
 - ② (공동 2위) 건축 관련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사고 발생비율'과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분야의 '건축인가 처리 만족도(설문)'
 - ③ (4위)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의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 순으로 나타남 (※ 4위를 제외하면 모두 고 배점(20점) 지표에 해당)
- 202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건축심의기준의 적합여부'가 표준편차가 큰 지표 5순위(3.480)에 해당하나, 배점(10점)이 같은 4위의 표준편차 (4.159)에 비해 변별력이 다소 떨어짐
 - **(비영향 지표)** 2022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평가지표)은,
 - ① (21위)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실적',
 - ② (20위) 건축행정 개선노력 분야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 ③ (19위)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의 '건축허가·신고 담당팀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 순으로 나타남 (※ 모두 저 배점(5점) 지표에 해당)
 - 가감점 지표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이들 지표는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노력(18위/26위),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 재개·철거·허가취소 실적 (20위/26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기금 설치(22위/26 위)보다 표준편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감점의 경우 3~5점)
- 2022년 건축행정평가 평가결과 차이(그룹) 분석
 - ※ 차이 분석을 위한 집단 구분 방법 결정 필요 (2020년 동일)
 -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는 지표(가감점 제외)는 '지자체 자체노력 사례(정성)(13.000점 차이)', '건축인가 처리만족도 (설문)(6.000점 차이)',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율(3.750점 차이)', '지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3.750점 차이)'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가감점 지표 포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는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자자체 자체 노력 사례(정성)', '공사중단건축물 공사재개·철거·허가취소 실적',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기금 설치'이며, 그 외 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음
 - 2022년 건축행정평가 평가결과 분석종합
 - 2022년도 평가결과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 일부 지표의 경우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평균값이 같거나(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안전사고 발생비율,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해당 지표는 변별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
-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평균값이 오히려 역전하는 경우(담당 인원,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도 발생함
- 변별력 상실의 정도가 2021년도에 비해 심해지고 있으며, 모든 지표가 균질화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22년 건축행정평가 차이분석 결과(표)]

※ 상하위 20% 그룹간 분석

- 푸른선은 상위 20%그룹 평균, 붉은선은 하위 20%그룹 평균, 회색 점선은 전체 평균, 하늘색 점선은 표준편차임



출처: 이여경 외(2023). 2023년 건축행정평가 지원 성과보고서. p.16.

□ 2023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 2023년도 건축행정평가 광역지자체 평가결과(순위) 분석
 - (영향 지표) 2023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평가 지표)은,
 - ① (1위)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의 '지자체 자체노력 사례(정성)',
 - ② (공동 2위) 건축관련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사고 발생비율'과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분야의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설문)'
 - ③ (4위) 건축행정 합리성 분야의 '건축심의기준의 적합여부' 순으로 나타남 (※ 4위를 제외하면 모두 고 배점(20점) 지표에 해당)
 - 2022년에 4위였던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은 5위로, '건축심의기준의 적합여부'는 4위에서 5위로 순위가 변동 됨. 지자체 점수를 살펴본 결과, 2022년 대비 지역건축기본계획은 많은 지자체들이 수립 또는 수립 중인 상태이며, 건축심의기준은 지역별 진행상황이 편차가 커짐
 - (비영향 지표) 2023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평가지표)은,

- ① (21위) 건축행정 개선노력 분야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 인증 등급',
- ② (20위)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실적',
- ③ (19위)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의 '건축허가·신고 담당팀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 순으로 나타남

(※ 21위는 10점, 나머지는 저배점(5점) 지표에 해당)

- 가감점 지표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21위/24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감점지표(모두 0점), (20위/23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실적', (21위/22위) '건축허가·신고 담당팀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로 가감점 제외하면 하위 순위가 동일함

• 2023년 건축행정평가 평가결과 차이(그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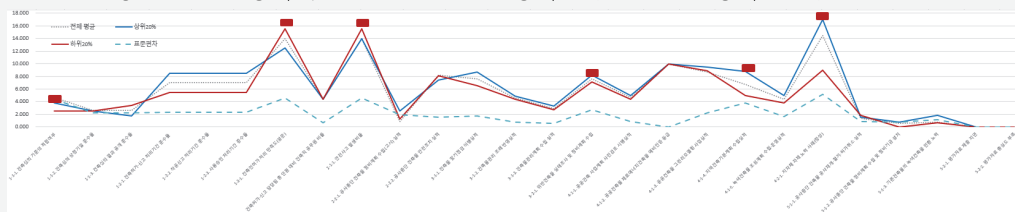
※ 차이 분석을 위한 집단 구분 방법 결정 필요 (2020년 동일)

-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평균값의 다소 차이를 보이는 지표(가감점 제외)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8.000점 차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실적(3.750점 차이)',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율'(각 3.000점 차이)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가감점 지표 포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는 상위 20%가 높았던 '자치체 자체 노력 사례(정성)', '건축심의기준의 적합여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과 하위20%가 역전한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설문)', '안전사고 발생비율'이며, 그 외 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음

[23년 건축행정평가 차이분석 결과(표)]

※ 상하위 20% 그룹간 분석

- 푸른선은 상위 20%그룹 평균, 붉은선은 하위 20%그룹 평균, 회색 점선은 전체 평균, 하늘색 점선은 표준편차임



출처: 연구진 작성

5. 소결

1) 평가체계 분석 결과

□ 변화 및 주요 특징

- (평가대상) 2013년은 34개 지자체, 이후 2014년·2015년은 5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2016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점검) 확대하였으며, 2023년까지 유지
- (평가방식)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표별 상대평가, 기초지자체 총점은 광역지자체에 합산하여 평가
- 2016년부터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그룹 구분, 평가방식 보완, 평가절차 세분화, 평가 부문 구분 등을 추진
 - 광역지자체 17개 및 기초지자체 226개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 2018년부터는 2016년 확대된 평가대상을 유지하여 운영하되 중앙은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광역은 관할 기초지자체를 평가. 2018년부터는 그룹(인구규모 그룹)별 평가는 폐지하였으며, 이후 2023년까지 2018년 설정된 평가 방식의 큰 틀 안에서 유지하여 시행

※ (참고) 2016년 평가방식 개선 주요내용

- (기초 광역 구분) 기존 기초의 점수가 광역의 점수에 합산되어 평가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기초와 광역을 구분하여 각기 평가
- (평가 그룹 구분) 모든 기초를 같이 평가하지 않고 인구수에 따른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구분 평가
- (평가절차) 2013년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①지표배포 ⇒ ②국토교통부 평가(광역·기초) ⇒ ③결과확정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전면 개선하여 외부평가위원 평가절차 신설

※ (참고) 2016년 평가방식 개선 주요내용

- (평가절차 보완) ①서면평가 ⇒ ②평가위원회 평가 ⇒ ③종합평가 순으로 외부전문가 평가(평가위원회) 절차 포함
- (평가 주체 보완) 기존 공무원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포함하여 공정성 보완

- 2018년부터는 그룹(인구규모 그룹)을 다시 광역과 기초로만 나누어 평가. 평가의 방식은 광역이 기초를 평가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2023년까지 지속.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광역에 대한 정성평가, 특별부문에 대한 평가 참여
- (실적/시상) 2013년에는 평가의 부문 구분 없이 민원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광역과 기초에 동일한 평가지표 적용하여 시행. 2014년 및 2015년에 주제는 변경하였으나 부문의 구분 없이 평가를 시행하였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 미흡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점검의 성격에 가까웠음
- 2016년부터는 평가 부문을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일반부문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지표를 각기 나누어 시행. 특별부문에서는 해당 년도의 부문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별로 지자체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지자체 선별
-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에서 각각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20개(광역 총 4개, 기초 총 16개)의 장관상을 시상

※ (참고) 2016년 지표 전면 개편 및 이후 변동 최소화

- 2018년에는 2016년의 평가 및 시상 부문의 구분을 유지하였으나, 일반부문에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광역 당 최우수지자체에게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신 특별부문에서 3개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던 것을 1개로 축소. 결국 광역에서 총 4개의 장관상과 기초에서 16개의 장관상을 시상하는 것은 변동 없음(총 20개)
- 2020년까지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1개와 19개로 변동이 있었음. 2023년 현재는 일반부문에서 광역 2개, 기초 15개, 특별부문에서 광역 1개, 기초 1개의 상을 시상(총 19개)
- (기타) 2020년에 일시적으로 세분화된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지표 확대(광역 19개 추가, 기초 11개 세부지표 추가),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지자체 견학 추진, 광역 중 미흡한 지자체 1개 선정 및 조치통보 등이 이루어졌으나, 2021년에 다시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였고, 미흡지자체에게는 행정업무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됨

[표 3-27] 2013~2023년 평가체계 변화 (표 계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평가대상	특정지자체 총 34개(광역17개, 기초 17개)	특정지자체 총 51개(광역17개, 기초 34개)	(전년도와 동일)	모든 지자체 총 243개(광역 17, 기초 226)	모든 지자체 총 243개(광역 17, 기초 226)
평가방식	일반 상대평가 지자체별 지자체 순위애 따른 감점 각 지자체 평가 결과 총점으로 순위 산정 (기초는 광역에 합산)	일반 상대평가 + 절대평가 순위에 따른 감점 또는 등급별 점수 부여 (+ 가감점)	일반 (전년도와 동일)	일반 그룹평가 (광역1, 기초3 그룹별 평가)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3-5명, 중앙건축 위원회 위원 중 호 선) 평가	일반 특별 (국토부) 광역 대상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3-5명, 중앙건축 위원회 위원 중 호 선) 평가 지자체 국토부 통 보
평가절차	① (국토부) 지표 마련 및 배포 ② (국토부) 평가 및 광역·기초 합산 ③ 결과확정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① (국토부) 지표 마련 및 배포 ② (국토부) 서면평가 ③ (위원회) 정성 및 특별부문 평가 ④ 결과확정	① (국토부) 지표 마련 및 배포 ② (국토부) 광역 대상 서면평가 (광역) 기초 대상 평가(국토부 통보) ③ (위원회) 정성 및 특별부문 평가 ④ 결과확정
운영실적 (우수)	일반 민원 감축을 위한 노력 (광역·기초) 3개 항목 12개 지표	일반 규제폐지 및 정책이행도 (광역·기초) 4개 항목 11개 지표	일반 규제폐지 및 정책이행도 (광역·기초) 5개 항목 13개 지표	일반 환경밀착형 건축 우수지자체 18개 개 지표 행정 사례 (기초) 5개 항목 11 개 지표	일반 특별 환경 우수지자체 2개
시상	-	-	-	광역(3) 기초(13) 광역(1) 기초(3)	광역(3) 기초(15) 광역(1) 기초(1)
비고	-	-	-	총 20개 지자체에 장관상 시상 평가그룹별 평가 시행 지표 전면 개편(이후 변동 최소화) 2016년도 실적 평가	(전년도와 동일) 그룹폐지 광역 기초 지표 차별화 2017년도 실적 평가(전년도 대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가대상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모든 지자체 총 245개(광역 17, 기초 228)	모든 지자체 총 243개(광역 17, 기초 226)
평가방식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특별	평가위원회 (3~5명, 중앙건축 위원회 위원 중 호 선) 평가	평가위원회 (3~5명, 중앙건축 위원회 위원 중 호 선) 평가	자제평가서를 바 다워 수렴된 평 가 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정성평 가, 평가등급 부여 (우수/보통/미흡)	자제평가서를 바 다워 수렴된 평 가 지표별 산식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전년도와 동일)
평가결과	① (국토부) 지표 마련 및 배포 ② (광역) 기초지자체 평가 ③ (국토부) 광역지자체 평가 ④ (위원회) 정성 및 특별부문 평가 ⑤ 이익신청 ⑥ 결과확정	① (국토부) 지표 마련 및 배포, 의견 수렴 ② (광역) 기초지자체 평가, 이익신청 ③ (국토부) 광역지자체 평가 ④ (위원회) 정성 및 특별부문 평가 ⑤ 이익신청 ⑥ 결과확정	① (국토부) 지표 마련 및 배포 ② (광역) 기초지자체 평가 ③ (국토부) 광역지자체 평가 ④ 이익신청 ⑤ 결과확정	(전년도와 동일)	① (국토부) 당해연도 및 차년도 지표 마련 및 배포 ② (광역) 기초지자체 평가 ③ (국토부) 광역지자체 평가 ④ 이익신청 ⑤ 결과확정
운영실적 (우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특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 사례	건축행정 혁신 및 현장밀착 서비스 개진사례	일반	통상적인 건축행정 평가	일반
특별	(광역) 16개 지표 (기초) 21개 지표	(광역) 35개 지표 (기초) 32개 지표	(2020년 대비 지 표 감소화)	건축물 안전 관리 대한 노력사례	일반
시상	광역(3) 기초(15)	광역(1) 기초(1)	광역(4) 기초(15)	광역(2) 기초(15)	(전년도와 동일)
비고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총 21개 지자체에 장관상 시상	총 19개 지자체에 장관상 시상	(전년도와 동일)
2018년도 실적 평가(전년도 대상)	2019년도 실적 평가(전년도 대상)	2020년도 실적 평가(전년도 대상)	2021년도 실적 평가(전년도 대상)	2022년도 실적 평가(전년도 대상)	2023년도 실적 평가(전년도 대상)
명칭 변경	우수지자체 선정	우수지자체 선정	우수지자체 선정	우수지자체 선정	우수지자체 선정
이익신청 절차 마련	이익신청 절차 마련	이익신청 절차 마련	이익신청 절차 마련	이익신청 절차 마련	이익신청 절차 마련

출처: 국토교통부, 연도별 행정평가 시행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평가지표 분석 결과

□ 변화 및 주요 특징

- (지표구성) 2013년 평가지표는 3개 항목 12개 지표, 2014년은 4개 항목 11개 지표, 2015년은 5개 항목 13개 지표로 구성
- 2016년부터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목표로 지자체 성격을 반영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 지표 차등하여 구성

※ (참고) 2016년 평가지표 변경 주요내용

- (광역지자체) 5개 항목 9개 지표.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치건축물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 (기초지자체) 5개 항목 11개 지표로 구성,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 등과 유지관리의 적절성 등을 포함
- 2020년은 기초와 광역지자체간 업무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취득점수를 광역지자체 점수에 반영
- 2021년부터는 코로나 19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늘어난 평가지표의 항목 및 세부지표를 감축하고, 지표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변경을 세부 평가지표(일부) 최소화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차년도 평가지표를 선공개하여 지자체의 혼란을 줄이고 지표에 따른 행정수행을 유도
- (지표배점) 2013년 평가지표의 총 배점은 105점, 2014년은 110점, 2015년은 100점
- 2016년 평가지표의 총 배점은 125점, 광역 대상 평가지표의 배점은 80점이며 기초는 100점

※ (참고) 2016년 지표배점 및 산정방식 변경내용

-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인구규모(50만, 10만을 기준으로 3개 그룹)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평가 및 평가에 따른 우수 지자체 시상의 공정성 마련을 목적). 방치건축물 정비실적,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실시. 허가처리, 위반건축물 관리 실적 등이 상이하므로 실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정계수(1→0.9→0.8)를 적용하여 평가점수 차등 적용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역, 기초 모두 100점 만점으로 배점하였으나, 2021년부터 광역은 165점, 기초는 130점으로 변경

[표 3-29] 2013~2021년 평가지표 변화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목표	민원간접 지역별 민원처리 건수 민원감축률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규제폐지 및 정책이행 지역간축규제 정비실적 건축합정 준비 건축민원위원회 준비	(전년도와 동일) 지역간축규제 정비실적 심의모니터링 평가 우수 행정사례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심의의 등 합리화 건축안전 및 유지 관리 건축행정 전문성 및 노력	(전년도와 동일) 내진보강 홍보 및 지원 추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추가 공사중단 건축물 등 조치 추 가 건축정책지표 추가	건축행정평가 기초지자체 취득전수를 광역 지자체 점수에 반영 추가 민원발생률, 건축주 만족도, 건축정책지표 추가	(전년도와 동일) 지표간소화(코로나19등 행 정부담 감안 대대적 간소화)
주요내용							
	광역(기초합산)	광역(기초합산)	광역(기초합산)	광역	광역	광역	광역
	적극적 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억제	민원발생 및 감축률	적극 민원처리 노력도	건축행정 전문성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 (건축민원위원회)	임의규제 정비 노력도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	규제 정비율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건축행정 개선 노력
평가항목*	기타 (우수사례)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	창의적 건축행정 건축정책 이행 충실도	시공절거 안전성 및 효율성	(전년도와 동일)	공사 안전관리 및 효율성	건축관련 안전관리
	-	-		유지관리 적절성	-	(전년도와 동일)	유지관리 적절성
	기타 (평가충실도)	가감점 등 정성평가	감점사항	가감점	-	가감점	(전년도와 동일)
	3개 항목 12개 지표	4개 항목 11개 지표	5개 항목 13개 지표	5개 항목 9개 지표 11개 지표 (가감점 제외)	5개 항목 8개 지표 11개 지표 (가감점 제외)	6개 항목 13개 지표 (가감점 제외)	5개 항목 9개 지표 (가감점 제외)
총점	100점(+5)	110점(±10)	100점(-5)	80점 (+4, -5)	100점 (-5)	100점(+3, -8)	165점 (+6, -13)

* 항목 내 세부지표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구분

* 2016년 이후 지표 변동률 최소화하고자 하여, 분석표상 항목의 변경이 없는 년도는 포함하지 않음

출처: 이여경 외 (2017).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연구. pp. 14-18.; 국토교통부. 연도별 행정평가 시행계획. 내부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분석 결과 종합

□ 전문가 의견¹¹⁸⁾

- 건축행정평가 및 각 평가부문별 목적 및 목표 설정 및 개선 필요
 - ① 평가의 목적과 지표의 내용 불일치, ②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방법의 불일치, ③ 정책적 목표 달성 완료 등 불필요한 지표의 방치 등은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
- ※ (예시) 목적: 건축인허가 행정 전문성 강화
 - ↔ 세부평가기준: 건축 관련 민원 감축률, 건축허가 행정 민원인 만족도
- 변별력이 부족한 지표 중 운영의 지속 이유가 없는 지표는 제외 필요
 - 평가 종합점수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전체 평균은 약 66점, 최고는 약 77점, 최저는 약 53점에 해당해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부족
 - 단기적으로는 현재 법령을 통해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제도의 도입 후 정착이 완료된 지표는 삭제할 필요
- 각 지표별 배점 및 세부기준(평가구간) 조정 및 세분화를 위한 검토 필요
 - 10점 만점 지표 중 10점, 5점, 0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표의 경우, 다른 3~5점 만점의 지표와 중요성에 대한 비교검토 필요
- ※ (예시) 10점 만점인 '건축심의기준의 적합여부'를 만점 받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적'과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실적'을 0점 받은 A지자체와, 이와 반대로 '건축심의기준의 적합여부'는 0점이나 다른 두 지표를 만점 받은 B 지자체가 결국 동일한 점수
- 평가지표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평가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및 피평가자의 부담 완화 필요
 - 평가의 목적이 행정의 건실화임을 감안하여 지표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연속된 지표의 경우 '개선도'에 대한 평가반영을 통해 행정품질의 향상을 유도할 필요
 - 행정평가의 목적이 전반적 건축행정품질 상향화에 있다면, 전년 대비 개선·발전한 지자체·지표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도입 고민 필요

118) 설준호 마크로밀엠브레인 부장(2023.02.23.; 2023.03.07.; 2023.08.16.; 2023.12.28.; 2024.01.18.);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센터 소장, 정윤진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팀장(2024.05.31.), 인천대학교 최정운 교수(2024.11.08.)와의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반대로 기존에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상위권)에 대한 평가지표의 마련 필요
- 평가지표를 전년도에 공개하여 피평가자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를 준비하지 않도록 할 필요
- 가감점 운영 최소화 및 변동지표의 특별부문 활용 확대 필요
 - 지표 상 가감점의 운영은 일반적이지 않음. ‘평가 자료의 제출지연(감점)’, ‘공사 중단 건축물 공사재개 및 철거 실적(가점)’의 경우 해당 지표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별도의 가감점 지표 운영이 아닌 평가지표(기본)로 운영 필요
 - 또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연속된 평가지표에 포함하기보다 기존의 특별부문 주제로서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 관계자 의견¹¹⁹⁾

- (2020년) 광역과 기초로 나뉘는 평가대상 그룹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개선 요청 (지역 특성 반영)
- 광역과 기초의 사무를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은 시군의 법정권한사무상 부적합한 지표이므로 개선 요청
- 예측 가능한 지표 운영, 지표에 따른 사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기, 지표공개 시기, 평가대상 연도 등을 조정해주기를 요청
- 지자체당 업무량(허가 등 발생건수), 지자체별 행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량이 적은 지자체가 유리한 지표는 조정 필요
- (2022년)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별 배점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단기적 지표 지양), 지자체 특성에 따라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에 대한 고려 필요(건축허가, 건축위원회 등 행정처리 기한 조정 필요)
- 평가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의 간소화(세움터 등 활용한 자료제출 및 평가 절차 간소화)
-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중순(4-5월 경)에 지표를 공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평가 시기(6-7월)는 지자체의 정기 인사 기간이므로 원활한 자료작성 및 취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평가 지표 공개 및 시행 시기 조정 필요
- 행정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관리 필요 (평가결과 전체 공개 요청,

119) 이여경 외(2022). 건축행정평가 지원 성과보고서; 이여경 외(2023). 2023년 건축행정평가 지원 성과보고서.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법령의 지도·감독 취지에 따라 평가 이후의 후속조치가 필요)

- (2023년) 지자체에 따라 업무가 전무하거나 대상이 아닌 세부지표의 개선 필요(공공건축 사전검토 시행실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예비 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적, 지역건축기본계획 등)
- (2024년) 광역과 기초의 성격을 모두 가진 특수한 지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 개선 필요(세종특별자치시), 법령상 제외된 업무에 대한 일원화된 평가지표 개선 필요(「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제4항,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제외 관련), 평가 관련 데이터의 정제 및 정확성 확보 필요(국토교통부 보유 데이터와 지자체 보유 데이터의 불일치 등), 기타 개별 지자체 여건에 따른 개선 의견(건축직 공무원 비율에 따른 평가지표의 불합리성 제기, 과도한 민원 업무에 대한 평가 반영 요구, 위 반건축물 관련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 필요 등)

[참고]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정책간담회]

□ 회의개요

- (時/所) '24. 11. 29(금) 14:00 ~ 15:50/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 (참석) 국토교통부(2명): 김재균 서기관, 김판진 주무관
도 및 시·군 담당자 (45명)
건축공간연구원(5명): 배선헌 건축규제혁신센터장 등
- (안건) 건축규제 개선과제(안) 회람·제도개선 건의 등 토론

□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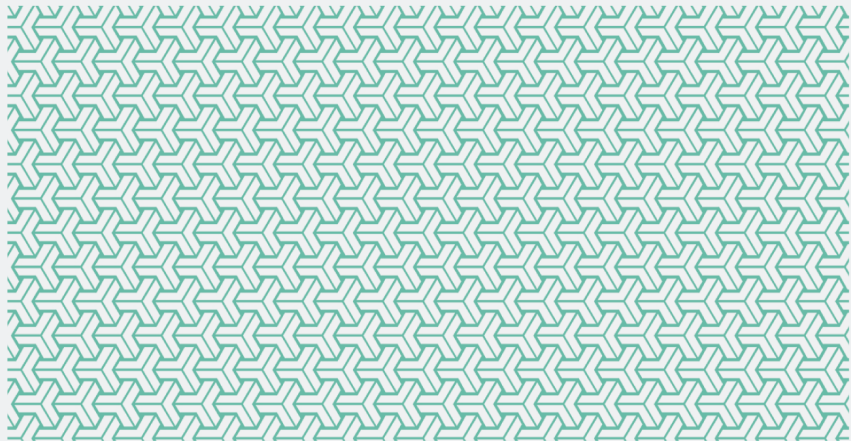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AURI
14:05~14:10 (5분)	인사말씀	국토교통부
14:10~14:20 (10분)	건축규제 개선과제(안) 설명	국토교통부
14:20~14:30 (10분)	건축규제 개선 정책연구 설명 - 건축행정평가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AURI
14:30~15:05 (35분)	규제개선 과제(안) 및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참석자 전원
15:05~15:45 (30분)	지자체 제도개선 과제 건의 등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5:45~15:50 (5분)	마무리 말씀	국토교통부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검토 종합

-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축행정평가의 평가체계 검토 결과
 - (평가대상) 광역지자체와 선별된 기초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방식) 지표별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기초지자체 총점을 광역지자체에 합산하여 평가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그룹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평가 부문을 일반과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 → 기초지자체의 그룹 세분화를 없애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나누어 평가 시행
 - (평가절차) 국토교통부의 단독 평가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 → 기초지자체의 일반부문 평가는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광역지자체의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특별부문은 기초와 광역 모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시행
 - (실적/시상) 평가 초기에는 우수지자체 시상 및 미흡지자체 조치 등 전무 → 광역 및 기초 중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 시상 시행 →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의 시상 대상을 일부 변동하여 조정
 - (기타) 평가일정 조정을 통해 계획 및 지표 등을 평가에 앞서 공개하도록 개선하여 건축행정평가가 지자체 행정의 연간계획 수립 및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
-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축행정평가의 평가지표 검토 결과
 - (지표구성) 건축 관련 민원감축을 중심으로 12개 내외의 평가지표 운영 →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표를 구분하고 10개 내외의 지표로 축소
- 건축행정평가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 관련 개선사항 발굴 결과
 - (평가체계) 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그룹을 세분화하여 시상을 운영할 필요, ②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연계 평가하는 방식(지표 포함) 배제 필요, ③ 예측 가능한 지표 운영 및 지표에 따른 사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기 및 지표공개 시기 등을 조정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 (평가지표) ① 실효성이 없는 지표 및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지표 등은 삭제하거나 또는 평가 산식을 개선할 필요, ② 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할 필요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제4장 건축행정평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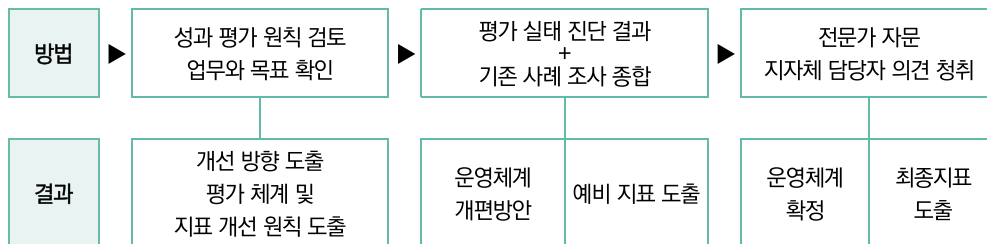


1. 기본방향 설정
2.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안
3.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설정

1) 평가체계 개선 과정

- 건축행정 평가 체계 개선 프로세스 정립
 - 평가 체계 개선 과정은 국무조정실(2006)에서 발간한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에 제시된 절차를 기초로 하여 검토 진행
 -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기본적인 절차에 3장의 건축행정 평가 실태 진단 결과와 전문가 자문, 지자체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운영체계 개편 방안과 최종지표를 확정
 - 첫째,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성과 평가 원칙을 기반으로 건축행정 평가 개선 방향과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 원칙을 설정
 - 둘째, 평가 실태 진단 결과와 기존 평가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운영체계 개편방안과 예비 지표 도출
 -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 및 담당자 의견 청취를 통하여 운영체계와 최종지표를 확정



[그림 4-1] 평가체계 개선 프로세스

출처: 성과지표 개발, 관리 매뉴얼의 기본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연구진 재작성

2) 개선 방향 도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건축행정평가 개선방향 도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는 정부업무 평가의 원칙에서부터 평가 결과의 공개,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감사 규정, 평가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평가 가이드라

인'을 작성하여 개별 평가를 담당하는 부처에 통보함

- 국무조정실의 개별평가 발전 방향에 기반하여 건축행정 평가에서 설정한 평가방향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결과 건축행정 평가는 평가 목표 구체화, 기존 평가와 중복된 지표와 점검 성격의 지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 정부업무평가 주요 평가방향에 따른 건축행정평가 목표 재설정 검토안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평가방향			건축행정평가			
구분		세부내용	평가 목표	운영 체계	지표	비고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 ○	○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전체 결과 미공개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자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위 지자체 개선 요청 부재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 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기존 평가 결과 활용 방안 검토 필요
정부업무평가 주요 평가방향		1. 기관 간 협업을 중점 평가(협업 확산 독려)	○			
		2. 평가의 타당성 및 수용성 제고(유연한 평가기준)			○	
		3. 국민체감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목표달성도, 정책효과 평가 비중 확대)	○		○	이행여부 중심 평가
		4.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기여 확대		○		
		5.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	○	
개별 평가 가이드라인		1. 평가 목표 구체화	○			
		2. 점검으로 달성 가능한 지표 개선		○	○	
		3. 기존 평가 지표와의 중복성 검토			○	
		4. 평가 항목의 적절성 검토			○	

출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 종합
 - 평가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 목표가 구체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함께 목표와 연계된 지표가 개발되어 한다고 강조
 -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는 기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하였음

[표 4-2] 전문가 및 광역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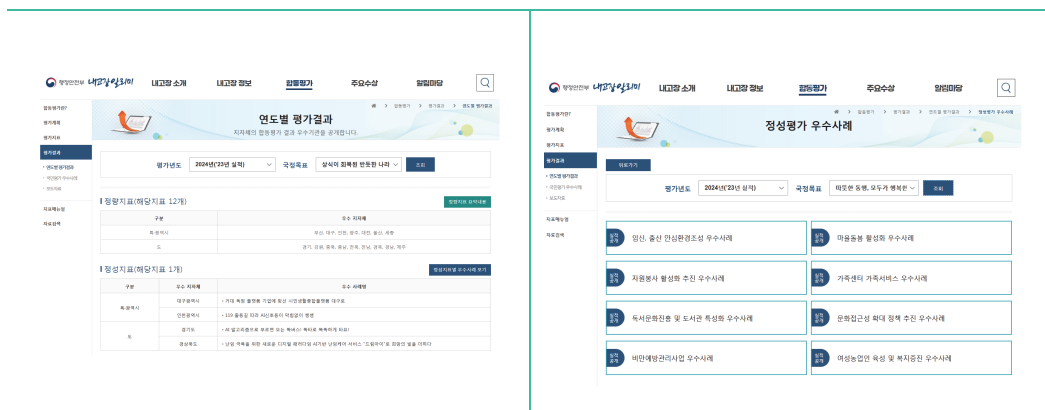
원칙	세부내용	
전문가	목표 관련	- 평가 목표 구체화 - 각 평가부문별 목적 및 목표 설정 및 개선 필요 - 평가 목표와 지표와의 연계성 강화
	운영 관련	- 평가 결과 공개 -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표 관련	- 평가 지표 연속성 확보 - 가감점 운영 최소화 / 가감점 지표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최종 평가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음 - 기존 평가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중복 지표 점검 필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평가받는 지표의 경우 정리 필요
광역 지자체 담당자	운영 관련	- 실질적으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는 기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필요 - 광역과 기초의 사무를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은 시군의 법정 권한사무 상 부적합한 지표이므로 개선 요청 - 평가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평가 간소화
	지표 관련	-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효율적인 평가 자료 작성 및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배점 산정 방식 부적절 - 지표의 현실성 부족/ 건축행정 개선과 연관되지 못하는 지표 운영

출처: 연구진 작성

3)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원칙

평가체계 및 지표개선 원칙은 3장의 건축행정평가 실태 진단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을 종합하여 설정

- 건축행정 평가 목표 구체화
 - 건축행정 서비스 전문성 강화 유도
 - 건축정책 이행력 강화 유도
 - 지자체 자율적인 정책 노력 장려
- 운영체계 효율화
 - 평가자료 수집방식 개선(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 평가 결과 공개
 -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체계 개선(다양한 시상 및 특전 확대 등)



[그림 4-2] 합동평가 결과 공개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laiis.go.kr/lips/uev/eca/excellenceCaseForm.do#\(검색일: 2024.6.20.\)](https://www.laiis.go.kr/lips/uev/eca/excellenceCaseForm.do#(검색일: 2024.6.20.))

- 평가지표 체계화
 - 기존 평가체계와의 중복지표 개선
 - 세부 지표 항목 및 배점 개선(점점 성격의 지표 제외)
 - 지표 변별력 향상
 - 가감점 지표 및 방식 개선

[표 4-3] 건축행정평가 개선방안 종합(안)

구분	문제점 및 현안	원칙	세부내용
평가 목표	- 건축행정의 발전 목표와 평가 목표와의 연계성 부족 - 건축행정 범위에 대해 좁은 관점으로 해석	①건축행정 평가 목표 구체화	- 건축행정 평가가 지향하는 가치 재설정
운영 체계	- 국민이 체감 가능한 기초지자체는 광역에서 평가 - 환류체계 부재 - 평가 자료 수집 방식 문제	②운영체계 효율화	- 평가 인프라 강화 - 평가로 인한 행정 부담 완화 방안 검토 - 평가 결과 활용 강화
평가 지표	- 다른 평가 지표와 중복 - 배점 산정 방식 부적절 - 지표의 현실성 부족 - 건축행정 개선과 연관되지 못하는 지표 운영	③평가지표 체계화	- 적합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합리적 설계 방안 제안

출처: 연구진 작성

2.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안

1) 건축행정평가 목표 구체화

- 건축행정평가 목표 재설정
 - (문제점) 2024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수립한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건축행정평가의 목표는 개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건축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건축 행정평가 목표는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비판
 - (개선방안) 건축행정이 실현되는 단계는 기초 지자체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건축정책이 현장에서 운용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가 상호 협력 하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건축정책의 일관된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하고 분야별로 지자체가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여 취약점들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점검 도구로 평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자 함
- 건축정책과 행정의 개념 재정립
 - (문제점) 「건축법」에서는 건축행정평가의 목표를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함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건축 행정이 단순히 법령상에 정해진 건축 인허가 절차의 이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현대 건축 행정은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영역 또한 세분화되고 있어 건축 행정 평가 범위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을 반영하여 재설정 필요
 - (개선방안)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정책 추진 목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3. 건축 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중 추진전략8.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포용 건축행정·제도 개선 실천과제와 연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강화 방안 유도
 -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통계 구축, 건축물 대장 관리 등의 노력 등과 같이 전반적인 행정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전년 대비 개선·발전한 지자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도입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4-4] 건축 생애주기별 지자체 건축행정 업무 내용과의 정합성 검토(안)

구분		건축 생애주기				
		기반 구축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지자체 건축 행정 (추후 보 완 예정)	광 역	- 조례 운영 및 정비 - 위원회 운영 - 특정 분야 활성화 정책 추진 - 통계 관리 - 민원 처리	-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업무			
	기 초	- 관련 법규 운용 - 위원회 운영	- 건축신고, 건축허가 및 협의, 건축물 사용승인 - 개발행위 허가·협의 및 준공처리			-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 - 건축물대장의 보 관·변경·정정·말 소 등 관리, 건축 물대장 발급
2023 건축 행정 평가	절 차 합 리 성	- 건축심의 기준 개정 적 합성 - 전문성: 건축직 공무원 비율		- 인허가 처리 기간 준수율		
	안 전				- 안전사고 발 생비율 - 공사 중단 건 축물 관리	
	유 지 관 리	-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 실적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실적				- 건축물 정기 점검 이행 - 위반건축물 관리
	정 책 이 행 도	- 계획수립 실적(건축기 본계획, 녹색건축물 조 성계획)	-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시 행실적	-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실 적		
			-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실적			
개편방향		- 정책 이행력 강화 유도 -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유도(통계 등)	- 합리적인 절차 운영 유도 - 행정서비스 전문성 강화 유도		- 안전 관리 기 반 구축 유도	- 지속적인 유지관 리 업무 수행 유도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정책 이행력 강화와 지자체 자율적인 정책 발굴 노력 장려
 - (문제점) 계획 수립 여부 등과 같이 일회성의 목표 달성 여부만을 점검하고 있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 노력이나 정책 실행 노력을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 계획 내용의 이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장려 필요.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으로는 '계획의 수립여부'가 아닌 '계획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제안함
 - (문제점) 현행 특별부문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현안이 이 주제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는 한계 발생
 - (개선방안) 일반부문 평가 지표에 지자체 고유의 시책 특화 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장려

2) 운영체계 효율화

- 평가대상 재검토
 - (문제점) 실제 건축정책과 행정이 실행되는 단위는 기초 지자체이나 국토교통부는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성과만을 집적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기초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행정 성과관리는 불가능한 상황
 - (개선방안) 국토교통부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평가대상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여 운영 필요
다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 업무의 종류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업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등 적용 필요
 - (기대효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축행정이 이행되는 기초 지자체의 성과를 직접 관리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축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에 기여 가능
- 평가자료 수집 방식 개선
 - (문제점)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평가항목을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애로사항 발생. 이로 인하여 평가자료 작성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표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 발생(이여경 외, 2016)
 - (개선방안① 국가통계 적극 활용) 건축행정과 관련된 국가통계 및 건설 관련 종합정보 활용방안 검토 필요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는 건설사고 정보 공유 및 전파를 위하여 건설공사 사고사례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 중인데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주요 지표들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을 것임
 - (개선방안② 온라인 평가 접수 시스템 개발과 운영) 장기적으로는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평가 자료 수집 방안 검토 필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평가 접수 페이지를 운영하여 관련 사항 공지와 자료 접수를 받고 있음
 - (기대효과) 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 관련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능

- 평가결과 공개 방식 개선 및 평가 결과 활용 강화
 - (문제점) 현재 건축행정 평가결과는 우수 지자체와 특별상 수상 지자체만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임.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 또한 일정하지 않으며,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또한 수상 지자체명 등과 같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음
 - (개선방안① 평가 결과 공개) 동일한 플랫폼을 통하여 지자체별 세부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은 영국의 '건축허가 통계자료'나 '미국 국가빌딩코드 평가'와 같이 전체 지자체 순위 또는 지표별 지자체 성과를 모두 공개하는 방식과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검토 가능

[표 4-5] 평가 결과 공개 방식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운영 사례
전체 공개	- 전체 지자체 순위 공개 - 지표별 지자체 운영 성과 공개	장기 검토	- 영국 건축허가 통계자료 - 미국 국가빌딩코드평가
부분 공개	- 필수 점검 지표 중심으로 순위 공개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 검토	- 일본 지정확인검사기관 대상 평가(업무 정지 등의 처분 시행 시 결과 공개)

출처: 연구진 작성

- (개선방안② 평가 결과 적극적 활용) 우수 지자체 발표회, 건축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등과 같이 평가 결과와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환류 체계 개선
 - (문제점① 인센티브 부족) 평가대상은 전국 245개 지자체이지만, 시상은 19개 지자체(일반부문 17개, 특별부문 2개)에 불과함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시도 내 1위 지자체만, 장관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어, 건축행정 담당자 및 부서 차원의 동기 부여가 어려운 상황
 - (문제점② 하위 지자체에 대한 관리 방안 부재) 법령의 내용과 건축행정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자면, 평가 이후 하위권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후속 조치가 요구되지만 현재는 별도의 개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①지자체장, 담당자에 대한 추가 포상 방안 검토, ②상위 지자체에 국비지원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 ③하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의 별도 프로그램 지원
- (기대효과) 건축행정평가 결과 활용 강화와 연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 가능

3) 평가지표 체계화

□ 평가 목표 및 운영체계 개선 방향에 따른 평가 항목 검토

- 타 평가 지표와의 중복성 검토
 - 지자체 합동평가 및 국토교통부 내에서 운영 중인 타 개별평가 지표와의 중복성을 검토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지표는 동일한 내용의 지표를 운영 중이고, 건축안전과 관련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비율과 관련한 유사한 지표를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였음
 - 국무조정실 개별 평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복되는 지표는 피평가자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표 4-6]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유사·중복되는 건축행정평가 지표

구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2024)	건축행정평가 지표(2023)
중복 지표	㉔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 건수)
유사 지표	㉔ 건축안전 수준 평가 (사망자 수준 및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수준 (40%))	2-1-1. 안전사고 발생 비율 (안전사고 발생 비율)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합동평가-평가지표-“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건축안전 수준 평가”, 국토교통부. (2023). 2023년 건축행정평가 세부평가지표. p.3, 5, 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정책목표 달성 시 평가 지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지표 개선 방안 검토
 -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항목, 1회 달성 시 다년간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항목, 계획의 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는 지표가 이에 해당

- 관련 지표는 1-1-1. 건축심의 기준 적합여부,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3-1-3.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실적, 4-1-4.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 등임
- 이러한 유형의 지표는 계획 수립 중, 계획 수립 완료, 계획 내용 달성을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점검 성격의 평가 지표 개선방안 검토
 - 법령에서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성격의 지표에 대한 검토
 - 1-1-2.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1-1-3. 건축심의 결과 공개 준수율, 1-2-1.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1-2-2.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1-2-3.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율 등이 이에 해당
 - 해당 지표는 관련 자료를 행정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 필요
- 행정 현장을 반영한 지표 재설정 필요
 - ①지속적인 정책 이행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지표 마련
정부에서 설정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정책 이행 노력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속된 지표일 경우에도 개선도를 지표로 포함하여 행정품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유도
 - ②가감점 지표와 배점 등에 대한 재검토
평가자료 제출지연과 공사 중단 건축물 공사재개 및 철거 실적의 경우 지표의 점수가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감점 지표가 아니라 평가지표 내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③행정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운영
1-3-2. 건축허가·신고 담당팀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과 같이 건축 행정 발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항목 재검토 필요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정하고 3일 이상을 단축해야 5점 배점의 100%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건축심의 건수가 많은 지자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간담회 시 보정계수 마련 등의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연속된 평가지표로 포함하지 말고 기존의 특별부문 주제로서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부문에도 특정한 주제로 한정하여 운영 시 지자체 현안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한 지자체 발생할 수 있어 특정 주제를 정하는 부분과 지자체 자체 정책 추진 두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4-1-3.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은 공공건축물 발주 부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현장의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한 배점 조정 필요

[표 4-7] 평가지표 검토 종합

기존 평가 항목			개선방향 검토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기존평가 중복	목표 달성 후 일몰 대상	점검 성격 지표
1.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분야	1-1. 건축심의 기준	1-1-1.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	
		1-1-2.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
		1-1-3. 건축심의 결과 공개 준수율			○
	1-2. 건축 인허가 처 리 기 간 준수율	1-2-1.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
		1-2-2.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
		1-2-3.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율			○
	1-3. 건축인허가 처리만족도 및 전문성	1-3-1. 건축행정 만족도 조사 실적	○		
		1-3-2. 건축허가·신고 담당팀 총 인원 대비 건축 직 공무원 비율			
2. 건축안전 관리 분야	2-1. 시공 및 해 체단계 안 전사고	2-1-1. 안전사고 발생비율	○		
	2-2. 공사중단 건 축물 관리	2-2-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고시) 실적			○
		2-2-2.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실적			
3. 유지관리 적절 성 분야	3-1. 건축물 점검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적			○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

기존 평가 항목			개선방향 검토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기존평가 중복	목표 달성 후 일몰 대상	점검 성격 지표
4.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		3-1-3.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충실도			○
		3-2. 위반건축물 관리			○
	4-1. 건축정책 이 행도	3-2-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실적			○
		4-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		
		4-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	
		4-1-4.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			○
		4-1-5.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운영 실적			○
	4-2. 지자체 자체 노력도	4-2-1. 지자체 자체 노력사례 (정성)			
5. 가·감점	5-1. 가점	5-1-1.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철거 실적			
		5-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5-1-3.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노력		○	
		5-1-4.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비대상 설치			
	5-2. 감점	5-2-1. 평가자료 제출 지연			
		5-2-2. 평가자료 충실도 부족			
		5-2-3. 정기점검 보고서 부실화			

출처: 2024년 건축행정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평가 항목 추가 및 지표 재설정

- 2016년 건축행정평가체계 전면 개편 시 설정한 건축 생산 과정 중심의 평가 항목 도출 원칙을 기반으로 평가 항목과 지표 개선 방향 제안
 - (지표 제외) 현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평가와 중복되는 지표를 제외
①실제 현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항목인 1-3. 건축인허가 처리만족도 및 전문성 관련 지표 삭제, ②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비용 지표를 삭제할 것을 제안
 - (평가 항목 개선) ①우수 정책 추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행정 개선노력 분야의 단일 평가지표를 개선. ②1.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분야에서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지표를 법령 개정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 노력으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
 - (가점 지표 개선) 본 평가항목의 지표보다 높은 배점이 부여되었던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와 관련한 항목들을 건축 안전 항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제안
 - (지자체 특성별 지표 적용) 광역과 기초 지자체별로 건축행정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수와 추가 점검 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개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단순히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정책의 향상도를 점검하여 정책의 개선을 촉진하도록 함. 예를 들어 위반건축물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보다 실제 정비 실적이 중요하므로 작년 대비 정비실적의 개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 제안
 - (필수지표와 추가지표를 구분하여 운영)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필수지표와 중앙정부 핵심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지표로 구분하여 운영
- 지표의 성격에 따라 산정 방식과 결과 공개 방식 차별화 방안 제안
 - (필수지표) 법령상에 정해진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필수 지표로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지자체별 결과를 공개
 - (추가지표) 중앙정부 핵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운영하고 지자체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표 4-8] 평가지표 개선안

기존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지표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필수 점검	추가 점검	필수 점검	추가 점검
1. 합리적 행정 절차 운영	1-1. 건축 심의	1-1-2.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	●	
		1-1-3. 건축심의 결과 공개 준수율		●	●	
	1-2.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준수율	1-2-1.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	●	
		1-2-2.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	●	
		1-2-3.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율		●	●	
	1-3. 관련 기준 정비 노력	1-3-1. 관련 조례 및 지침 정비율	●		●	
2. 건축 안전	2-1.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2-1-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고시) 실적	●		●	
		2-1-2.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실적	●		●	
		2-1-3.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철거 실적	●		●	
		2-1-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		●	
	2-2. 안전 확보	2-2-1. 안전조치 실적 증가비율		●		●
		2-2-2. 공사중단 건축물 감소비율		●		●
3. 유지 관리	3-1. 건축물 점검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적	●		●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		●	
		3-1-3.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실적	●		●	
	3-2. 위반 건축물 관리	3-2-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실적		●	●	
		3-2-2. 위반건축물 정비 실적 증가율		●	●	
4. 정책 일관성	4-1. 건축정책 이행도	4-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실적		●		●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 인증 등급 실적		●		●
		4-1-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실적		●		●

기존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지표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필수 점검	추가 점검	필수 점검	추가 점검
5. 우수 정책 추진		4-1-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운영 실적		●		●
	4-2. 스마트 행정 기반 구축	4-2-1. 건축물 관련 정보의 지속적 정비		●		●
	5-1. 자체 정책 개발	5-1-1. 지자체 자체 노력사례 (정성)		●		●
	5-2. 지원 체계 구축	5-2-1. 조직역량 강화 노력(정성)		●		●
		5-2-2.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노력		●		●
		5-2-3. 기초 지자체 행정 운영 지원 체계 구축 노력		●		

출처: 2024년 건축행정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3. 제도 개선방안

1)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도출

- 평가의 전문성 강화
 -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분석의 전문성 제고 필요) 정기적인 지표 개발, 지자체 제출 자료 검토 및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활용 필요. 또한 운영체계 개선방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직접 평가 대상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경우 업무량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유사 사례) 국무조정실에서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특정평가 운영 및 개선 지원, 개별평가 관리 및 개선 지원, 수시현안 분석 관련 전문성 지원, 그밖에 평가제도 개선 및 국무조정실 지원업무 등을 추진 중¹²⁰⁾이며, 국토교통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는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외부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운영 중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 2021년 지원센터 개소 : 각종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화·전문화 추진
- 추진 방식: 한국행정연구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 주요 업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모델 개발·개선, △전문가 평가단·피평가기관 교육·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지원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1.4.6.).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 보도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외부 전문기관 평가 수행: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국토연구원
- 추진 방식: 수탁과제
- 주요 업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모델 개발·개선, △평가활성화 방안 이행, △평가업무 실행 및 결과서 작성, △개선방안 마련 및 지원시스템 운영

출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2023), 2023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및 시행 연구,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120) 출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82, (검색일: 2024, 10, 17)

- 평가지표 개발 프로세스 정립
 - 기존의 건축행정평가는 세부 지표를 매해 변경하여 왔으나, 지자체가 평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분석-담당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포함하여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지표 개발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정기적 평가지표 개발 프로세스 구축) 평가 기초 설정 및 전년도 평가 결과 분석-예비 지표 도출-평가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평가지표 확정
- 건축행정평가 운영 매뉴얼 마련
 - 분석·평가의 기준과 초점, 방식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할 시 담당자의 관심, 역량 등에 따라 평가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평가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와 같이 최소한의 분석기준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 필요

[표 4-9] 건축행정평가 평가 매뉴얼 목차(안)

구분	세부내용
1.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체계	평가 목표, 평가 절차
2. 건축행정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편 방향 지표 구성 내용
3. 자료 작성 방법	지표별 평가대상 및 내용 평가 산식 평가자료 작성방식 작성 참고자료
별첨	1. 평가 총괄표(자체 점검표) 2. 특별부분 평가방법(평가위원용)

출처: 연구진 작성

2) 단계별 제도개선 실행방안

- 제도개선 방향
 - 제안 평가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평가 지침 마련
 - 건축행정평가 전문 조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건축법」 제78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 개정
 -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개정안 제시
 - 첫째, 건축행정 평가 목표 및 평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둘째, 건축행정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과 평가결과 공개와 활용 강화
 - 셋째,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건축행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표 4-10] 「건축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건축법 제78조(감독) ①~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건축법 제78조(감독) ①~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u>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건축행정 전반의 운영</u> 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u>평가</u>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축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1]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①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u>평가</u>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u>건축정책 이행 노력</u> 2. <u>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u> 3. <u>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u> 4. <u>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u> 5. <u>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기본법」에 건축행정평가 근거 마련
 - 건축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정책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건축기본법」에 건축행정평가의 근거를 체계화하는 방안 제안
 -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축행정평가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

[표 4-12] 「건축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의1(건축행정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 전반의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축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3]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건축기본법 시행령 〈신설〉	건축기본법 시행령 <u>제25조(건축행정평가의 기준·절차)① 법 제4조의1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1. 건축정책 이행 노력</u> <u>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u> <u>3.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u> <u>4. 건축허가 등 건축 민원 처리실태</u> <u>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1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u>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u>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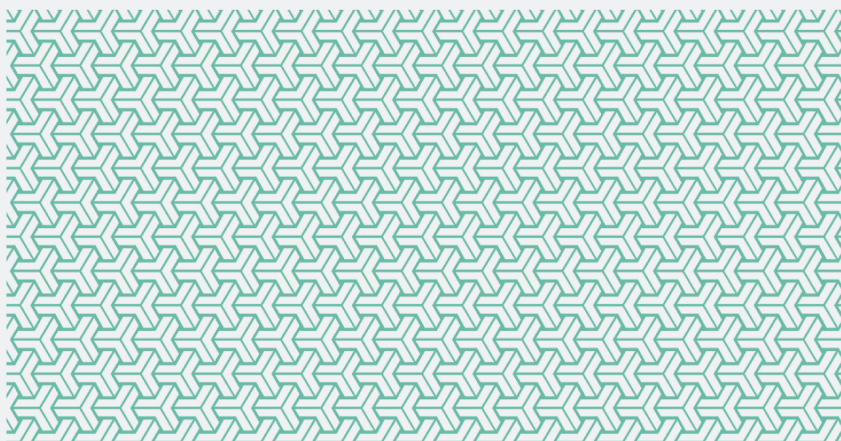
- 건축행정 평가 지침 제정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과 같이 건축행정평가 또한 절차, 지표의 개발 과정과 원칙을 제시하는 지침 마련

[표 4-14] 「건축행정 평가 지침」 구성안

구분		세부내용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 제2절 법적근거 제3절 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조 평가의 목적 제3조 평가의 대상
제2장	평가의 절차	제1절 평가의 주체	제4조 평가의 주체 제5조 평가의 위탁 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8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2절 평가 절차	제9조 평가의 절차 제10조 평가 시행 통보 제11조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제12조 평가자료 접수 제13조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검증 및 채택 제14조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제3장	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평가지표의 선정 제2절 자료수집 및 구축	
제4장	평가방법 및 주기		제21조 평가방법 및 등급화 제22조 부문별 등급 및 종합화 방안 제23조 평가의 주기 제24조 평가결과 활용 제25조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제26조 평가결과 통보

출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의의 및 성과

□ 연구의 의의

- 평가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행정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검토
 - 정부의 평가체계 통합관리 관점에서 건축행정평가의 위상과 체계를 검토하고 정부 내 평가 체계 개선 방향과의 정합성 검토
 -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건축행정평가 시행 지원을 위해 당해 연도의 평가시행을 목표로 평가지표를 개발·개선하는 연구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 운영 개선방안과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도출
- 변화된 건축행정 여건에 따른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안

□ 연구의 주요 성과

- 현 평가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고찰
 - 정부업무평가 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건축행정평가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별평가로 운영 중
 - 정부업무평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개별평가를 지양하고 합동평가로의 적극적인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23개 중앙부처에서 62개 개별평가를 운영 중임.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평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우수기관 독려 및 실질적 정책개선 도모,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강화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국내외 유사제도를 검토한 결과 운영체계, 평가 항목 및 지표 관련,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주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효율적 평가 주기 설정, 정기적 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 주체 및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평가항목 및 지표와 관련해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의 통합 관리, 기본지표와 정책지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모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 포상, 하위기관 컨설팅 제도 운영 등 환류 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검토
 -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축행정평가의 평가체계를 살펴본 결과, (평가대상) 광역지자체와 선별된 기초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평가방식) 지표별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기초지자체 총점을 광역지자체에 합산하여 평가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그룹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평가 부문을 일반과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 → 기초지자체의 그룹 세분화를 없애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나누어 평가 시행 (평가절차) 국토교통부의 단독 평가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 → 기초지자체의 일반부문 평가는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광역지자체의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특별부문은 기초와 광역 모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시행 (실적/시상) 평가 초기에는 우수지자체 시상 및 미흡지자체 조치 등 전무 → 광역 및 기초 중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 시상 시행 →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의 시상 대상을 일부 변동하여 조정 (기타) 평가일정 조정을 통해 계획 및 지표 등을 평가에 앞서 공개하도록 개선하여 건축행정평가가 지자체 행정의 연간계획 수립 및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
 -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축행정평가의 평가지표를 살펴본 결과, (지표구성) 건축 관련 민원감축을 중심으로 12개 내외의 평가지표 운영 →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표를 구분하여 10개 내외의 지표로 축소
 - 건축행정평가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 분석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건축행정 담당자 면담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한 결과 (평가체계) ①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그룹을 세분화하여 시상을 운영할 필요, ②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연계 평가하는 방식(지표 포함) 배제 필요, ③예측 가능한 지표 운영 및 지표에 따른 사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기 및 지표공개 시기 등을 조정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평가지표) ①실효성이 없는 지표 및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지표 등은 삭제하거나 평가 산식을 개선할 필요, ②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할

필요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 건축행정평가 운영체계 및 지표 개선방안 제안
 - 건축행정평가에 대하여 평가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 목표 구체화와 목표와 연계한 지표 개발을 강조하고 있고,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는 기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행정 평가 목표 구체화, 운영체계 효율화, 평가지표 체계화라는 세 가지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
 - 첫째, 건축행정평가의 목표를 건축 정책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하고 지자체가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점검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건축정책과 행정의 범위 또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통계 구축, 건축물 대장 관리 등과 같이 행정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
 - 둘째,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평가 대상을 기존의 광역지자체 중심에서 실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평가자료 수집방식 개선, 평가 결과 활용 강화, 환류 체계 개선을 제안
 - 셋째, 평가 지표 체계화에서는 타평가와 중복되는 지표와 건축 현장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 삭제, 지속적인 정비 노력을 독려하는 평가 지표로 정비, 가점 지표 개선, 지표별 산정 방식과 결과 공개 방식 개선 등을 제안
 - 추가적으로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분석의 전문성 및 타당성 제고, 평가 지표 개발 프로세스 정립, 평가운영 매뉴얼 정립을 등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축행정 평가체계 개선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① 건축행정평가 전문 조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②평가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평가 지침 마련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5-1] 건축행정평가 운영체계 및 지표개선 방안 종합

구분	세부내용	주요내용
평가 목표	건축행정 평가 목표 구체화	- 건축행정평가의 목표와 위상 재설정 - 건축정책과 건축행정 범위 재검토 - 건축정책 이행력 강화와 지자체 자율적인 정책 발굴 노력 장려
운영 체계	운영체계 효율화	- 평가대상 재검토 - 평가자료 수집방식 개선
평가 지표	평가지표 체계화	- 지표 제외 - 평가 항목 개선 - 가점 지표 개선 - 지자체 특성별 적용 지표 운영 - 개선도 지표 추가 - 필수지표와 추가지표를 구분하여 운영
기타	전문성 강화	-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분석의 전문성 및 타당성 제고 - 평가 지표 개발 프로세스 정립 - 건축행정평가 운영 매뉴얼 마련

출처: 연구진 작성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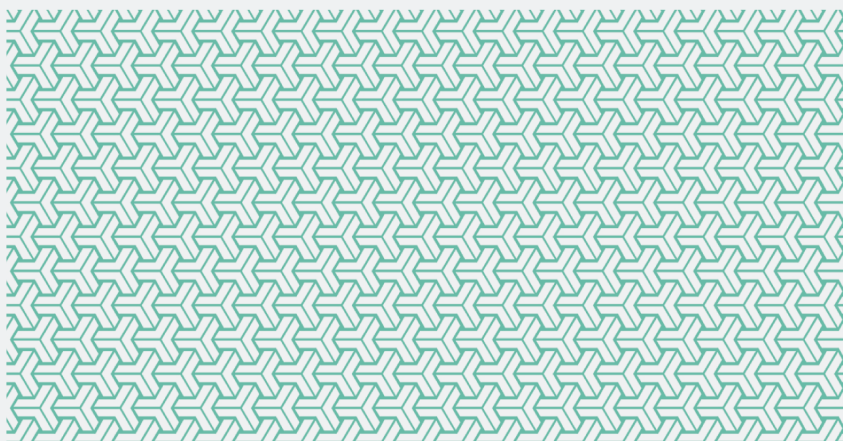
□ 연구의 한계

- 광역지자체 중심의 건축행정평가 실태 진단 수행
 -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지자체 대상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평가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 실태 진단이 이루어짐
- 평가 지표와 결과 중심의 실태 진단 수행
 - 지표별로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의 문제점이나 지표별 산정방식의 한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국토교통부 현안 처리로 인하여 2024년 건축행정평가가 기존 평가 기간 보다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 평가 수행 과정에 대한 참관이나 검토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밝혀둠

□ 향후 연구과제 제안

- 평가 지표별 구체적인 산식과 검토 기준을 포함한 매뉴얼 개발 필요
- 기초지자체 차원의 건축행정평가 운영실태 분석
- 주요 항목에 대한 지수 도입방안 연구
- 건축행정평가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향 검토
 - 2장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개별평가의 지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평가 패러다임 또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일방적인 방향의 관리 목적의 평가가 아닌 자체적인 점검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재 건축행정평가 또한 이러한 평가 패러다임 변화 관점에서 과감하게 통폐합 될 수는 없는지 근본적인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이용안내-건축행정시스템 소개.

<https://www.eais.go.kr/moct/awp/agd01/AWPAGD01V01>(검색일:2024.6.10.)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정보-용어사전 '건축행정' 검색.

<https://www.eais.go.kr/moct/awp/aeb03/AWPAEB03L01#none>(검색일:2024.6.10.)

국가법령정보센터-“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검색 결과.

<https://law.go.kr/lisAdmRulAstSc.do?menuId=391&subMenuId=399&tabMenuId=453&query=%EC%9E%90%EC%9C%A8%EC%A0%81%20%EB%82%B4%EB%B6%80%ED%86%B5%EC%A0%9C#>(검색일:2024.6.13.)

국무조정실. (2007).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국무조정실. (2022). 정부업무평가 백서(2017~202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1).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 4월 6일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2). 유사·중복 평가 통·폐합 등 개별평가 제도개선 추진. 4월 12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연구원. (2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 및 시행 연구-지자체 설명회 자료

국토교통부. (2016).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8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0a). 2020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0b).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1a). 2021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1b). 2020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2a). 2022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2b). 2022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3a). 2023년 건축행정평가 결과.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3b). 2023년 건축행정평가 세부평가지표

국토교통부. (2023c). 2023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24). 2024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추진계획.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직원안내-부서별직원안내.

https://www.molit.go.kr/USR/deptInfo/m_94/lst.jsp?DEPT_ID=1613032&DEPT_NM=%EA%B1%B4%EC%B6%95%EC%A0%95%EC%B1%85%EA%B4%80(검색일: 2024.6.18.),

김상호, 이여경. (2015).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시청 홈페이지-부서안내-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https://org.seoul.go.kr/org/orgChartView.do>(검색일: 2024.6.19.)

신열. (20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의 논리 재설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

(2), 21-48.

- 안전행정부. (2013a). 지자체 안살림 단속해 비리 스스로 예방. 6월 24일 보도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보급. 정책실명제 자료.
- 유광흠, 조영진, 류수연. (2015).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이광희, 강정석, 박중훈, 이환성. (201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민호, 안혁근, 이중한, 원소연, 심우현, 홍승헌, 김성부. (2022).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여경, 염철호, 김은희, 이규철, 엄운진, 박석환, 강지영. (2017).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 이여경, 유제연. (2023). 2023년 건축행정평가 지원 성과보고서. 건축규제혁신센터 내부 자료.
- 이여경, 이민경, 김준래. (2022). 건축행정평가 지원 성과보고서. 건축규제혁신센터 내부 자료.
- 장효진, 이환성, 오세영, 이은경, 안혜진. (2022). 개별평가 생애주기 관리방안(I): 신규 평가 사전협의와 평가 일몰관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정부업무평가 개요.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검색일:2024.5.21)
-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정부업무평가 체계도.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5(검색일:2024.5.21)
-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합동평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9(검색일: 2024.5.13.)
-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82(검색일: 2024.5.23.)
-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개별평가-개요.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6(검색일: 2024.4.26.)
- 정부업무평가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지방자치단체 평가-개별평가-주관부처별 개별평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7(검색일: 2024.4.26.)
- 정운섭, 신경식. (2017).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사례와 발전방향. 정부회계연구, 제15권 제2호, pp.181-214.
- 조재용. (2021).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RICON 해외동향 10월.
- 조재용. (2022).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RICON 해외동향 1월.
- 조재용. (2023).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RICON 해외동향 1월.
- 조재용. (2024).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RICON 해외동향 3월.
- 조현환. (2015).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주요 내용 및 성과. 건축과 도시공간 17권. pp.106-1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2019). 국외출장 관련 내부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839>(검색일: 2024.6.17.)

한국정책홍보연구원. (20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2017). 행자부 청백-e 시스템이 공무원 비리예방에 한 몫. 4월 3일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조사표.

행정안전부. (2023a). 2024년(2023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행정안전부. (2023b).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합동평가-평가지표-“건축안전 수준 평가”.

<https://www.laiis.go.kr/lips/uev/are/actualResultList.do?currentTabNum=1>(검색일:2024.06.14.)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합동평가-평가지표-“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

<https://www.laiis.go.kr/lips/uev/are/actualResultList.do?currentTabNum=1>(검색일:2024.06.14.)

황혜신, 최성락. (2013).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법」 법률 제5895호

「건축법」 법률 제20194호

「건축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령 제1777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7928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Growth and Infrastructure Act 2013, 1 Option to make planning application directly to Secretary of Stat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34fc248d3bf7f6181ac943a/Improving_planning_performance_2022_WEB.pdf(검색일:2024.07.17)

<https://lichfields.uk/blog/2023/december/21/all-stick-and-no-carrot-new-planning-performance-measures-and-a-crackdown-on-the-extension-of-time>(검색일:2024.07.17)

<https://www.behance.net/gallery/35534213/2015-BCEGS-National-Building-Code-Assessment-Report>(검색일: 2024.6.20.)

https://www.designingbuildings.co.uk/wiki/Department_for_Levelling_Up,_Housing_and_Communities(검색일:2024.07.17)

https://www.designingbuildings.co.uk/wiki/Growth_and_Infrastructure_Act_2013#:~:text=The%20Growth%20and%20Infrastructure%20Act,new%20infras

structure%20and%20job%20creation (검색일:2024.07.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istrict-planning-matters-return-ps1-and-ps2/ps1-and-ps2-district-planning-matters-return-guidance-notes> (검색일:2024.07.17.)

<https://www.gov.uk/guidance/planning-skills-delivery-fund-year-1-guidance-for-applicants>(검색일:2024.07.17)

<https://www.pref.miyagi.jp/documents/14463/647128.pdf>(검색일: 2024.8.30.)

<https://www.mlit.go.jp/common/001323818.pdf>(검색일: 2024.8.30)

Improving planning performance, Criteria for designation (updated 2022).

ISO Mitigation (now Verisk) Homepage-BCEGS-BCEGS Classifications and Survey Process “What is the evaluation process?”.

<https://www.isomitigation.com/bcegs/bcegs-classifications-and-survey-process/> (검색일: 2024.09.06.)

ISO. (2008). Building Code Effectiveness Grading Schedule (BCEGS ®): Explaining the Classifications.

<https://www.isomitigation.com/siteassets/downloads/building-code-classification.pdf> (검색일: 2024.09.06.)

ISO. (2015). National Building Code Assessment Report: ISO’s Building Code Effectiveness Grading Schedule.

<https://www.buildingresilient.com/wp-content/uploads/2016/03/BCEGS-State-Report-ISO.pdf> (검색일: 2024.09.06.)

ISO. (2019). National Building Code Assessment Report: Building Code Effectiveness Grading Schedule.

https://www.isomitigation.com/siteassets/downloads/iso-bcegs-state-report_web.pdf (검색일: 2024.09.06.)

Verisk Homepage-BCEGS-What? Why? And What Do I Do? “2. Why is BCEGS needed?”.

<https://www.isomitigation.com/bcegs/what-why-when-and-what-do-i-do/>(검색일: 2024.6.20.)

Verisk Homepage-BCEGS-What? Why? And What Do I Do? “3. Who developed BCEGS? Where did it come f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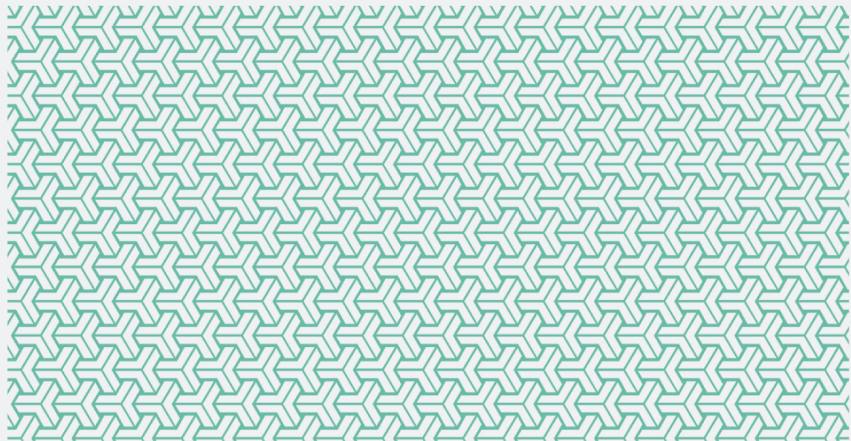
<https://www.isomitigation.com/bcegs/what-why-when-and-what-do-i-do/>(검색일: 2024.6.20.)

Verisk Homepage-Newsroom “ISO Releases National Building Code Assessment Report”.

<https://www.verisk.com/company/newsroom/iso-releases-national-building-code-assessment-report/> (검색일: 2024.09.06.)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Bae, Sunhye

Ryu, Jeyeon

Hong, Yeeun

Chapter 1. Introduction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conducted annually since 1999 under the “Building Act,” underwent a comprehensive reform in 2016. Nevertheless, concerns remain about excessive documentation requirements that burden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re are ongoing questions about whether evaluation results are effectively translated into tangible improvements in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While changes in the evaluation environment call for improvements—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conducting performance-based evaluation focused on public satisfaction, providing feedback on evaluation results, and reducing the burden on evaluated agencies through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has seen only modest improvements, such as adjustments to partial indicators, withou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overall evalu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s indicators and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operation since the 2016 reform,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perational system that align with the changed condition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Chapter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Institution

Chapter 2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evaluation institution. With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joint evaluation is the standard principle for evaluating local government affairs. However, individually operated evaluations are permitted when ministries have unavoidable circumstances due to the nature of their operations, which are defined as individual evaluations.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falls under this category as a separat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l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 principle, discourages individual evaluations in favor of integrating them into joint evaluations for operational efficiency, 23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re currently conducting 62

individual evaluations.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continuously monitors individual evaluations and calls for improvements in various areas: encouraging high-performing agencies by providing feedback on evaluation results, pursuing practical policy improvements, reducing the burden on evaluated agencies, and disclosing evaluation results as well as strengthening their utilization.

A review of simil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yielded key implications for operational systems,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and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 terms of an operational system, the study identified the need to establish efficient evaluation cycles and to develop regular indicators. Regarding evaluation bodies and committees, there was evidence that evaluation is being strengthened in terms of expertise. For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the findings suggested the need to review the integration of similar or overlapping indicators and to establish separate operational approaches for fundamental and policy indicator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cas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demonstrated active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and strengthening of feedback systems, including the provision of rewards for outstand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consultation programs for underperforming agencies.

Chapter 3. Operational Statu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Chapter 3 diagnoses the operational statu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by examining the evaluation system and its results.

First, an analysis of the evaluation system from 2013 to 2023 reveals the following findings. Initially limited to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selected basic local governments, the evaluation scope was expanded to include all local governments to ensure fairness. The original system employed relative evaluation by indicator and added the scores of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e total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This was later reformed to enhance fairness and objectivity by dividing the evaluation groups into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ree groups of basic local governments, with the evaluation categories divided

into general and special sectors. Initially conducted solel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evaluation procedure was developed to incorporate an evaluation committee that includes external experts to ensure fairness.

Second, an analysis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from 2013 to 2023 shows the following developments. The initial evaluation system operated with approximately 12 indicators, focusing on the reduction of architecture-related civil complaints. This was later restructured based on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to distinguish betwee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dicators, reducing the total to approximately ten indicators.

Finally, consultation with relevant experts and interviews with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officials revealed the following areas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evaluation system: ① awards should be administered through more detailed evaluation group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② the linked evaluation method (including indicators) betwee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liminated, and ③ the evaluation schedule and the schedule for disclosing indicators should be adjusted to enable the operation of predictable indicator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Concerning evaluation indicators, the study identified the need to: ① eliminate ineffective or limited-scope indicators or improve evaluation formulas, and ② adjust scoring based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Chapter 4. Improvement Measures for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Chapter 4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perational system and for the indicator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Chapters 2 and 3. Notably, regarding the analysis of operational plans and evaluation results from Chapter 3, experts emphasized the need to specify evaluation objectives and develop indicators related to these objectives, while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s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direct evaluation systems for the basic level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incentives based on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in three dimensions: clarifying evaluation objectives, streamlining operational systems, and systematizing evaluation indicators. First, the study establishes the evaluation's objective as an important monitoring tool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consistently implement architectural policies and to enable self-assessment of areas requiring improvement. Correspondingly, it proposes to expand the scope of architectural policy and administration to include various areas for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enhancement,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and the management of the building register that underpin administrative services.

Second, in order to streamline the operational system, the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scope of direct 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evaluating only metropolitan governments to include basic local governments wher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is actively carried out. This should be accompanied by improving the methods of collecting data for evaluation, strengthening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refining feedback systems.

Third, regarding the systematization of evaluation's indicators, the study proposes eliminating indicators that overlap with those of other evaluations or that are misaligned with architectural site conditions, restructuring indicators to support continuous improvement efforts, improving bonus point indicators, and improving calculation methods and disclosure procedures of results.

Additionally, strengthening evaluation expertise requires enhancing analytical professionalism and validity by utilizing expert personnel, establishing indicator development processes, and standardizing operational manual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requires institutional improvement, including ① establishing grounds for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and ② developing evaluation guidelines that specify evaluation procedures,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submission procedures, and other particulars.

Comprehensive Measures for Improving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s Operational System and Indicators

Category	Detail	Key Content
Evaluation Objectives	Clarification of the Objective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 Re-establish evaluation objectives and status - Review architectural policies and the scope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 Strengthen policy implementation and encourag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utonomous policies
Operational System	Streamlining of Operational System	- Review the scope of evaluation - Improve evaluation data collection methods
Evaluation Indicators	Systematiz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 Exclude indicators - Improve evaluation items - Improve bonus point indicators - Implement indicator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 Add indicators on the level of improvement - Distinguish the operation of essential and additional indicators
Others	Strengthening of Expertise	- Increase analytical expertise and validity through professional personnel - Establish a process for developing evaluation indicators - Develop an operational manual for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Source: Research Team

Chapter 5.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valuation's operational system and indicator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valuation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conditions. Its significance lies in deriving comprehensiv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evalu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evaluation's operational status.

Nevertheless,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analyzes the status of institutional operation based solely on the evaluatio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out diagnos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at the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in which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ed as the subject. This warrants further investigation in subsequent research.

Keywords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valuation, Status Diagnosis, Institutional Improvement, Building Act